

결합 및 연결회계제도 연구

1998. 6

김정국 연구위원
유인금 선임연구원

한국증권연구원

서 언

최근의 심각한 국내 경제난의 중요 원인중의 하나는 바로 기업들, 그 중에서도 특히 재벌기업들의 경영불투명성이라는 점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경영불투명성에 일조한 것이 바로 회계제도의 미비라는 점에 대해서도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실정이다. 현재 재벌기업들의 경영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이 사회전반에 걸쳐서 그야말로 다각적으로 모색되고 있다. 그 중의 중요한 하나가 바로 결합재무제표 제도의 도입이다. 현재 증권감독원에서는 결합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세부규정을 마련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공개초안이 6월중에 발표되고, 이어서 공청회 등을 거친후 최종적인 세부규정은 오는 10월 중에 확정될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보고서에서는 결합 및 연결재무제표와 관련된 중요 사항들을 다루었다. 제 1부에서는 그 동안 정부관계기관들로부터 결합재무제표 작성과 관련하여 검토의뢰를 받아 정리해 보았던 사항들을 수록하는 한편, 현재 진행중인 증권관계기관의 결합재무제표 관련 세부규정마련에 참조가 될 수 있도록 중요 미결정 세부사항들에 대해 검토소견을 정리해 보았다.

제 2부에서는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하였다. 결국 향후 구조조정이 가속화되고 또한 지주회사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결합재무제표보다는 연결재무제표가 그 중요성을 더해가고 따라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사료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본 연구원의 김정국박사와 유인금 선임연구원이 맡아서 수고를 해 주셨다. 연결 및 결합회계는 회계분야중에서도 특히 복잡하고 어려운 분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앞으로도 외국에서 진행되는 연구결과들을 참조하면서 이 분야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가 계속적으로 많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본 연구를 함에 있어서 도움을 주신 많은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특히 본 연구원 내부세미나에 참석하여 많은 도움말씀 주신 서울대학교의 남상오 교수님, 고려대학교의 권수영교수님, 동원증권의 김정태 사장님, 삼일회계법인의 안영균 상무님, 기타 증권감독원과 재정원으로부터 참석하여 주신 분들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마지막으로 본연구보고서에 실린 모든 내용은 전적으로 연구진 개인의 견해이며 본 연구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1998년 6월
한국증권연구원
원장 최운열

목 차

제 1 부 결합재무제표 작성의 구체화 방안 검토

I. 서론	3
II. 결합재무제표에 대한 개요	7
1. 개념	7
2. 특징	9
3. 결합재무제표의 유용성	10
III. 결합재무제표 관련 외감법 및 시행령 내용	13
1. 작성의무화 대상 기업집단의 범위	15
2. 결합대상 계열사	17
3. 결합재무제표 작성 대표회사	18
4. 결합재무제표의 종류	18
5. 작성기준일과 공시시기	19
IV. 결합재무제표 작성의 구체화 방안 검토	23

제 2 부 연결재무제표의 개선방안

I. 서론	33
II. 현행 연결재무제표의 특성 및 한계	35
1. 연결재무제표제도의 변천 과정	35
2. 연결재무제표의 특징	39
가. 연결재무제표와 회계주체이론	39
나.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 법인	46
3. 연결재무제표의 한계	49
가. 기업소유구조에 의한 연결재무제표의 왜곡	49
나. 기타 연결재무제표상의 한계	53
III. 연결재무제표기준의 국제비교	55
1. 국제회계기준	56
가. 주요내용	56
나. 시사점	58
2. 미국	63
가. 주요내용	63
나. 시사점	66
3. 일본	71
가. 주요내용	72
나. 시사점	82
4. 독일	84
가. 주요내용	84
나. 시사점	90
IV. 연결회계기준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91
1. 실질지배력기준의 도입	91
2. 연결기준과 개별회계기준의 일관성 유도	99
3. 연결제외 대상에 대한 검토	103

4. 연결조정차·대 계정의 합리화	104
5. 업종별 매출총이익률의 합리적 조정	108
6. 연결정보중심 공시제도의 도입	109
7. 중간연결재무제표제도의 도입	111
8. 연결재무제표 구분표시의 정비	112
9. 연결납세제도·연결법인세기간배분회계의 도입과 연결이익잉여금에 의한 배당제도의 도입	112
V. 결론	117
참고문헌	120
부록	123
1. <부록 1> 부문별 재무정보보고의 구체적 내용	123
2. <부록 2>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시행령	133

표 목 차

제1부 결합재무제표 작성의 구체화 방안 검토

<표 II-1> 연결재무제표와 결합재무제표의 비교	8
<표 II-2> 내부거래현황 ('96년도 30대그룹 158사 대상)	11
<표 III-1> 결합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시행령 주요 내용	14
<표 III-2> 大規模企業集團 現況(1998.2.2기준)	16
<표 III-3> 각 재무제표별 외부감사절차	20
<표 III-4> 결합재무제표관련 주요 쟁점사항의 장·단점	21

제2부 연결재무제표의 개선방안

<표 II-1> 연결재무제표기준 및 준칙의 변천과정	36
<표 II-2> 상장사별 연결재무제표 작성 현황	38
<표 II-3> 연결이론의 비교	44
<표 II-4> 우리나라의 연결기준과 연결주체이론	45
<표 II-5> 대규모 기업집단 연결재무제표 작성현황	52
<표 III-1> 연결재무제표에 관한 한국회계기준과 국제회계기준의 비교	59
<표 III-2> 한국과 미국의 연결재무제표상 차이점 비교	68
<표 III-3> 연결재무제표의 한국·일본 비교	83
<표 IV-1> 연결대상범위에 관한 국제회계기준·미국·일본의 비교	94
<표 IV-2> 30대 대규모 기업집단 내부지분율 현황	96
<표 IV-3> 기업회계기준상 유가증권(투자유가증권)의 회계처리	102

그림 목 차

<그림 II-1> 연결대상의 범위	51
<그림 II-2> 연결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	51

제 1 부

결합재무제표 작성의 구체화 방안 검토

I. 서론

우리나라 경제위기의 상당부분이 재벌기업들의 무리한 사업확장과 방만한 경영에 기인한다. 현재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여러 방면으로 논의되고 있으며 회계적인 측면에서는 경영투명성확보를 위한 공시강화와 결합재무제표의 작성이 강조되고 있다.

결합재무제표(Combined Financial Statements)는 간단히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다. 즉, 법률상으로는 독립적이나 특정 법인 및 개인에 의해 사실상 지배됨으로써 경제적으로는 단일체로 볼 수 있는 여러 기업들을 하나의 동일기업군(삼성그룹이나 현대그룹과 같이)으로 보고, 그 기업군을 대상으로 하여 작성되는 재무제표이다. 결합재무제표는 당해 기업군에 속하는 기업들의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을 이중계산을 피하기 위하여 내부거래를 상계제거한 후 각각 수평적으로 결합함으로써 작성된다. 반면 연결재무제표는 법률적으로는 각각 별개의 독립된 회사가 법인소유지분 관계를 통해 경제적으로 지배종속관계를 형성하여 실질적으로는 단일기업과 같을 때 이들을 같은 기업군으로 보고 그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라 정의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연결재무제표와 결합재무제표의 가장 큰 차이점은 결합재무제표의 경우 결합기준으로 단지 법인소유지분을 기준만을 적용하여 지배력을 판정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소유지분을 법인지분과 함께 고려하는 실질적인 경영지배력기준(우리나라 결합재무제표상 적용기준은 공정거래법상 30대 기업집단의 계열회사들)을 적용하여 판정한다는 점이다. 또한 결합재무제표의 경우 연결대상기업과는 달리 결합대상회사들간에 지배·종속관계가 성립되지 않으므로 지배주주와 외부주주를 별도로 분리하

여 회계처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밖의 투자와 자본의 상계 제거, 채권과 채무의 제거, 내부미실현이익의 제거 등은 연결재무제표와 결합재무제표상 처리에 있어 기본처리는 동일하다.

결합재무제표가 중요 회계현안이 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현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자산규모 70억원 이상 주식회사의 경우 각 개별회사는 개별재무제표를, 그리고 지배회사가 되는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연결재무제표는 지배회사 지분율기준 중심으로 연결대상회사를 판정하므로 재별과 같이 개인소유 중심구조로 되어있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소유구조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단점을 지니고 있다. 특히 IMF사태가 발생한 이후 가장 중요한 발생원인 중 하나로 대기업(재별) 총수들의 방만한 경영에 의한 무분별한 사업확장이 지적되고 있는데, 결국 이러한 일이 가능했던 것은 기업경영성과를 투명성 있게 표시해줄 수 있는 재무제표의 부재로 인한 사전 감시기능의 미비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결합재무제표 제도는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즉 결합재무제표는 우리나라의 독특한 기업들의 지배구조에 바탕을 두고 작성되는 재무제표이며, 재별기업집단에 대한 투명한 재무정보의 창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결합재무제표는 연결재무제표의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대부분의 이론 및 회계원칙들이 연결개념에 기초하고 있다. 향후 우리나라의 기업지배구조에는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며 이에 따라 결합재무제표가 갖는 의미에도 상당한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즉 지주회사제도의 도입 및 계열회사 매각을 통한 구조조정이 가시화 될 경우 결합대상 회

I.서론

사들의 수는 대폭 줄어들 것이고 중국적으로는 결합재무제표는 연결재무제표로 대체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본 연구보고서에서는 결합재무제표는 한시적인 재무제표로서 향후 보다 일반적인 연결재무제표로 통합될 것이라는 기본 시각하에서 현행 연결재무제표와 결합재무제표와의 관련성 및 개선방안 등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제1부에서는 '99년부터 시행예정인 결합재무제표의 보다 구체적 작성 방안을 검토하였고, 제2부에서는 향후 그 중요성이 보다 강조될 연결재무제표의 개선방안을 국제회계기준과 외국의 사례들을 참조하면서 제시하였다. 부록에서는 연결회계제도와 결합회계제도에서 개선방안으로 언급된 부문별회계제도와 1998년 4월 개정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을 수록하였다.

II. 결합재무제표에 대한 개요

1. 개념

결합재무제표(Combined Financial Statements)란 법률적으로는 독립적이거나 경제적으로는 단일체인 여러 기업의 재무제표를 수평적으로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끼리 결합한 것으로, 계열기업간 채권·채무 그리고 내부손익거래를 상계제거 한다. 즉 결합재무제표는 회사간 지분소유관계를 떠나 2개 이상의 기업이 특정개인에 의해 지배되고 있는 경우 대상회사들의 개별재무제표를 내부거래 상계제거한 후 수평적으로 결합한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연결재무제표와 결합재무제표의 가장 큰 차이점은 결합재무제표의 경우 연결기준으로 지분율기준에 의해 지배력을 판정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경영 지배력기준을 적용한다는 점이다.

전세계 회계제도를 선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미국의 경우를 보면, 1959년 미국회계기준(ARB No.51)에서는 한 개인이 여러 회사에 대하여 지배적 주식지분을 가지고 있고 이들 회사의 영업이 서로 관련되어 있을 경우 연결재무제표 대신 결합재무제표를 작성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관련회사집단이나 비연결종속회사집단, 공동지배회사집단에 대해 결합재무제표의 작성을 개념적으로는 허용하고 있다. 결합재무제표와 연결재무제표의 차이점은 <표 II-1>에 요약되어 있다.

<표 II-1> 연결재무제표와 결합재무제표의 비교

	연결재무제표	결합재무제표
1. 연결 및 결합 범위와 재무제표수	계열기업군내 각각의 지배회사(A)와 그 종속회사(B) (다수의 연결재무제표 작성 가능)	계열기업군내 소속 모든지배회사(A)와 그 종속회사(B) 및 계열회사(C) (1개의 결합재무제표만 작성됨)
2. 연결 및 결합 기준	투자지분에 의한 지배력(50% 초과 또는 30%초과소유 최대주주)	동일 계열기업군에 의한 실질적인 경영지배력
3. 지배력의 주체	법인소유지분	법인 및 개인소유지분
4. 재무제표 작성자	각각의 지배회사	계열기업군에서 선정한 모회사, 지배회사 등
5. 작성이론	지배회사이론	기업실체이론
6. 정보이용자	각 지배회사의 이해관계자 (예 : 거래처, 투자자)	계열기업군의 이해관계자 (예 : 국내외 금융기관, 정책당국)
7. 업종구분	업종 또는 기업별 구분	계열기업군의 전업종을 통합 (금융, 보험, 증권 등은 별도 통합 구분표시 가능)
8. 상호지급보증	종속회사(B)이외의 계열회사(C)의 보증채무는 연결대차대조표에 계상 불가	종속회사(B)이외의 계열회사(C)와 계열회사(E)의 보증채무도 결합대차대조표에 주석 공시
9. 내부거래(자본, 매입, 매출, 대출, 차입 등)	지배회사(A)와 종속회사(B)간의 내부거래 상계	지배회사(A), 종속회사(B) 및 계열회사(C,E)간의 모든 내부거래 상계
10. 회계처리방법	연결재무제표기준 (지배회사(A)와 종속회사(B)의 연결에 적용)	결합재무제표기준(기준작성중)

2. 특징

현재 결합재무제표에 관해서는 외감법과 시행령의 개정으로 도입시기와 대체적인 윤곽만이 확정된 상태이고 구체적 작성기준에 관한 초안은 공청회를 거쳐 10월경에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진행된 결합재무제표관련 사항들을 종합하여 결합재무제표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결합재무제표 형식으로 기업집단연결재무제표가 작성될 경우 기존의 연결재무제표보다 훨씬 간편하게 작성될 수 있다. 왜냐하면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가장 어려운 지분계산이 간단히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연결재무제표 작성시는 별도의 외부주주지분(Outside Interest)을 계산하게 되며 연결재무제표상 부채와 자본항목 사이에 표시하게 된다. 반면 결합재무제표의 작성시 외부주주지분계산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계열기업간 내부거래만 제거하면 되기에 작성에 있어 연결재무제표에 비해 상당한 간편함이 존재한다. 둘째, 연결재무제표가 기업들을 지배회사 중심으로 수직적으로 연결하는데 비하여 결합재무제표는 수평적으로 결합한다는 점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즉 연결재무제표의 경우 종속회사들의 재무제표를 지배회사 입장에서 연결한 후 외부주주지분 뒀만큼을 제거하는 수직적 연결절차를 거치나 결합재무제표의 경우는 계열회사의 재무제표를 내부거래 제거 후 수평적으로 합치는 절차만을 거친다. 셋째, 연결재무제표는 지배회사가 존재하여 그 지배회사의 재무제표를 중심으로 종속회사의 재무제표를 합산하게 되나, 결합재무제표의 경우는 지배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결합재무제표의 경우 외부주주지분을 별도로 구분하기가 매우 어렵다.

3. 결합재무제표의 유용성

결합재무제표는 연결재무제표가 지니고 있는 대부분의 장점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우선 연결재무제표의 유용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① 연결재무제표는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가 있는 기업군 전체에 대한 재무상태와 경영상태를 알려줌으로써 개별재무제표가 제공할 수 없는 재무정보를 제공한다.
- ② 지배회사와 종속회사를 경제적인 단일실체로 파악하여 연결실체 내에서의 내부거래와 미실현이익이 제거되어 지배회사와 종속회사 또는 종속회사간의 부당한 회계조작을 방지할 수 있다.
- ③ 국제자본시장에서는 연결재무제표가 기본회계정보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해외진출기업이나 해외에서 자본을 조달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의 작성 필요성이 높아진다.
- ④ 기업집단의 경우 상호간의 지급보증, 담보제공 및 자금대여 등의 행위로 인해 기업집단내에 속한 기업상호간에 계속기업으로서의 위험이 상존하므로 기업집단 전체의 위험도 평가에 있어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하지만 앞서도 언급하였듯이 연결재무제표는 연결대상이 되는 지배·종속회사의 범위가 우리나라의 지배구조를 올바르게 반영시키지 못하고 있어 나름대로의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결합재무제표의 작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장점은 다음과 같다.

II. 결합재무제표에 대한 개요

첫째, 주식투자자 및 채권자들에게 당해 기업집단 전체의 수익성 및 위험도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우리나라 계열기업들은 계열기업간의 출자뿐만 아니라, 지급보증, 외상매출, 대여금 등으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와같은 지배구조하에서 계열기업 중 하나의 회사가 부도가 나게 되면 그 여파가 타계열기업에게까지 미쳐 기업집단 전체의 경영상황을 심각하게 악화시킨다. 결합재무제표는 기업집단의 재무상황을 투명성 있게 전달함으로써 기업집단 전체의 위험을 사전에 예고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사전에 기업집단내의 분식결산과 비정상적 내부거래 등이 억제되고 정보공개가 확대됨에 따라 주가가 기업집단의 경제적 실질에 따라 합리적으로 형성될 수 있어 증권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기업집단내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내부거래를 제거함으로써 제품의 고가 및 저가 매출을 통한 이익조작을 회계정보에서 제거할 수 있고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기업의 실질담보 가치를 초과하는 여신공여로 인한 금융기관의 부실화를 회계정보의 투명성을 통해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된다. 참고로 <표II-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96년도 30대그룹 158사 대상으로 조사된 내부거래현황은 매출액 기준으로 총매출 273조 2,286억원중 73조 3,600억원(26.85%)이고 매입액기준으로는 총매입 238조 2,677억원중 64조 4,610억원(27.05%)으로 나타났다.

<표 II -2> 내부거래현황 ('96년도 30대그룹 158사 대상)

(단위 : 억원, %)

구분	총매출액	그룹내부매출액	비율
현대	567,836	199,347	35.11
삼성	516,363	156,363	30.28
아남	13,411	10,413	77.65
고합	19,509	9,054	46.41

*현대와 삼성그룹은 거래금액기준으로 각각 1,2위이고 아남과 고합그룹은 거래비중 기준으로 각각 1,2위임.

*출처 : “연결재무제표를 중심으로 한 기업회계제도 연구”, 정철연, 주식 1997. 8

둘째, 투자자보호 측면에서도 결합재무제표의 도입 필요성은 제기될 수 있다. 결합재무제표의 도입으로 계열회사간 내부거래의 이중계상 등 회계 및 분식결산이 원천 봉쇄되고 기업집단의 자의적인 회계처리가 방지되어 회계정보의 신뢰성과 기업경영의 투명성이 확보되어 기업집단의 가치에 대한 투자자의 적절한 평가가 가능해지며 투자자의 건전한 투자를 유도할 수 있다.

셋째, 결합재무제표를 공식적으로 작성하여 외부감사를 받게 함으로써 해외에 공시하는 정보에 대한 신뢰성을 부여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회계실무에서는 1970년대 들어 금융기관 여신관리협정에 의거 30대 기업집단의 그룹재무제표가 작성되어 왔으며, 일부재벌기업이 그룹홍보, 사채발행 등 해외자본조달목적으로 기업집단재무제표를 영문으로 작성하여 이를 외국은행이나 외국바이어 등에게 제한적으로 배포해 오고 있으나 이것은 외부감사를 필하지 않아 신뢰도가 낮았다.

넷째, 정부의 공정거래법 및 여신관리제도의 운영, 경제성장지표의 파악, 조세정책 및 중소기업 육성정책의 수립에 유용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특히 결합재무제표는 기업집단 전체의 자산·부채 규모 및 상호의존도를 보여줌으로써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기업지배구조의 조정에 있어서 유용한 도구로 사용될 수가 있다.

Ⅲ. 결합재무제표 관련 외감법 및 시행령 내용

결합재무제표의 구체적 사항에 관한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 시행령에 따르면 결합재무제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대규모 기업집단 즉 30대그룹이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하며 작성대상에는 업종과 국내외를 불문하고 모든 계열사가 포함된다. 다만 대규모 기업집단에 들어가 있지 않은 기업과 부도를 낸 기업 등은 제외된다. 외감법에서는 기업결합재무제표의 개념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기업집단이 소속회사의 재무제표를 결합하여 작성하는 기업집단결합대차대조표·기업집단결합손익계산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로 정의하였다. 여기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기업집단」이란 동일인이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의 집단을 말하는 것으로서 동일인이 회사인 경우에는 그 동일인과 그 동일인이 지배하는 하나 이상의 회사의 집단을, 동일인이 회사가 아닌 경우에는 그 동일인이 지배하는 2이상의 회사의 집단을 말하며, 사업내용 지배여부의 판정기준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동일인과 그 특수관계자의 소유주식이 발행주식의 30% 이상이거나 임원의 임면 등으로 당해 회사의 경영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결합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할 기업집단 및 그 소속회사인 계열회사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제1조의3 제1항), 계열회사 해당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증권선물위원회는 기업집단 소속회사로부터 제출 받은 재무제표·주주명부 등을 기초로 매년 5월말까지 결합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할 기업집단을 확정하고 그 계열회사에 대하여 이를 통보하도록 하였으며(제1조의3 제2항 및 제4항) 통보를 받은 계열회사가 속한 기업집단은 통보 받은 후 2주 이내에 계

열회사중 결합재무제표를 작성할 하나의 회사를 증권선물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였다(제11조의3 제3항).

결합재무제표는 외감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외부감사대상이 되며, 이 경우 감사인은 연결재무제표나 상장법인의 재무제표와 마찬가지로 회계법인으로 한정시킬 방침이다(제3조 제1항 단서). 결합재무제표 감사인의 선임은 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월 이내로 하였으며, 감사인 선임절차로서 감사의 제청과 정기주주총회 승인은 그 적용을 배제하였다(제4조 제1항, 제2항 단서). 그리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래은행(주거래은행)이 회사의 동의를 얻어 증권선물위원회에 감사인의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가 이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14조의3 제1항 제8호의2). 감사인은 계열회사의 회계장부 등을 열람·등사하거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증권선물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계열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으며, 필요시 계열회사 감사인에게 협조요청을 할 수 있다(제6조). 그리고 결합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할 회사는 이를 감사인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감사인은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당해 회사 및 증권선물위원회와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제7조 및 제8조). 결합재무제표를 작성한 회사는 물론 그 계열회사는 감사인의 감사보고서와 함께 결합재무제표를 비치·공시하도록 하였다(제14조 제1항).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표 III-1>과 같으며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III-1> 결합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시행령 주요 내용

구분	시행령 내용
작성대상	대규모 기업집단
작성범위	업종 불문 국내외 계열사
작성서류	결합대차대조표, 결합손익계산서, 결합현금흐름표
작성회사	계열사 중 1개사 지정
제출시한	결산일부터 4개월 이내

Ⅲ. 결합재무제표 관련 외감법 및 시행령내용

1. 작성의무화 대상 기업집단의 범위

1997년 12월 29일자로 개정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 1조의 2, 3에서는 작성대상을 독점금지 및 공정거래법상의 기업집단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조의 3에서는 그 구체적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였다. 개정된 외감법 제1조의 3 제2항에는 증권선물위원회가 결합재무제표를 작성할 의무기업집단을 확정·통보하도록 되어있다.

개정된 외감법 시행령에 의하여 확정된 작성의무화 기업집단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대규모 기업집단과 전년도에 대규모기업집단에 소속됐던 그룹이다. 공정위는 매년 30개 그룹에 대해서 대규모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있으므로 결합재무제표 작성대상 그룹은 30개를 조금 넘는다. 다만 결합재무제표 작성대상이더라도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연결재무제표가 그룹전체 자산총액의 80%이상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만으로도 그룹의 사정을 알 수 있으므로 제외하도록 하였다. 또 부도를 냈거나 법정관리·화의 신청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계열사의 자산총액이 그룹 자산의 50%를 넘는 대규모기업집단도 작성의무가 면제된다. 증권선물위원회는 매년 5월말까지 결합재무제표를 작성해야하는 그룹을 지정하여야 한다.

참고로 1998년 2월 2일자 기준 공정거래법상 30대 대규모 기업집단은 <표 Ⅲ-2>과 같다.

<표 III-2> 大規模企業集團 現況(1998.2.2기준)

順位	企業集團名	系列會社數	順位	企業集團名	系列會社數
1	現代 (鄭周永)	58	16	한 술 (李仁熙)	21
2	三星 (李建熙)	59	17	曉星 (趙錫來)	21
3	엘지 (具本茂)	54	18	東國製鋼 (張相泰)	17
4	大宇 (金宇中)	34	19	眞露 (張震浩)	16
5	에스케이 (崔鍾賢)	43	20	코오롱 (李東燦)	26
6	雙龍 (金錫元)	24	21	高合 (張致赫)	14
7	韓進 (趙重勳)	25	22	東部 (金俊起)	34
8	-	-	23	東洋 (玄在賢)	23
9	한화 (金昇淵)	31	24	해태 (朴健培)	15
10	롯데 (辛格浩)	28	25	뉴코아 (金義徹)	18
11	錦湖 (朴晟容)	33	26	아남 (金向洙)	16
12	漢拏 (鄭仁永)	19	27	韓一 (金重源)	7
13	東亞 (崔元碩)	22	28	거평 (羅承烈)	19
14	斗山 (朴容昆)	23	29	대상 (林昌郁)	20
15	大林 (李峻鎔)	21	30	신호 (李淳國)	20
計					761

2. 결합대상 계열사

개정된 외감법 제1조의 2 제3호에서 작성대상을 독점금지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기업집단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조의 3에서는 그 구체적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다.¹⁾

시행령에 따르면 결합채무제표 작성이 의무화되는 대규모기업집단의 계열사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전부 결합대상이 된다. 특히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예외를 두지 않아 그룹 계열의 보험회사, 종금사, 증권사, 리스사와 일부 지방은행도 결합채무제표 작성범위에 들어간다. 다만 계열사 가운데 부도가 났거나 법정관리 또는 화의신청, 영업정지 다른 기업과 합병되는 등의 계열사는 제외하기로 했다. 또 계열사 가운데 자산총액이 70억원을 넘지 않는 소규모 기업도 결합채무제표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결합채무제표 작성 대상 기업들은 작성범위에 금융기관과 해외 현지법인이 포함되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 금융기관을 포함시킬 경우 금융기관의 차입금 비율이 높아 그룹 전체적으로 채무구조가 나빠게 나타난다는 것을 그 이유로 들고 있다.

1)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기업집단 결합채무제표(이하“결합채무제표”라 한다)라 함은 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하는 기업집단(이하 “기업집단”이라 한다) 이 소속회사의 채무제표를 결합하여 작성하는 기업집단 결합대차대조표·기업집단 결합손익계산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말한다.“

3. 결합재무제표 작성 대표회사

개정된 외감법 제1조의 3 제3항에는 증권선물위원회에서 대표회사를 지정하기로 정해졌다. 연결재무제표의 작성주체는 지배회사가 되는 것이 당연하지만 결합재무제표는 모든 계열회사를 총괄적으로 지배하는 객관적인 지배회사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기업집단내에서 작성주체를 임의적으로 결정하지 않으면 안되는데 그 작성주체는 대체적으로 그룹내의 최상위 지배회사 또는 최대회사가 될 수도 있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소위 오너(owner)가 상근 또는 지휘하고 있는 그룹본부(회장비서실, 종합기획실 등 명칭에 관계없이)가 소속되어 있는 주력회사가 될 수도 있다.

시행령에 따르면 그룹 계열사 가운데 간판격인 기업이 그룹의 결합재무제표를 만들어야 한다. 증권감독원은 대주주(그룹 회장)가 이사로 등재돼 있는 회사 가운데 자산총액이 큰 회사, 12월에 결산을 하는 기업이라는 3가지 요건을 충족시키는 회사 가운데 한 곳을 골라 결합재무제표 작성회사로 지정할 계획이다.

4. 결합재무제표의 종류

현재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및 현금흐름표의 작성을 의무화하는데는 대부분 찬성을 하나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의 포함여부는 논란의 소지가 있다. 결합이익잉여금계산서는 단순한 개별기업 이익잉여금의 합계치에 불과하기 때문에 결합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가 큰 의미를 가

Ⅲ. 결합재무제표 관련 의감법 및 시행령내용

지지 못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실무적으로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만 작성되면 결합이익잉여금계산서의 작성은 문제가 되지 않고 있으며 연결재무제표에서도 연결이익잉여금계산서가 의무화되어 있는데 결합재무제표에서만 제외시킬 필요는 없다는 주장 또한 만만치 않다. 이들은 정보이용자에게 보다 많은 정보의 제공이라는 측면에서는 결합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포함시켜야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번에 확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30대그룹이 의무적으로 작성해야하는 결합재무제표는 기업집단결합대차대조표와 기업집단결합손익계산서, 그리고 기업집단결합현금흐름표다. 기업의 경우 그룹 전체의 내부정보가 훤히 드러나기 때문에 결합현금흐름표를 작성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입장을 표명하여 왔다. 그러나 재정경제부와 증권감독원 등 관계당국은 금융기관을 제외하거나 현금흐름표 작성을 면제할 경우 결합재무제표 제도 도입의 실효성이 크게 저하된다고 판단해 원안대로 시행령에 반영하였다.

5. 작성기준일과 공시시기

연결재무제표의 작성기준일은 지배회사의 결산일로 하면 되지만, 결합재무제표는 기업집단에 소속된 계열회사 모두를 지배하는 회사가 없는 것이 보통이므로 그 작성기준일을 결정하는데 애로가 있다. 따라서 앞에서 언급한 작성주체로 결정된 회사의 결산일을 당해 기업집단의 결합재무제표 작성기준일로 하는 수밖에 없다. 한편, 결합재무제표를 작성하여 관계기관에 제출 또는 공시할 기한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지정된 회사는 결산일로부터 4개월이내(매년 4월말까지)에 결합재무제표를 작성해 감사인인 회계법인에게 제출하고 감사인은 그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합감사보고서를 증권선물위원회 등에 내야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결합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절차를 다른 재무제표의 경우와 비교하면 <표 III-3>와 같다.

<표 III-3> 각 재무제표별 외부감사절차

구분	개별재무제표	연결재무제표	결합재무제표
작성회사	당해회사	지배회사	증권선물위원회가 매년5월까지 작성하여야 할 계열회사 범위 통보, 이로부터 2주 이내에 작성회사 결정신고
감사인 선임 (12월 결산기준)	4월	4월	6월
감사인 선임절차	감사제청 주주총회 승인	개별감사인과 동일	자율적으로 결정
감사보고서제출 (시행령)	익년도 정기총회 종료후 2주이내	익년도 4월까지	익년도 6월까지
감사인 자격 (시행령)	개인감사반 회계법인	회계법인	회계법인

출처 : 조정찬, “결합재무제표의 도입취지 및 운영전망”, 『공인회계사』, 98. 2, p26.

이상 살펴본 결합재무제표 작성기준중 주요 쟁점이 되었던 사항들의 장·단점을 비교해보면 <표 III-4>과 같다.

Ⅲ. 결합재무제표 관련 외감법 및 시행령내용

<표Ⅲ-4> 결합재무제표관련 주요 쟁점사항의 장·단점

구분	장점	단점
해외계열회사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해외에서의 외화부채 차입 규모 등이 파악될 수 있음 - 몇몇 회사들이 내부적으로 작성하는 결합재무제표에도 해외계열 회사들이 포함되어 있어 작성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임 - 우리나라 회계기준이 국제회계기준을 상당폭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계열회사의 재무제표 환산에도 그다지 큰 어려움은 없을 것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현지계열회사들의 회계자료를 수집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
금융업종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열기업군 전체에 대한 정보를 누락 없이 재무제표상에 나타낼 수 있음. - 회계계정의 통합을 통해 각기업들을 단일화 시킬 수 있음. - 미국과 국제회계기준도 연결대상으로 금융업종을 추가시키고 있는 추세여서 국제적 정합성 측면에 부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업종의 성격상 내부거래가 많을 수 밖에 없으며 이같은 내부거래를 제거할 경우 외형이 상당폭 줄어들어 또다른 정보의 왜곡을 가져올 수 있음. - 금융업과 비금융업의 회계계정과목이 상당한 차이가 있기에 이를 수평적으로 통합하는데는 상당한 무리가 따름 - 연결에서도 제외시키고 있는데 결합에 포함시킬 경우 기업입장에서는 이중의 작성부담을 지게 됨.
총자산선정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계 목적선정 기준인 공정거래법상 30대 기업기준보다 경제적 실질에 부합하는 기준임. - 한번 선정되면 쉽게 바뀌지 않아 작성에 일관성이 있음. - 향후 기업분할을 통해 기업자산규모를 축소해나가는 기업집단의 경우 총자산기준에 의해서는 손쉽게 결합재무제표 작성의무를 면제받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합재무제표의 주목적에 부합하는 선정기준이 되기가 어려움 - 총자산규모는 많으나 부채비율과 내부거래규모가 작은 회사들을 자산기준에 따라 포함시키면 결합재무제표의 작성 취지에 어긋남

IV. 결합재무제표 작성의 구체화 방안 검토

결합재무제표를 '99 회계연도부터 전격적으로 도입하기로 방침이 정해졌지만 연결재무제표가 의무사항으로 작성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굳이 추가적 비용을 들이며 결합재무제표를 도입해야만 하는 가라는 근본적인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다. 하지만 결합재무제표를 필수적 재무제표로 받아들이기로 한 현재의 상황에서 보다 중요한 문제는 과거 연결재무제표의 도입시에도 발생하였던 세부적 준비의 미흡으로 인한 혼란의 재발을 방지하는 것이다. 결합재무제표의 조기정착을 위해 선결되어야 할 과제 및 구체화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결합재무제표 작성에서 제외될 수 있는 회사의 결정문제이다. 개정 외감법(제1조의 3 제1항) 및 시행령안(제1조의 4 제1항)에 의하면 기업집단결합재무제표에 포함되는 회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하는 회사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한 동 대상회사 중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한 기준에 따라 재무정보의 유용성이 크지 않은 회사 등은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결정이 최종적으로 이루어짐에 있어서는 재벌그룹내부의 사정에 정통한 기업과 회계감사인의 의견이 보다 적절히 반영될 수 있는 체제가 갖추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결합재무제표에 상이한 업종의 포함 문제이다. 우리나라 대규모기업집단(소위 재벌)들은 상이한 업종을 혼재하여 보유하고 있는데 개정 외감법 및 시행령에 의하면 금융업을 포함한 모든 업종이 결합재

무제표에 포함된다. 연결재무제표에서는 금융업이 제외되어 큰 문제가 없었으나 결합재무제표에서 금융업이 포함될 경우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 특히 계정과목의 상이한 체계는 재무제표 이용자들의 재무정보이용에 상당한 어려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한가지 해결방안으로 결합재무제표에서 금융업종과 비금융업종을 구분 표시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등에서 multi-column을 사용하여 금융업에서 발생한 금액, 비금융업에서 발생한 금액, 합계 등을 각각 구분 표시하는 것이다.²⁾ 이렇게 되면 재무제표 이용자가 금융업이 포함됨으로 인한 효과를 쉽게 알 수 있게 되며, 각자의 목적에 따라 재무정보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금융업종의 경우 총자산과 총부채에서 대조계정 잔액을 동시에 차감함으로써 불필요하게 자산과 부채가 과잉 계산되는 것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시의 미비는 이미 국제회계기준이 채택하고 있는 업종별 부문정보를 통해 공시하면 될 것이다.

세계, 외감법 시행령에 의하면 금융업종만이 아니고 해외계열회사들도 결합에 포함되어야 한다. 기업집단의 총외채가 얼마나 되는지를 알아야 부도위험을 파악할 수 있고 해외계열회사의 경우 모기업이 지급보증을 서는 경우가 대부분인 점을 감안한다면 해외법인들도 포함시키는 것이 합당하다. 단 일정규모 이하의 해외계열회사는 중요성 차원에서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해외계열회사가 주식회사의 형태가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이에 해당하는 해외계열회사는 지분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도록 하고 지분법이 적용된 기업의 자산, 부채 및 자본금액, 투자비율 및 투자금액 등을 주식으로 표시하도록 하

2) 이만우, “기업집단재무제표의 도입방안”, 대한상공회의소 세미나자료, 1998. 4. 21, p.16

IV. 결합재무제표 작성의 구체적 방안 검토

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네째, 결합재무제표의 감사인 결정 문제이다. 결합재무제표의 작성 및 감사에는 많은 정보와 인원의 통합관리가 요구되기에 감사인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문제이다. 현행 연결감사기준에는 종속회사의 감사인이 외감법에 의하여 감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타 감사인의 직업적 적격성과 독립성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감사실무상으로는 결합재무제표 감사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회계처리기준검토, 주요 결산항목의 파악, 내부거래 검토 등 많은 부분에 있어 종속회사 결산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결합대상 계열회사의 범위가 넓어 결합재무제표의 감사인이 전체 대상회사 중 많은 부분을 직접 감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으며 이럴 경우 책임소재의 문제가 제기 될 수 있다. 이 문제는 가능한한 지배회사를 감사하고 있는 감사인에게 결합재무제표도 감사토록 함으로써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왜냐하면 결국 기업집단이란 가장 핵심적인 지배회사를 중심으로 해서 형성되어 있는 것이며 따라서 지배회사 감사인이 결합재무제표 감사를 책임지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무리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다섯째, 회계처리방법의 통일 문제이다. 현행 연결기준은 대체적 처리방법을 용인하고 특별한 사유로 다른 회계처리방법을 채택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하는 것을 허락하고 있다. 이러한 원칙을 결합재무제표 작성시에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일부에서는 회계처리방법의 통일을 기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각 기업들은 자체의 경제적 실질을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회계원칙을 취

해야 하며, 따라서 결합재무제표를 작성키 위해 회계처리방법의 통일을 기한다는 것은 득보다는 실이 많을 것이다. 이러한 방식보다는 결합재무제표의 왜곡을 가져오지 않는한 개별기업들의 독자적인 회계처리방법을 인정하고, 차이점은 적절한 방법을 통해 공시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여섯째, 투자자본계정 상계의 단순화를 유도하여야 한다. 결합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대상 기업수가 수백 개에 이르고 매년 빈번한 자본계정의 변동이 이루어질 경우 이들을 추적하여 회계처리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특히 도입 초년도에는 이와 같은 사항들은 일일이 추적하기에는 엄청난 비용이 들 뿐 아니라 작성에서도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 각 사업년도말에 투자·자본계정의 현황을 파악하여 상계제거 분개를 작성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 경우 연도중 발생한 유·무상증자, 주식배당 등 자본계정의 변화에 따른 회계처리를 개별적으로 고려할 수 없게 되나 결합조정차·대를 계산하는 방식과 비교할 때 차이는 잉여금의 인식방법의 차이 정도가 되고 그 금액적 중요성은 크지 않을 것이다. 다만, 최초 결합재무제표작성시나 회사의 취득 또는 처분과 같은 지배력에 변화(Entity Change)가 있는 경우는 개별적으로 투자·자본상계 분개를 작성할 필요는 있을 것이다.³⁾ 앞서도 설명한 바와 같이 결합재무제표는 향후 구조조정이 가속화됨에 따라 그 중요도가 현재보다는 많이 감소할 것이 예상된다. 그렇다면 도입초기부터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여 결합재무제표 작성에 있어서 가능한 한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3) 안영균, “결합재무제표의 작성방법과 문제점”, 『결합재무제표의 도입효과와 문제점』, 고려대학교 기업연구원, 1998.3., p.15.

IV. 결합재무제표 작성의 구체적 방안 검토

일곱째, 결합재무제표 기준상의 지분법 적용여부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결합재무제표는 주요목적이 기업집단의 자산·부채의 적정한 공시를 통한 경영투명성 확보이기에 지분을 만큼의 당기순이익만 반영하는 지분법 적용이 그다지 큰 의미는 가지지 못할 것이다. 또한 결합대상기업선정기준을 공정거래법상 계열회사로 맞출 경우 결합지분율이 낮아도 결합대상에 포함되는 회사가 상당수 있기 때문에 현행 연결기준상 지분법 기준을 결합재무제표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있다. 따라서 연결기준상의 지분법 적용대상을 결합재무제표에 맞게 수정 적용할 필요가 있다. 한편 해외계열회사의 경우는 회사의 형태가 주식회사가 아닌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회계처리방법에 있어서도 상당한 차이를 보일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에는 지분법을 통해 결합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정보 간결성 측면에서 보다 합리적인 것이다.

여덟째, 주식의 완전성 확보가 필요하다. 주식은 재무제표의 중요한 일부분으로 재무제표 이용자가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이해하기 위하여 반드시 제공되어야 할 정보다. 따라서 결합재무제표의 경우에도 완전한 형태의 주식이 함께 제공되어야 한다. 즉, 결합에 따른 특수 항목 뿐만 아니라 기업회계기준에서 요구하고 있는 일반 주식사항도 함께 제공되어야 한다. 결합재무제표는 다수회사의 재무제표를 합산하기 때문에 주식의 유용성은 더욱 필요해진다. 포함되어야 할 주식사항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있다.⁴⁾

4) 이만우, "기업집단 결합재무제표의 도입방안", 대한상공회의소, 1998.4, p35.

- 일반적인 사항

- ① 결합재무제표의 작성대상에 속한 결합회사, 제외된 회사의 상호, 투자주식수, 투자비율 및 그 사유
- ② 지분법 적용회사의 상호, 투자주식수 및 투자비율
- ③ 처음으로 결합재무제표의 작성대상에 속한 결합회사와 결합의 중지 또는 처분된 결합회사의 상호와 그 내용
- ④ 결합회사의 영업활동내용 및 결합회사간 영업활동의 관련성
- ⑤ 결합회사의 결산일이 결합재무제표의 작성기준일과 다른 경우에는 그 내용, 결합회사의 결산일로부터 결합재무제표의 작성기준일까지 발생한 중요한 사항 및 이의 조정 내용
- ⑥ 기타 결합방침에 관한 중요사항

- 회계처리기준

- ① 결합회사가 적용하고 있는 회계처리방법, 결합재무제표의 작성을 위하여 채택한 기준 및 절차를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과 이유 및 결합재무제표에 미친 영향
- ② 지배회사의 투자계정과 결합회사의 자본계정을 상계제거함에 있어서 적용한 방법과 그 내용
- ③ 결합조정차·대의 상각 및 환입내용
- ④ 미실현손익의 제거에 있어서 적용한 방법과 그 내용

아홉째, 순자산가액으로 가중한 지배주주지분율을 계산하여 주식으로 공시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다. 이 방법은 지배주주지분을 순자산가중치를 이용하여 계산해 내는 것으로서 지배주주지분율의 크기나 변동을 통해 해당 기업집단의 지배구조 건전성 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 즉 순자산 가중 지배주주지분율이 단순 지배주주지분율 보다 크게 하락한 경우 해당기업은 기업지배구조의 건전성이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IV. 결합재무제표 작성의 구체적 방안 검토

볼 수 있다.⁵⁾ 순자산 가중 지배주주지분을 정보의 주식 공시를 통해 결합재무제표의 목적 중 하나인 기업 지배구조의 건전성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순자산 가중 지배주주지분을 주식 공시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해 볼 만 하다.

현시점에서 결합재무제표의 조기도입을 주장하는 배경에는 기업그룹간 상호지급보증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현실적 측면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 하지만 상호지급보증 문제는 향후 2~3년내에 상당부분 해결될 것이며 이에 따라 많은 한계그룹 계열기업들이 도산할 것이고 M&A가 활성화 될 것이다. 또한 경영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소수주주권한은 더욱 강화될 것이다. 이와같은 기업경영환경의 변화가 도래할 경우 경영투명성 확보와 계열기업간 상호지급보증을 억제하기 위한 결합재무제표의 유용성은 상당부분 감소할 것이고 최근 논의되고 있는 지주회사제도의 도입마저 이루어지면 결합재무제표는 한시적인 회계제도로 머무를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회계제도의 규제적 성격이 지나쳐 회계고유의 기능을 왜곡하거나 약화시키지 않도록 결합재무제표의 실시에 있어서 신중한 고려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제2부의 연결재무제표제도 개선방안에서 언급하였듯이 결합재무제표를 연결재무제표기준으로 흡수 통합하도록 연결 기준을 개정해 나가야 할 것이다. 즉 기업의 경영투명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연결범위를 조정해 나가는 방법을 검토해야 할 것이며(이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제2부 연결재무제표 제도개선방안을 참조하기 바람)동시에 결합재무제표 기준 도입과정에서 논의되는 일부 주요항목을 연결재무제표기준에서도 받아들여 연결기준을 보완하여야 할 것이다.

5) 이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이만우교수의 『"기업집단 결합재무제표의 도입 방안", 대한상공회의소, 1998.4, p.30』를 참조하기 바람.

제 2 부

연결재무제표의 개선방안

I. 서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자산규모 70억원 이상 주식회사의 경우 재무제표의 작성 및 공시와 관련하여 각 개별회사는 개별재무제표를, 그리고 지배회사가 되는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연결재무제표기준에 의한 연결재무제표는 외국기업들의 경제 환경에 맞추어 만들어진 것이기에 우리나라 소유구조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제환경과 독특한 주식소유구조는 “재벌기업집단”이 경제를 주도하며 실질소유경영자와 특수관계인이 함께 기업주식을 소유하고 지배하는 측면이 강한데⁶⁾ 현재의 연결재무제표로는 여러 가지 제약으로 인해 재벌집단의 경제적 실질을 충실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단점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전체기업집단의 소유지분구조를 올바르게 반영하지 못하는 연결재무제표의 대안으로서 우리나라의 경제환경과 소유지분구조를 올바르게 나타낼 수 있는 결합재무제표가 도입된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앞서 제 1부에서는 결합재무제표를 주제로 다루었다. 하지만 향후 구조조정이 가속화되고 또한 지주회사제도가 도입될 경우 결합재무제표의 중요성은 상당히 감소할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결국은 현재보다는 개선된 형태의 연결재무제표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 예상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제 2 부에서는 연결재무제표 개선방안을 다루기로 한다.

6) 남상오, “기업집단결합재무제표 도입의 타당성과 기대효과”, 『회계저널 1993년 12월』, p. 41.

II. 현행 연결재무제표의 특성 및 한계

1. 연결재무제표제도의 변천 과정

연결재무제표는 1976년에 “상장법인 등의 회계처리에 관한 규정” 제5조에서 연결재무제표에 관하여 새로이 규정하면서 처음으로 도입되었는데 이에 따라 발행주식총수의 1/2 이상 소유 주식회사에 대하여 연결대차대조표, 연결손익계산서 2종의 작성이 시작되었으나 작성·공시·외부감사가 의무화되지 않았었다. 그 후 1985년 1월에 연결회계사항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연결범위를 확대하고 연결절차를 좀더 상세하게 규정한 “연결재무제표기준”이 제정되었으며 “연결재무제표에 관한 준칙”이 1987년 4월에 제정되었다. 1992년에는 연결회계기준 개정시 연결재무제표종류에 2종(연결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연결현금흐름표)을 추가하고 작성과 공시 및 외부감사를 의무화하였다. 1993년에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시 “실질지배력기준”에 대한 판단이 임의적이라는 이유로 본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들은 연결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현행 연결재무제표는 연결대차대조표, 연결손익계산서, 연결이익잉여금계산서, 연결현금흐름표의 4가지로 구성되게 되었다. 이후 1996년 12월 또 한차례의 연결재무제표기준의 개정작업이 이루어 졌다. 이 개정에서는 연결재무제표의 작성의무범위에 대하여 연결재무제표기준에서는 범위규정을 삭제하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지배, 종속의 관계조문을 인용하였고 해외종속회사의 재무제표 환산방법을 개선하였다. 또한 실무적 적용가능성을 고려하여 중요성이 적다고 판단되는 소규모회사는 지분법⁷⁾적용대상에서 제외하였고 준칙에 있던 규정중 연결재무제

7) 투자주식의 취득시에는 원가법·저가법·시가법과 같이 취득원가로 기록하고, 취득

표 작성의무와 관련되는 내용을 기준에 포함하고, 준칙중 수정이 필요한 사항 등을 보완하였다. <표 II-1>은 연결재무제표의 지금까지의 변천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표 II-1>연결재무제표기준및준칙의변천과정

개정일	개정취지	주요개정내용
85.1.1 제정	기존의 「기업회계기준」 내의 규정을 삭제하고 이를 대폭 수정보완하여 별도의 「연결재무제표기준」 제정함	-기존의 지분율기준에서 지배력 기준을 추가함으로써 연결범위를 보다 확대하였음
87.4.27 개정	연결재무제표작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연결재무제표준칙」의 제정	-그러나 여전히 연결재무제표의 작성과 공시의무가 없었기 때문에 실효를 거두지 못함
92.6.27 개정	「증권거래법 시행규칙」의 제정으로 인해 상장기업의 경우 연결재무제표가 증권거래소에 제출하는 주된 재무제표에 포함되었다. 또한 연결회계정보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서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연결기준 및 준칙을 일부개정	-상장회사의 경우 연결재무제표의 감사와 공시를 의무화함. -종전의 연결재무제표는 연결대차대조표 및 연결손익계산서 2가지 였으나 연결잉여금처분계산서(연결결손금처리계산서) 및 연결재무상태변동표를 추가함 -일시적 지배관계 및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이상의 주식을 소유하는 주주로서 인사-재무 등의 경영정책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명백할 경우 지배회사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규정을 삭제 -무의결권주는 지분률 계산시 제외하도록 함. -연결주당순이익, 연결회사간 채권-채무, 지급보증 및 담보제공 등을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공시내용을 확대함

일 이후에는 피투자회사의 순자산(지분)의 변동에 따라 투자주식의 가액을 조정하는 방법

II. 현행 연결재무제표의 특성 및 한계

개정일	개정취지	주요개정내용
94.6.10 개정	「기업회계기준」의 개정으로 연결기준의 일부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결재무제표 작성의무자를 상장회사에서 모든 외부감사대상회사로 확대함 -담보제공 및 지급보증액의 합계액이 자기회사 자본금의 100분의 30이상이거나 다른 회사 자본금 상당액을 초과하는 경우 연결대상에 포함하던 것을 삭제함으로써 연결범위를 축소함. -연결이익잉여금계산서에서 연결잉여금계산서로 개정함으로써 연결이익잉여금만을 다룬 종전의 규정에서 연결자본잉여금의 변동사항도 추가함. -연결재무상태변동표를 연결현금흐름표로 개정함.
96.12.26 개정	연결재무제표기준과 외감법과의 체계를 명확히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1조 : 제정근거를 외감법 13조 및 기업회계기준 제6조로 규정 -제3조 : 지배 종속의 관계를 외감법 시행령 제1조의3 제1항에 해당하는 관계로 인용 -제4조 :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에서 제외되는 종속회사를 외감법 시행령 제1조의3 제2항으로 인용 -소규모회사는 지분법적용대상에서 제외함

출처 : 이만우·김양호·노준화, “연결재무제표 개선방향”, 『상장협 연구보고서 96-1』, 1996. 3, p31. 및 최근 자료 보완

<표 II-2>는 1993년 연결재무제표의 감사 의무화 이후 상장기업중 연결재무제표 작성회사의 증가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1997년의 경우 상장기업중 연결재무제표 작성회사들의 연결에 따라 종속회사와의 내부거래를 제외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면 지난해 당기순손실규모가 2배로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증권감독원과 증권거래소(1998. 5. 5 발표)에 따르면 지배회사의 지위를 갖는 276개사가 종속회사(1,407개사)의 매출액 및 당기순이익을 합해 제출한 97사업연도 연결재무제표를 분석한 결과, 당기순손실 규모는 8조245억원으로 결합전 손실액인 4조345억원보다 2배정도 증가하였고 연결재무제표 매출액은 총 491조9,481억원으로 연결전의 390조3,575억원보다 26.03%가 증가했다.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했을때 순이익이 증가하거나 순손실이 감소하는 등 실적

이 호전된 회사는 71개사에 불과했으나 악화된 회사수는 무려 203개사에 달했다. 또한 조사대상중 거의 대부분인 273개사가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면 부채총계가 늘어나며 54개사는 연결후 실적이 흑자에서 적자로 돌아서 내부거래를 통해 이익을 과대계상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지배회사가 경영권이 사실상 동일인에게 있는 종속회사와의 내부거래를 통해 이익을 부풀렸거나 부실기업을 종속회사로 갖고 있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연결재무제표의 공시확충을 통해 기업지배구조의 개선과 경영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주장도 이같은 사실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참고로 미국의 경우 1933년 증권법과 1934년의 증권거래법에 따라 연결재무제표의 작성이 의무화되었다. 당시 연결재무제표는 개별재무제표에 대해 종속적인 위치에 있었다. 1959년에 제정된 APB No.51이 최초의 연결회계규정으로 연결재무제표를 주요재무제표로 부각시켰으며, 1971년에 제정된 APB Opinion No.18이 본격적인 연결기준으로 지금까지 연결회계처리의 가장 중요한 지침이 되고 있다.⁸⁾

<표 II-2> 상장사별 연결재무제표 작성 현황

구분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상장회사수	644	686	688	694	698	702	727	764
작성회사	135	1547	179	167	171	207(530)	274(955)	276(1407)
작성대상중 미작성회사	47	35	31	-	-	-	-	-

* '95년 및 '96, '97년 ()는 연결대상 종속회사수임.

출처 : 정철연, “연결재무제표를 중심으로 한 기업회계제도 연구”, 『주식』 1997. 8 및 최근자료 보완

8) 송인만·윤순석, 『중급재무회계』 고급회계편 제3판, 박영사, 1996, p.23

2. 연결재무제표의 특징

가. 연결재무제표와 회계주체이론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연결재무제표는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2개 이상의 회사로부터 생긴 기업집단을 단일의 조직체로 보고 지배회사가 당해 기업집단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종합적으로 보고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즉, 기업결합으로 한 기업이 다른 기업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다면 개별재무제표만으로는 기업집단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종속회사를 지배회사의 지점 또는 사업부와 같이 간주하여 지배회사를 중심으로 하는 기업집단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 등을 공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게 된다.

연결재무제표에 관한 이론으로는 기업실체이론과 지배회사이론이 있다. 이 두 이론은 기본적으로 회계주체에 관한 이론이다. 회계주체이론이란 해당 재무제표의 작성 및 보고대상이 되는 회계주체를 누구로 보느냐를 규명하는 이론이다. 구체적 재무제표 작성지침의 결정이나 외부주주지분⁹⁾에 대한 처리 문제 등이 연결회계주체를 누구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9) 종속회사의 주주는 크게 지배회사와 지배회사외의 외부주주로 구성되는 바 종속회사의 순자산 중 지배회사의 지분에 속하지 않는 부분, 즉 외부주주에게 귀속되는 종속회사의 순자산을 외부주주지분이라 한다. 연결실체의 주체를 지배회사로 보는 지배회사이론에 의하면 연결주체인 지배회사임장에서 볼 때 외부주주는 일종의 채권자로 파악되므로 외부주주지분은 부채로 간주된다.

1) 기업실체이론(Entity Theory)

기업실체이론은 미국 재무회계기준위원회(FASB :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Board)가 1991년에 발표한 연결정책 및 절차에 관한 논의(FASB Discussion Memorandum, Consolidation Policy and Procedures)에서 경제적 단위이론(Economic Unit Concept)이라는 말로 처음 사용한 용어로서 지배회사와 종속회사를 하나의 실체로 보아 연결재무제표가 연결실체내의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된다고 본다. 따라서 이 이론에 따르면 지배회사의 주주와 채권자뿐 아니라 외부주주를 포함한 모든 연결실체의 주주와 채권자들이 동등하게 취급된다.

기업실체이론은 자본주가 아닌 기업 자체를 관심의 대상으로 회계문제를 다루는 것이 뒤에서 언급하는 자본주이론과의 큰 차이점이다. 즉 기업의 자산은 기업 자체의 자산이며, 기업의 부채는 기업 자체의 부채이고, 이익은 자본주가 아닌 기업자체가 일정기간 획득한 부의 증가분이라고 본다. 따라서 기업실체이론에서의 연결재무제표는 소유관계를 떠나 독립적 인격을 지닌 기업실체인 기업집단의 관점에서 작성되어지고, 따라서 지배회사지분이나 외부주주지분이 동등하게 취급된다. 기업실체이론 하의 연결재무제표는 기업집단에 의하여 통제되는 자원이 지속적으로 평가되는 전체 기업집단의 안목을 반영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기업실체이론에서는 영업권 등을 포함한 종속회사의 모든 자산 및 부채가 공정가치로 대차대조표에 표시되며, 종속회사의 식별가능한 순자산의 공정가치와 장부가액의 차액은 지배회사지분과 외부주주지분에 지분비율에 의거하여 배분된다.

기업실체이론에 있어서는 지배회사지분과 외부주주지분 모두 공정

II. 현행 연결재무제표의 특성 및 한계

가치에 의하여 평가되어 일관성을 지니고 있다. 즉 외부주주지분은 매기 종속회사순자산의 연결상 공정가치에 기초해 계산하게 되는데 여기서 종속회사 순자산의 연결상 공정가치란 종속회사 주식 취득일에 있어서 지배회사가 종속회사의 주식을 100% 취득하였다면 지불하였을 금액을 말한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외부주주지분에 대해서도 투자차액이 산출되게 되어 이 개념을 연결재무제표 실무에 적용하기에는 공정가치의 산출 및 외부주주지분 관련 투자차액의 산출 등 적용상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반면 지배회사는 종속회사를 100% 소유하지 않더라도 종속회사와 하나의 경제실체로 구성하게 되므로 논리적인 방법이다.

2) 지배회사이론(Parent Company Theory)

지배회사이론(Parent Company Theory)은 연결재무제표는 지배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한 연장이며, 따라서 지배회사의 주주의 입장에서 판단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는 전통적인 회계이론인 자본주이론(Proprietary Theory)을 연결회계에 적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지배회사이론은 자본주이론 또는 소유주이론이라고도 불린다. 지배회사이론의 입장에서 보면 연결재무제표는 지배회사 주주에게 보고할 목적으로 작성되는 것이며, 지배회사는 종속회사의 자산·부채에 대한 개별적인 소유 또는 부담의 관계는 없으며, 단지 분할되지 않은 지분(Undivided Interest)을 가지는 데 불과한 것으로 본다.¹⁰⁾

이와같은 지배회사이론하에서는 연결재무제표는 지배회사의 주주와

10) 이만우·김양호·노준화, 우리나라의 연결회계제도의 개선방향, 한국상장사협의회, 1996.3 p.12 ~ 13.

채권자를 위하여 작성되며, 외부주주지분은 지배회사 주주의 입장에서 일종의 부채로 파악되며, 연결손익계산서상의 연결당기순이익은 지배회사 주주에게 귀속되는 당기순이익이며, 외부주주지분순이익은 연결당기순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일종의 비용으로 분류된다. 지배회사이론하에서 외부주주지분은 종속회사 순자산의 장부가치를 기준으로 계산되기에 외부주주지분과 관련해서는 투자차액이 산출되지 않는다. 투자차액은 지배회사가 종속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시점에서 종속회사 순자산의 장부가액 지분과 투자주식 취득원가와와의 차이로 지배회사에서만 발생한다. 외부주주지분에 대해서는 이를 구분하여 일종의 준부채(Quasi-Liability)로 분류하여 표시하며 외부주주지분에 해당되는 순이익은 일종의 비용으로 분류하여 보고한다.

3) 비례적 연결이론

한편 지배회사이론과 기업실체이론이외에 또 다른 연결주체이론으로 미국의 FASB의 연결정책 및 절차에 관한 검토요청서에서 소개된 바 있는 비례적 연결이론(Proportionate Consolidation)이 있다.¹¹⁾

비례적 연결이론에 따르면 연결재무제표 작성에 있어 종속회사의 외부주주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모두 제외시킨다. 연결재무제표는 지배회사의 개별재무제표의 연장으로 간주되며 지배회사의 자산, 부채와 수익 및 비용에 종속회사의 자산, 부채와 수익 및 비용 중 지분비율에 따라 지배회사에 귀속될 자산, 부채와 수익, 비용이 합산되어 연결재무

11) 비례적 회계이론에 관한 구체적 내용은 채규학·최창순, “연결회계제도의 정착을 위한 개선방안 연구”, 『상장협 연구보고서 92-2』, 상장사협의회, 1992. 11, p.20를 참조하기 바람.

II. 현행 연결재무제표의 특성 및 한계

제표가 작성된다. 외부주주지분에 귀속될 자산, 부채와 수익, 비용을 지배주주의 권리나 의무, 이익과는 무관하다고 보기 때문에 비례적 연결 개념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게 되면 타 이론과는 다르게 연결재무제표상 외부주주지분이 나타나지 않게 된다.

비례적 연결이론은 주로 실무적 편의에 의하여 개발된 것으로서 경제적 단위이론과 지배회사이론을 절충한 이론으로서 지분법의 적용과 마찬가지로 지배회사가 종속회사에의 투자를 지배회사의 재무제표에서 처리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지배회사개념의 연장 또는 지분법의 연장이라고 불리어지기도 하며 가장 순수한 형태의 지배회사개념이라고도 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기업실체이론, 지배회사이론 및 비례적 연결이론을 정리하면 <표 II-3> 과 같다.

4) 우리나라의 연결재무제표기준과 회계주체이론

우리나라의 연결재무제표기준에서는 원칙적으로 지배회사이론에 입각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내부미실현손익의 제거시에는 지배회사이론과 기업실체이론에 따른 처리를 모두 인정하고 있다. 한편 결합재무제표는 그 본질이 지배주주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결합대상 계열회사들의 이해관계자들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 기업실체이론을 따른다고 볼 수 있다. 기업실체이론과 지배회사이론 및 우리나라 연결기준의 구체적인 차이는 <표 II-4>과 같이 열거 될 수 있다.

< 표 II-3> 연결이론의 비교

문제	기업실체이론	지배회사이론	비례적연결이론
연결재무제표의보고단위	지배회사와 종속회사를 포함한 두 개 이상의 기업체	지배회사 및 종속회사에 대한 지배회사의 지분	지배회사 이론과 같음
연결의 조건	지배회사의 지배력(영업 및 재무정책의 결정에 대한)	지배회사의 지분을	지배회사 이론과 같음
연결재무제표의 표시	지배회사와 종속회사의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의 총계	지배회사의 종속회사에 대한 투자계정대신 종속회사의 자산,부채,자본,수익,비용,외부주주지분이 포함됨	지배회사 이론에서 외부주주지분만 제외함
외부주주지분의 성격	연결주체에 대한 소유권 일부	자본이나 부채중 어느곳에도 속하지 않는 준부채	연결재무제표에서 제외시킬 사항임
대차대조표상 외부주주지분의 표시	소유주지분으로 분류	부채와 소유주지분 중간에 표시	완전히 배제함
손익계산서상 외부주주지분의 표시	종속회사 순손익을 배분	연결당기순손익을 계산하기 위하여 차감함	완전히 배제함
내부거래의 제거	모든 내부거래의 제거	구입처 또는 판매처의 지분율에 따라 제거한다는 두가지 이론이 있음	지배회사의 지분율에 의해 제거
내부미실현손익의 제거	판매처의 지분율에 따라 미실현손익을 제거	지배회사의 지분율에 의하여 미실현손익을 제거	지배회사 이론과 같음
종속회사의 자산, 부채의 평가	지배권획득일 현재의 공정 시장가치에 의해 평가	지배회사 지분율에 대한 공정시장가치와 외부주주지분에 대한 장부가치의 합계	지배회사 지분율에 대한 공정시장가치
영업권의 계산	종속회사의 자산, 부채의 전체의 공정시장가치와 개별적 자산, 부채의 가치의 차이	지배회사의 투자액과 종속회사의 자산, 부채의 공정시장 가치의 지배회사 지분율 상당액과의 차이	지배회사 이론과 같음

* FASB Discussion Memorandum, Consolidation Policy and Procedures, p. 34 ~35.

II. 현행 연결재무제표의 특성 및 한계

<표 II-4> 우리나라의 연결기준과 연결주체이론

구분	지배회사이론	기업실체이론	우리나라의 연결기준
연결재무제표의 목적 및 주된 이용자	지배회사 재무제표의 확장이며 지배회사주주들을 연결재무제표의 주체로 봄	연결실체의 관점에서 작성되며 실체에 관련된 모든 이해집단을 위해 작성됨. 연결실체의 주주는 지배회사의 주주와 외부 주주로 구성	기본적으로 지배회사 이론입장이나 부분적으로 기업실체 이론을 수용하고 있음.
연결당기순이익	지배회사 주주의 이익	연결실체 모든 지분소유자의 이익.	지배회사 주주의 이익
외부주주지분의 성격	지배회사주주의 관점에서 부채로 파악됨	연결주주지분의 일부로서 지배회사 지분과 같은 방법으로 측정.	자본과 주주지분의 중간성격
외부주주지분순이익의 성격	지배회사 주주의 관점에서 비용으로 간주됨	연결실체의 총연결이익을 외부주주에게 배분한 것	연결당기순이익의 차감항목으로 표시하나 비용은 아님
종속회사의 순자산의 연결상대분	종속회사 순자산중 지배회사 지분은 취득원가에 기초해 연결되며 외부주주지분은 종속회사 순자산의 장부가액에 기초해 연결됨	종속회사의 모든 순자산을 지배회사의 취득원가에 기초해 평가하므로 외부주주지분도 종속회사 순자산의 연결상 공정시장가치에 기초해 산출됨.	지배회사 이론과 동일
미실현손익 -하향판매 -상향판매	전액제거 지배회사 지분만제거	전액제거 전액제거	전액제거 전액제거 또는 지배회사지분만 제거

나.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 법인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연결재무제표에 어떤 기업을 포함시킬 것인가 하는 연결범위의 결정문제가 결정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연결범위 결정기준은 연결기준 제3조와 연결준칙 제3조에 언급되어 있다

주식회사가 당해 회계연도말 현재 다른 주식회사의 발행주식¹²⁾을 ①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소유한 경우 ②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소유하면서 당해 다른 주식회사의 최대주주인 경우 ③ 상기 규정에 의한 지배회사와 종속회사(종속회사의 종속회사를 포함함)가 합하거나, 종속회사와 종속회사가 합하여 다른 주식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소유하면서 당해 다른 주식회사의 최대주주인 경우에는 해당 회사간 지배종속관계가 성립한다고 보아 연결재무제표를 의무화하였다.

연결재무제표작성 및 외부감사를 받아야 할 회사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전 회계연도말 현재 종속회사를 가진 지배회사이다. 따라서 직전 회계연도말 현재 종속회사가 있는 경우에만 연결재무제표 작성 및 외부감사가 의무화된 다. 그리고 동법에 의거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연결재무제표기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회계연도말 현재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종속회사를 연결대상에 포함시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

12) 상법 제370조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II. 현행 연결재무제표의 특성 및 한계

야 한다. 즉 연결재무제표 작성의무의 유무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결정되고, 동법에 의하여 연결재무제표 작성의무가 있는 경우에 연결재무제표기준에 따라 종속회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이상에서 언급한 조건이 충족되어 지배·종속관계가 성립되더라도 연결을 하게되면 오히려 정보이용자에게 혼란을 초래하거나 연결이 실무상 상당히 어려운 경우 또는 연결의 의미가 없는 경우에는 연결범위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바람직한데 우리나라 연결기준 제4조, 제30조에서는 다음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결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 ①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절차 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
- ② 청산중이거나 1년 이상 휴업중인 경우
- ③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부터 당좌거래의 정지처분 중에 있는 경우
- ④ 전쟁, 천재, 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 ⑤ 지배회사 및 종속회사가 금융업과 비금융업을 각각 영위함으로써 지배회사의 업종과 현저히 다른 경우
- ⑥ 지배회사가 종속회사를 일시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경우
- ⑦ 소규모회사로서 연결대상에서 제외하여도 연결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회사
- ⑧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주식회사와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주식회사
- ⑨ 상법에 의하여 합병절차가 진행중인 회사로서 당해 회계연도에 소멸되거나 청산 또는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
- ⑩ 주식회사 이외의 회사

연결대상에서 제외되는 종속회사를 가진 지배회사는 그 내용을 주식표시하고 종속회사의 투자계정을 지분법을 적용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식내용은 종속회사 중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에서 제외된 종속회사의 상호, 투자주식수, 투자비율 및 그 사유 등이다.

한편 종속회사범위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특정회사와 특수한 관계가 있어 경제적 실질면에서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회사의 경영성과를 지배회사경영성과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하는데 현행 연결회계기준에서는 이같은 경우 지분법을 적용하여 투자회사의 투자주식을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연결기준상 지분법 적용회사는 연결기준 제 17조에 언급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지분법 적용대상회사를 비종속회사로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50 이하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와 연결대상에서 제외된 종속회사 중 다음에 해당하는 회사로 규정하고 있다.

- ①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절차 개시의 결정이 있는 회사
- ② 지배회사 및 종속회사가 각각 금융업과 비금융업 또는 비금융업과 금융업을 영위하는 경우의 당해 종속회사

참고로 연결대상이 되는 종속회사가 없고 지분법 대상회사만 있는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아니한다.

3. 연결재무제표의 한계

가. 기업소유구조에 의한 연결재무제표의 왜곡

연결대상 판정기준에는 이론적으로는 2가지 기준이 있다. 하나는 지분율기준(Equity Ratio Concept)이고 또 다른 하나는 실질지배력기준(Managerial Control Concept)이다.¹³⁾ 지분율기준이란 지배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지분비율에 따라 연결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즉, 종속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과반수 주식을 지배회사가 소유하면 그 지배회사는 법률상으로 종속회사를 완전장악, 지배하게 되므로 당연히 연결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주식보유비율의 물량적 기준을 근거로 하는 것이므로 판단하기가 용이하여 전통적으로 각국에서 가장 많이 채택하여 왔다. 반면 연결대상 판정기준으로서 위의 지분율기준은 실무상 적용이 용이하다는 장점도 있으나 이는 외형적인 형식만을 중요시한다는 단점도 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외형적이고 물량적인 지분비율보다도 실질적으로 지배력을 갖고 있는지의 여부를 연결대상 판정기준으로 채택하는 실질지배력기준이 프랑스를 중심으로 유럽대륙에서 발전되어 왔다.

현행 우리나라 연결기준은 「회사간 지분율을 기준」으로 지배·종속관계를 판단하는 지배력기준을 주로 하고 실질지배력기준을 일부 가미하고 있으나¹⁴⁾(그림 II-1 참조), 실제 우리 기업의 소유구조는 「개

13) 최창선, 기업경영투명성제고를 위한 정책세미나 중 『결합재무제표의 도입방안』, 1998. 2, p.6.

인중심」으로 실질소유경영자가 특수관계인 등을 통해서 동일계열에 속한 회사를 지배하고 있어 사실상 동일계열기업군에 속하는 계열회사라도 회사간 지분율기준으로는 지배·종속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연결에서 제외되는 회사가 상당수 발생한다(표 II-5, 그림 II-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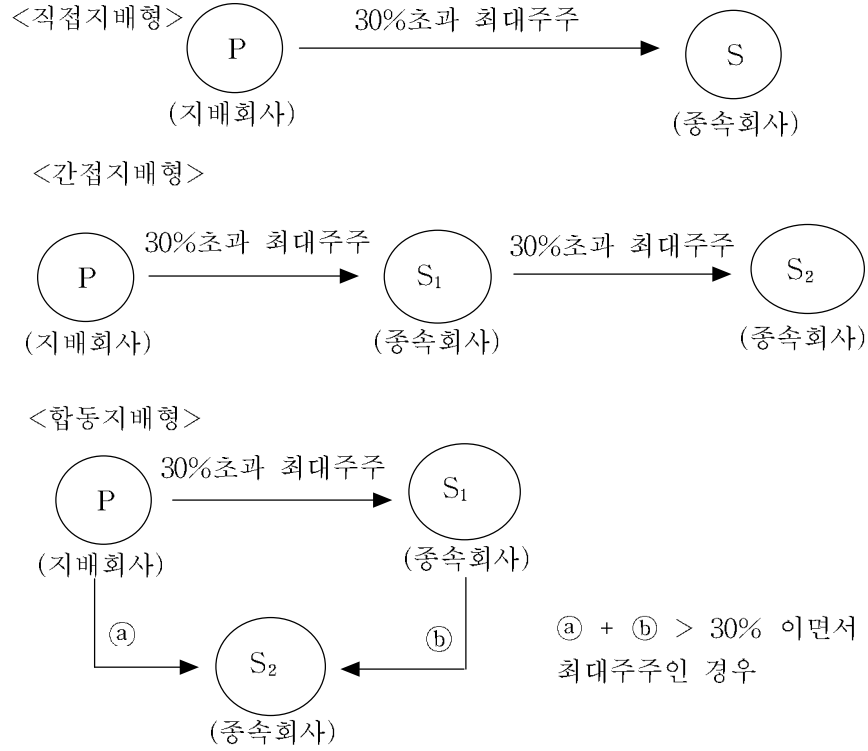
외국에서와 같이 지주회사가 허용되는 경우 절대적 지배회사가 존재하여 하나의 계열기업군에 대해 하나의 연결재무제표만으로 경영성과를 올바르게 나타낼 수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설립을 금지(제8조)하고 있기에 계열기업군내 절대적 지배회사가 존재하기 힘들어 하나의 계열기업군에 하나의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14)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는 연결재무제표상 지배·종속관계를 판정하는 지배력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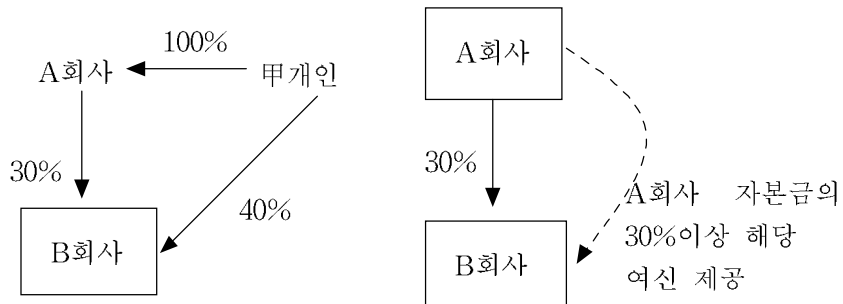
- ① 발행주식총수의 50% 초과
- ② 발행주식총수의 30%를 초과하면서 최대주주(실질지배력기준을 부분적으로 반영한 것임)
- ③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회사가 합하여 발행주식총수의 50%를 초과하거나 30%를 초과하면서 최대주주인 경우. 단, 지배·종속관계가 연속적으로 성립하는 경우에는 최상위 지배회사가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하나 최상위 지배회사가 다음에 속하는 경우에는 차상위 지배회사가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① 금융업과 비금융업으로 업종이 다른 지배회사로 상장법인이 아닌 경우
 - ② 주식회사가 아닌 경우
 - ③ 외국법인인 경우

II. 현행 연결재무제표의 특성 및 한계

<그림 II-1> 연결대상의 범위



<그림 II-2> 연결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



<표 II-5> 대규모 기업집단 연결재무제표 작성현황

순위	기업집단	소속회사수			연결에 포함된 계열회사			
		국내	해외	계	지배회사	국내종속	해외종속	계(%)
1	현대	67	97	164	10	19	47	76 (46)
2	삼성	66	177	243	13	23	145	181 (74)
3	엘지	49	96	145	9	19	58	86 (59)
4	대우	30	219	249	6	13	93	112 (45)
5	선경	46	41	87	6	23	17	46 (53)
6	쌍용	25	49	74	4	10	11	25 (34)
7	한진	24	12	36	4	4	5	13 (36)
8	기아	28	12	40	2	11	8	21 (53)
9	한화	31	21	52	5	7	15	27 (52)
10	롯데	30	4	34	3	7	0	10 (29)
11	금호	20	6	26	2	9	5	16 (62)
12	한라	18	18	36	4	8	9	21 (58)
13	동아	19	21	40	2	6	2	10 (25)
14	두산	25	17	42	3	7	10	20 (48)
15	대림	21	6	27	1	8	3	12 (44)
16	한솔	23	10	33	2	7	2	11 (33)
17	효성	18	10	28	2	2	6	10 (36)
18	동국제강	17	5	22	2	7	2	11 (50)
19	진로	24	10	34	2	2	5	9 (26)
20	코오롱	24	23	47	3	8	7	18 (38)
21	고합	13	12	25	2	5	2	9 (36)
22	동부	34	5	39	3	8	0	11 (28)
23	동양	24	15	39	4	15	1	20 (51)
24	해태	15	22	37	3	4	1	8 (22)
25	뉴코아	18	0	18	0	0	0	0 (0)
26	아남	21	13	34	2	4	1	7 (21)
27	한일	8	12	20	2	6	6	14 (70)
28	거평	22	1	23	1	4	0	5 (22)
29	대상	25	13	38	3	3	4	10 (26)
30	신호	25	9	34	2	3	1	6 (18)
	합계	810	956	1766	107	252	466	825 (47)

* 출처 : 증권감독원 회계관리국, '98. 3. 5

II. 현행 연결재무제표의 특성 및 한계

나. 기타 연결재무제표상의 한계

소유지분구조의 올바른 반영이란 측면이외에도 현행 연결재무제표는 투자자보호 측면에서 많은 유용성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본질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

첫째, 연결재무제표는 지배회사의 주주와 채권자의 입장에서 작성되는 것이므로 종속회사의 이해관계자는 연결재무제표로부터 유용한 정보를 얻기가 어려우며 별로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 우리나라 연결재무제표 기준이 기본적으로 지배회사이론을 따르고 있으며 지배회사의 입장에서 종속회사의 재무제표를 연결시키는 것이기에 종속회사 재무제표상에서는 내부거래의 제거와 외부주주지분의 제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결국 종속회사의 올바른 경영성과와 재무구조는 연결재무제표를 가지고는 파악이 불가능하다.

둘째, 연결재무제표는 개별재무제표에 비하여 복잡하고 이해하기가 어려우므로 전문적 회계지식을 갖추지 못한 다수의 일반 이해관계자는 연결재무제표를 활용하여 많은 정보를 얻기가 곤란하다. 특히 외부주주지분의 계산이라는 복잡한 절차를 포함하기에 일반 투자자가 연결재무제표를 이해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존재한다. 또한 연결재무제표에서 나타나는 이익잉여금 등의 수치는 배당가능이익을 개별회사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산출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회계 환경상 별 의미가 없으며 주주들이 배당가능이익을 산출하는 데에도 아무런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같은 현상이 발생하게 된 배경은 우리나라의 경우 주

재무제표가 연결재무제표가 아닌 개별재무제표이고 따라서 배당가능이익의 산출도 연결재무제표 중심으로 산출되는 것이 아니고 개별재무제표 중심으로 산출되는 회계관행 때문이다.

셋째, 연결대상에서 제외되는 종속회사의 범위가 너무 넓어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의 기업가치평가 및 부도·파산여부 판단에 있어 연결재무제표를 활용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생시킨다. 특히 우리나라 대규모 기업집단의 상당수가 제조업, 건설업, 금융업, 증권업 등을 공유하고 있는 현실에서 업종이 다르다는 이유로 연결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연결재무제표의 실효성을 감퇴시키는 중요한 이유가 되고있다. 한보, 우성, 삼미그룹의 부도와 같은 상황을 조기에 파악하지 못한 것도 이들 기업집단이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지 않는 계열회사를 많이 보유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상호지급보증과 담보제공 등으로 공동운명체화 되어 있는 데도 불구하고 계열기업군 전체의 재무상태, 차입금현황 및 경영성과 등을 현행연결재무제표로는 파악할 수 없었다는 데에 상당부분 기인한다.

넷째, 여신관리에 연결재무제표가 유용하지 못하여 실질적인 여신관리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 금융기관이 여신공여시에 계열기업내 여타 관련기업들에 관한 정보부족 및 사실상 단일 경제적 실체인 계열기업군 전체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가 없어 실질적인 여신심사가 곤란하며 여신기관 부실대출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Ⅲ. 연결재무제표기준의 국제비교

연결재무제표는 20세기초 미국에서 처음으로 도입하기 시작한 제도로서 1917년부터는 이 제도가 세법에까지 침투되어 연결납세제도 (Consolidated Return)¹⁵⁾에 까지 이르고 있으며 1933년과 1934년에 각각 증권법과 증권거래법을 제정하여 연결재무제표 공시의 의무화를 제도화하였다. 국제회계기준은 연결회계제도와 관련하여 국제회계기준 (IAS :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제27호에서 주로 언급하고 있는데 국제회계기준도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연결범위에 대해서 지속적인 개정을 시도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도 1976년 10월에 “재무제표 등의 용어, 양식 및 작성방법에 관한 규칙”의 개정과 함께 “연결재무제표 용어, 양식 및 작성방법에 관한 규칙”이 제정·공표 되었고 1977년 4월 이후 개시되는 연결회계연도부터 시행되었다. 그리고 현재 연결중시의 기업환경변화와 함께 1997년 12월 “연결재무제표 개정초안”을 공표 하였다. 본장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연결범위의 확대 문제와 관련하여 각국의 연결회계기준을 연결대상범위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들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15) 내부거래를 제거한 후 연결재무제표중심으로 과세하는 것으로 기업이 법적으로 복수의 법인격을 사용하여 기업내부거래를 행하든지 단일한 법인격을 가지고 행하든지 간에 관계없이 내부거래제거를 통해 동일한 과세부담이 이루어지도록 과세하는 방법이다.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할 경우 연결대상기업간 적자기업과 흑자기업이 공존할 경우 적자기업의 당기순손실이 흑자기업의 당기순이익에 반영되어 기업집단 전체적으로 세 부담의 완화라는 부차적인 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

1. 국제회계기준

가. 주요내용

연결에 관한 우리나라 회계기준과 국제회계기준간의 가장 큰 차이점은 국제회계기준의 경우 연결대상 범위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실질지배력기준을 고려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제회계기준인 IAS(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제27호¹⁶⁾에서는 특정 기업이 타회사를 지배하여 지배종속관계가 성립하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지배력의 조건으로 지배회사가 종속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직·간접적으로 50% 초과하여 소유하는 것으로 명시하였다. 국제회계기준 제27호 『연결재무제표와 종속회사투자주식의 회계처리(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and Accounting for Investment in Subsidiaries)』는 1990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되어 왔으며, 현재의 규정은 1994년 재구성되었다. 국제회계기준인 IAS규정에서 우리와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은 연결범위에 대한 정의이다. IAS 제27호에 언급된 연결범위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 연결범위

- 지배회사가 다른 기업의 의결권 주식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50%를 초과하여 소유하는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다.
- 발행주식총수의 50%를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실질적인 지배력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다. 다음의

16) Barry J. Epstein,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1997", John Wiley & Sons, Inc., p. 334.

Ⅲ. 연결재무제표기준의 국제비교

경우에는 실질적인 지배력이 존재한다고 간주한다.

- a. 다른 투자자와 계약을 통해 의결권의 과반수를 지배하는 경우
- b. 법규 또는 계약에 의해서 기업의 재무와 경영방침을 결정할 수 있는 경우
- c. 이사회 또는 이와 동등한 수준의 경영기구의 구성원 과반수를 선임 또는 해임할 수 있는 경우
- d. 이사회 또는 이와 동등한 수준의 경영기구 회의에서 과반수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IAS 27호 12항)

하지만 다음의 경우는 연결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 ① 종속회사를 아주 가까운 장래에 처분할 목적으로 취득 또는 보유하고 있어 지배가 일시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 ② 지배회사로의 자금송금을 현저하게 가로막는 장기간의 엄격한 통제하에서 종속회사가 운영되고 있는 경우(IAS 27호 13항)

과거에는 업종이 상이한 지배·종속회사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도 해석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연결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그러나 IAS 27호는 이러한 경우라도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하며 연결부속서류(Supplementary Consolidating Statement)나 상세한 주석(Detailed Footnote Schedules)을 이용해 해석상의 어려움을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¹⁷⁾

한편 연결재무제표 작성주체에 대해서는 “연결재무제표는 지배회사 자체가 다른 회사의 100% 자회사가 아닌 경우에는 작성하여야 한다.(90% 자회사는 소수주주의 승인을 얻어 면제됨)”라고 명시하고 있어 다른 회사의 100% 종속회사인 차상위회사는 작성을 면제시켜 주고 있다.

나. 시사점

연결과 관련하여 국제회계기준이 우리나라의 회계기준과 차이가 나는 점은 크게 세가지로 볼 수 있다. 하나는 연결대상 범위에 있어서 실질지배력기준을 우리나라보다 훨씬 광범위하게 적용하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연결대상으로 우리나라의 경우는 금융업을 제외시키고 있지만 국제회계기준의 경우는 금융업도 포함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다는 것이며, 또 다른 하나는 연결조정차·대의 상각기간이 우리나라의 경우는 5년이지만 국제회계기준의 경우 기본적으로 5년내 상각이지만 20년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는 점이다. <표 III-1>는 연결재무제표에 관한 국제회계기준과 우리나라 기업회계기준상 주요 차이를 요약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연결대상범위의 제한으로 인한 연결재무제표 한계론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향후 연결재무제표기준을 개정할 경우 실질지배력을 반영한 연결기준의 개정을 적극 고려할 필요성이

17) Barry J. Epstein,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1997”, John Wiley & Sons, Inc., p. 334.

Ⅲ. 연결재무제표기준의 국제비교

있다. 또한 현재 업종이 상이할 경우 연결대상에서 제외시킨다는 연결조항도, 현실적으로는 금융업종을 포함하는 지배회사가 다수 존재하기에 금융업종도 포함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표Ⅲ-1> 연결재무제표에 관한 한국회계기준과 국제회계기준의 비교

	기업회계기준	국제회계기준 IAS 제22, 27호
1. 연결대상범위	<p>주식회사가 당해 회계연도말 현재 다른 주식회사의 발행주식을 ①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소유한 경우 ②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소유하면서 당해 다른 주식회사의 최대주주인 경우 ③ 상기 규정에 의한 지배회사와 종속회사(종속회사의 종속회사를 포함함)가 합하거나, 종속회사와 종속회사가 합하여 다른 주식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소유하면서 당해 다른 주식회사의 최대주주인 경우에는 해당 회사간 지배종속관계가 성립한다고 보아 연결재무제표를 의무화 하였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배회사가 다른 기업의 의결권 주식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50%를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다. · 발행주식총수의 50%를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실질적인 지배력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다. 다음의 경우에는 실질적인 지배력이 존재한다고 간주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다른 투자자와 계약을 통하여 의결권의 과반수를 지배하는 경우 b. 법규 또는 계약에 의해서 기업의 재무와 경영방침을 결정할 수 있는 경우 c. 이사회 또는 이와 동등한 수준의 경영기구의 구성원 과반수를 선임 또는 해임할 수 있는 경우 d. 이사회 또는 이와 동등한 수준의 경영기구의 회의에서 과반수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IAS 27호 12항)

	기업회계기준	국제회계기준 IAS 제22, 27호
2. 연결 제외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절차 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 ② 청산중이거나 1년 이상 휴업중인 경우 ③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부터 당좌거래의 정지처분 중에 있는 경우 ④ 전쟁, 천재, 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⑤ 지배회사 및 종속회사가 금융업과 비금융업을 각각 영위함으로써 지배회사의 업종과 현저히 다른 경우 ⑥ 지배회사가 종속회사를 일시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경우 ⑦ 소규모회사로서 연결대상에서 제외하여도 연결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회사 ⑧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주식회사와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주식회사 ⑨ 상법에 의하여 합병절차가 진행중인 회사로서 당해 회계연도에 소멸되거나 청산 또는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 ⑩ 주식회사 이외의 회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종속회사를 아주 가까운 장래에 처분할 목적으로 취득 또는 보유하고 있어 지배가 일시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② 지배회사로의 자금송금을 현저하게 가로막는 장기간의 엄격한 통제하에서 종속회사가 운영되고 있는 경우(IAS 27호 13항)

Ⅲ. 연결재무제표기준의 국제비교

	기업회계기준	국제회계기준 IAS 제22, 27호
3.작성 기준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결재무제표의 작성기준일은 지배회사의 결산일로 한다. 중속회사는 그 결산일이 연결재무제표 작성기준일 전후 3월 이내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재무제표를 작성한다.(연결기준 5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결산일 차이가 3개월이내인 경우에는 연결목적으로 중속회사의 재무제표를 그대로 사용하고 결산일 사이에 발생한 거래 또는 기타사항 중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조정해야 한다.(IAS 27호 19항)
4.투자 계정과 자본계 정의 상계제 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배회사의 투자계정과 이에 대응하는 중속회사의 자본계정은 주식 취득일을 기준으로 상계제거한다. 다만 지배권 획득일 전에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지배권 획득일을 기준으로 일괄하여 상계제거가 가능하나, 지분법을 적용하여 온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연결기준 10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명확한 규정은 없으나 기본적으로 동일하다
5.연결 조정계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배회사의 투자계정과 이에 대응하는 중속회사의 자본계정 금액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연결조정차(또는 연결조정대)로 기재하고, 5년이내의 매결산기에 균등액을 상각 또는 환입한다. 단, 금액이 중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시에 상각 또는 환입이 가능하다. 다만 당해 차액이 특정자산이나 부채를 장부가액과 다른 가액으로 평가함으로써 발생하였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는 동차액을 당해 자산이나 부채에서 가감한다.(연결기준 12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투자계정과 자본계정의 차이는 식별 가능한 자산과 부채에 우선 할당하고, 남은 잔액을 연결조정계정으로 이연하여, 원칙적으로 5년이내의 기간에 상각·환입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IAS 22호 40, 42항)

	기업회계기준	국제회계기준 IAS 제22, 27호
6.외부 주 주 지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속회사의 손실 중 당해 종속회사의 외부주주지분에 속하는 부분이 외부주주지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지배회사의 지분에 부담시킨다. 이 경우 지배회사의 지분에 부담된 손실이 회복될 때까지는 차후 발생하는 종속회사의 이익 전부를 지배회사의 지분에 가산한다.(연결기준 15조) · 종속회사의 자본 중 지배회사의 지분 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은 외부주주지분과목으로 부채와 자본사이에 표시한다. · 외부주주지분 계산방법 종속회사의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으로 계상한 외부주주지분 상당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부주주지분은 부채 및 자본과 별도로 구분하여 표시하고 외부주주지분 순손익도 별도 표시한다.(IAS 27호 26항) · 외부주주지분(minority interests)의 표시 및 외부주주지분순손익의 계상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연결기준과 기본적으로 동일하다. · 외부주주지분 금액의 계산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표준적처리 : 종속회사의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으로 계상한 외부주주지분 상당액 b. 대체적처리 : 종속회사의 자산 및 부채의 공정가치로 계상한 외부주주지분의 상당액 (IAS 22호, 31,33항)

2. 미국

가. 주요내용

영국을 비롯한 유럽의 EC국가들은 연결대상 판정기준을 지분율기준 대신에 지배력기준을 도입한지 오래되었다. 미국에서는 연결과 관련하여 '87.10 재무회계기준(SFAS) No.94(과반수 소유 모든 자회사의 연결)를 발표하였다. 회계연구통첩(ARB : Accounting Research Bulletin) 51번을 개정할 때 기준은 금융, 보험, 기타 비동질적인 자회사를 연결대상에서 제외해 오던 것을 수정하여 일시적인 소유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결권의 과반수를 가진 모든 자회사를 연결대상으로 하였다.¹⁸⁾ 이후 재무회계기준위원회(FASB)는 비영리법인, 파트너십, 신탁의 연결, 제외국의 연결기준 등을 연구하여 '94.8에 지배의 정의, 일시적지배의 의미 등을 포함한 예비적 견해로 「연결방침」을 공표하였다.

미국의 경우 연결재무제표는 ARB No. 51에서, 지분법은 ARB Op. No. 18에서, 과반수 소유 자회사의 연결은 SFAS No. 94에서 언급하고 있다. 이기준에서 “지배권(Controlling Interest)이 있는 법인”을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회사의 발행 의결권부 주식(Outstanding Voting Shares)의 5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법인 (ARB No. 51 Par 2)으로 규정하였으며 50% 이하라도 주주간의 약정, 계약 또는 리스 및 법원의 결정에 의해 지배권이 있을 수 있다고 정의하였다. 여기에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결합재무제표

18) FASB Discussion Memorandum, 『Consolidation and Procedure』, 1992, p.1~7.

에 관한 개념정의도 포함되어 있는데 결합재무제표 작성 대상 범위를 한 개인이 여러 회사에 대해 지배권을 가진 경우, 여러 비연결 자회사들, 동일한 경영자를 가진 회사들로 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미국에서는 결합재무제표가 개념적으로만 정의되어 있고 실지로 시행은 되지 않고 있으며 최근에는 연결기준에 실질지배력기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기준을 정비하고 있다. 즉 미국 재무회계기준위원회는 지분율기준을 폐기하고 지배력기준을 도입하기로 방침을 수립하였으며, 이에 따라 1995년 10월 16일에는 연결회계기준 개정초안을 작성하고 공개한 바 있다 (Exposure Draft No. 154-D).¹⁹⁾ 동 초안에서는 지배를 법적지배와 사실상지배로 구분하고 있다.

법적지배(legal control)는 주식의 50% 초과 소유시 완전한 것이지만 기타 계약에 의하여도 실현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으며, 사실상지배(effective control)는 다음과 같은 조건중의 하나 이상에 해당되면 지배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 a. 많은 소수의결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며 (대략 40%) 여타의 한 상대방 또는 여러 상대방으로 구성된 그룹은 중대한 지분 (significant interest)을 갖고 있지 아니한 경우
- b. 타 실체의 운영위원회 위원후보자 지명절차를 지배할 수 있으며 위원선출시 투표자의 과반수를 투표하게 할 능력을 최근의 선거에서 보여준 경우
- c. 전환시 얻을 기대이익을 초과할 정도의 위험이 없이 과반수 의결 지분으로 전환 할 수 있는 기타권리의 소유 또는 유가증권의 소

19) 최창순, “결합재무제표의 도입방안”, 『기업투명성제고를 위한 정책세미나』, 한국경제연구원, 1998. 1.20, p.9.

Ⅲ. 연결재무제표기준의 국제비교

유를 통하여 의결지분의 과반수를 획득할 수 있는 일방적 능력이 있는 경우

- d. 의결권부 주식이 없거나 위원선출권한이 없이 설립된 실체가 그의 현장, 정관, 신탁증서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
 - ① 그 현장 등은 창설자(후원자)이외의 여하한 자에 의해서도 변경될 수 없고
 - ② 그 현장 등에는 이사회 또는 수탁자회의 권한을 포함한 그 실체가 창설자에게 미래의 순현금유입 또는 미래의 경제적이익을 제공할 계획의 수립(또는 개시) 활동만을 할 수 있다는 제한이 있을 것.
- e. 어떤 실체를 해산시킬 수 있고, 그 해산으로 인하여 얻게 될 경제적 원가를 초과하면서, 개별자산의 지배를 할 수 있는 일방적인 능력이 있는 경우
- f. 유한책임조합으로서 보통조합지분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한편 연결에서 제외되는 종속법인도 언급하고 있는데 다음의 자회사는 연결에서 제외된다.

- ① 지배권이 일시적인 경우
- ② 과반수 출자자가 경영지배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ARB No.43 및 SFAS No. 94)

나. 시사점

국제회계기준과 유사하게 미국의 연결기준도 사실상 지배라는 개념을 통해 실질지배력을 상당폭 반영하여 연결대상 범위를 결정하고 있다. 이외에도 한국과 미국의 연결회계원칙상 또 다른 두드러진 차이는 연결재무제표가 주요 재무제표인지의 여부로서, 미국 회계원칙상 지배 회사의 경우에는 반드시 연결재무제표로 공시해야 하는 반면(개별재무제표는 작성 안 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특수한 경우에 별첨으로 작성하기도 함), 한국의 회계원칙은 연결재무제표가 부속적인 재무제표로서 개별재무제표에 별첨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연결재무제표 위상의 차이는 결국 어느 재무제표가 해당 국가의 기업경영상태를 투명성 있게 나타낼 수 있는가로 귀착되는데, 기업집단의 독단적인 경영으로 국가적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기업집단의 경영성과를 보다 투명성 있게 나타낼 수 있는 연결재무제표 중심 공시 제도의 도입을 고려해보아야 할 것이다.

연결재무제표의 작성방법상으로는 한국과 미국이 유사하다고 할 수 있으나 투자계정과 자본계정의 차이를 회계처리 하는 방법과 그 결과로 발생하는 연결조정계정의 상각기간에 차이가 있다. 미국의 경우 투자계정과 자본계정의 차이는 식별 가능한 자산과 부채에 우선 할당하고, 이 과정을 거치고도 불일치 할 때의 잔액은 연결조정계정으로 이연하여 40년 이내의 기간에 상각한다. 반면 우리나라 연결기준은 연결조정차·대를 5년 이내에 균등액으로 상각한다는 점이 미국의 연결기준과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연결조정차·대의 상각 내용년수를 좀더 기업측 자율에 맡길 수 있는 내용년수 조정이 필요하다.

Ⅲ. 연결재무제표기준의 국제비교

미국기준과 우리나라 연결기준상 또 다른 차이점은 미국 기준이 실질지배력 개념을 도입하고 있는 것 이외에 금융업종을 연결대상 범위로 포함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즉 우리나라 연결기준에 따르면 금융업종은 업종 상이로 인해 연결제외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미국회계기준은 금융업종이라도 연결대상으로 포함시키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도 과거에는 금융업종을 우리나라와 같이 연결대상에서는 제외시켰으나, 기업들이 금융업 등에 사업을 확장하면서 금융업과 비금융업간의 상호거래와 내부거래가 빈번해졌고 이를 재무제표에 표시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아지면서 이들 업종도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 회사로 포함시키기에 이르렀다. 우리나라도 실질적으로 대기업들이 대개 금융업종을 자회사로 거느리는 경우가 대다수이므로 이들 업종간에 회계처리상 통합이 어려운 점이 존재하더라도 연결대상에 포함시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이 정보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 할 것이다. <표 Ⅲ-2>은 한국과 미국의 연결회계기준상 중요한 차이점을 요약한 것이다.

<표 III-2> 한국과 미국의 연결재무제표상 차이점 비교

	한국의 연결재무제표기준		미국의 회계원칙	
	내용	참조	내용	참조
연결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회사를 지배하고 있는 지배회사는 그 종속회사와의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함 ○ 지배회사와 종속회사의 정의 다음과 같이 과반수의 주식을 실질적으로 소유하는 경우로 갑회사를 지배회사, 을회사 또는 병회사를 종속회사로 함. -갑회사가 을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 없는 주식제외)의 과반수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갑회사가 을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과반수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을회사가 병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과반수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갑회사가 을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과반수의 주식을 소유하고 갑회사 및 을회사가 병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과반수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질지배력을 갖는 지배회사로 본다. 다만, 주식분포상황 등으로 보아 사실상 지배력이 없는 것이 명백한 회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p>기준 제 6 조 연결 기준 제 3 조</p>	<p>한회사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여 소유하는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함.</p> <p>다만, 지배관계가 일시적이거나 정부의 규제 등에 의해 지배회사가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아니함.</p> <p>(실질지배력기준의 도입에 관한 공개초안인 『연결재무제표 방침과 절차』를 1995년 10월에 발표 실질지배력 기준을 도입하려고 함)</p>	<p>SFAS 94</p>

Ⅲ. 연결재무제표기준의 국제비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른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소유하면서 당해 회사의 최대주주(동일계열기업군이 소유한 주식수의 합계가 최대주주의수보다 큰 경우에는 당해 계열기업군중 최대주주)인 경우 - 다른 회사의 최대주주이면서 대여, 담보제공 및 지급보증액의 합계액이 자기회사의 자본금의 100분의 30이상이거나 다른 회사 자본금 상당액을 초과하는 경우 - 지배회사 또는 종속회사가 상기와 동일한 방법으로 주식을 소유함으로써 지배회사가 다른 회사를 지배하는 경우에는 그 다른 회사에 대하여도 이를 종속회사로 봄. <p>○ 종속회사는 그 결산일이 연결재무제표 작성기준일전 3월 이내일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결재무제표작성을 위한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함</p>		ARB 51
상 계 제 거	<p>○ 지배회사의 투자계정과 이에 대응하는 종속회사의 자본계정은 주식취득일을 기준으로 상계 제거. 다만 지배권 획득일전에 주식을 취득한 것에 대하여는 지배권 획득일을 기준으로 일괄하여 상계제거할 수 있음.</p>	<p>○ 종속회사 결산일과 지배회사 결산일의 차이가 3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연결목적으로 종속회사의 재무제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음. 이 경우 그러한 사실을 주석사항으로 기재하여야 함.</p> <p>○수차에 걸쳐 주식취득이 된 경우에는 단계적으로 투자계정과 자본계정을 상계하되 편의상 지배권을 획득하게 된 주식취득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음. 연결하기 이전의 재무제표는 소급하여 조정할 필요는 없고, 다만 주석사항으로 가상손익계산서(pro forma result of operation)를 공시하여야 함.</p>	ARB 51 APB 16

연결조정계정	<p>지배회사의 투자계정의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종속회사의 자본계정의 금액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연결조정차 또는 연결조정대 계정으로 기재하며, 5년 이내의 매 결산기에 균등액을 상각 또는 환입하되 그 금액이 중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시에 상각 또는 환입 가능. 다만, 당해 차액이 특정 자산을 장부가액과 다른 가액으로 평가한 것에 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과목에 가감하는 방법으로 처리</p>	연결기준제12조	<p>o 투자계정과 자본계정의 차이는 식별가능한 자산과 부채에 우선 할당하고, 이 과정을 거치고도 불일치할 때의 잔액은 연결조정계정으로 이연하여 40년 이내의 기간에 상각. 이러한 차이는 구매법의 경우에 나타나는데, 합병의 경우에 준하여 처리함</p>
외부주주지분·소수주주지분	<p><외부주주지분> 종속회사의 자본 중 지배회사의 지분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은 외부주주 지분의 과목으로 부채와 자본의 중간에 표시하며, 종속회사의 손실 중 당해 종속회사의 외부주주 지분에 할당하는 금액이 당해 외부주주지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액은 지배회사지분에 부담시킴. 이 경우에 그후 당해 종속회사의 이익이 계상되는 때에는 지배회사가 부담한 손실이 회수될 때까지 그 이익을 지배회사의 지분에 가산</p>		<p>< 소 수 주 주 지 분 > 종속회사의 자본중 지배회사의 지분이 아닌 것은 소수주주 지분으로 부채와 자본의 중간에 표시하며, 종속회사의 손실 중 당해 종속회사의 소수주주지분에 할당하는 금액이 당해 소수주주지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액은 지배회사지분에 부담시킴. 그 후 당해 종속회사의 이익이 계상되는 때에는 지배회사가 부담한 손실이 회수될 때까지 그 이익을 지배회사의 지분에 가산</p>
지분법의 적용	<p>연결에서 제외된 종속회사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50 이하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에 대한 투자계정의 평가는 지분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함</p>		<p>비연결종속회사와 관계회사의 투자계정평가에는 지분법을 적용</p>

3. 일본

일본의 연결재무제표기준상 (「연결재무제표원칙」 제3의1항) 연결 범위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 ① 모회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자회사를 연결 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
- ② 모회사라 함은 타회사의 의결권의 과반수를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회사를 말하며, 자회사라 함은 이 경우 당해 타회사를 말한다.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타회사의 의결권의 과반수를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타회사도 또한 자회사로 본다.²⁰⁾

결과적으로 일본도 현재까지는 지분율기준을 채택하고 있다. 다만, 위에서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의 소유자 명의를 임원 등 회사 이외의 자로 되어 있다고 해도 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회사가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의 경우도 지분율 개념의 적용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들어 났기에 연결재무제표와 관련하여 실질지배력 기준의 도입방안을 고려하는 등 활발한 연결재무제표 개정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 결과 기업회계심의회에서 1997년 2월 “연결재무제표제도 관련 공개초안”을 만들었다. 이 공개초안에 나타난 향후 연결재무제표의 개정방향은 다음과 같이 요약 될 수 있다.²¹⁾

20) 일본의 연결재무제표원칙 주해 3

21) 大西又裕, “連結財務諸表制度の見直しに関する意見書案について”, 商事法務, 제 1450호, 1997. 3, p.2 ~3.

가. 주요내용

1) 연결베이스 공시강화

투자정보로서의 기업간의 비교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연결정보중시공시로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으며 이와 병행하여 연결정보중심으로 공시가 이루어 질 경우 그 유용성이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개별재무제표정보에 관해서는 가능한 한 공시를 간소화하려는 개정작업을 진행중이다. 이에 대한 세부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연결정보중시

① 연결정보를 중심으로 한 공시개선

연결정보중시공시를 강화하기 위해서 현행 유가증권보고서 및 유가증권제출서류의 개별정보중심기재를 연결정보중심기재로 바꾸었으며 그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개별 베이스로 작성되는 영업상황과 설비상황 등을 연결중심으로 기재
- 부문정보에 관해서는 충실한 정보의 공시가 요구되기에 기업집단의 개요, 업적 등에 관하여 사업종류별 공시
- 기업집단의 구성내용을 알기 위해 현재 기재되는 연결자회사 상황 이외에 기타 주요 관련회사의 상황에 관한 공시확충
- 개별재무제표 중심 공시가 이루어지는 경우 개별기업정보가 투자자들에게 보다 많은 정보의 유용성을 제공하였지만 연결 베이스

Ⅲ. 연결재무제표기준의 국제비교

에 기초한 재무정보공시가 중심이 될 경우 상대적으로 개별정보의 공시 간소화가 필요. 이와 같은 취지에 따라 유가증권보고서의 기재순서를 종래의 개별→연결순서에서 연결→개별순서로 하여 기업집단 전체상황을 우선적으로 표시하고 보충적으로 개별정보를 표시하는 방안 추진.

- 부외장부관련 정보, 위험정보 등은 기업집단 전체적인 관점에서의 공시가 투자자들에게 보다 유용하다고 보고 유가증권이나 파생상품의 시가정보, 우발채무 등 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연결베이스중심으로 공시하도록 함.

② 연결재무제표작성 면제회사의 지분법 적용 손익의 주기

계열회사가 연결대상 범위에 들지 않고 관련회사에 해당하는 경우 모회사 재무제표에 중요한 정보의 누락이 있을 수 있으므로 연결제외 관련회사에 대해서는 지분법을 적용하여 계상된 투자차액 등을 주기형태로 표시한다.

나) 연결현금흐름표 도입

현행 자금수지상황표가 폐지 될 경우 연결베이스 공시 강화라는 측면에서 연결현금흐름표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다) 중간연결재무제표 도입

재무정보의 적시성을 높이기 위해 중간연결재무제표제도의 도입이 이루어졌고 그 일환으로 대장성은 1998년 3월 29일 “중간연결재무제표와 모회사 재무제표에 관한 회계기준설정에 관한 의견서안”을 공표하였다. 중간연결재무제표는 투자정보의 적시 제공을 통한 유용성 제고란 목적이외에 시행되고 있는 중간배당제도를 뒷받침하기 위한 투자정보의 제공이란 목적을 포함하고 있다.

중간연결재무제표에는 중간연결대차대조표, 중간연결손익계산서, 중간연결이익잉여금계산서, 중간연결현금흐름표를 포함하며 모회사재무제표는 중간모회사대차대조표, 중간모회사손익계산서, 중간모회사이익잉여금계산서, 중간모회사현금흐름표를 포함한다.

중간연결재무제표에 관해서는 기본적으로 2가지 접근방법이 있다. 하나는 각각의 중간보고기간을 별개의 회계기간으로 간주하고 중간재무보고에 나타나는 이연과 발생등의 항목은 연차보고서에서 채택하고 있는 원리를 그대로 적용하여 계상하는 구분접근법(Discrete View)이고, 다른 하나는 중간재무보고는 단지 연차보고서의 일부분으로서 중간재무보고서에 나타나는 이연이나 발생 등의 항목은 1년이라는 전체기간에 걸쳐 얼마나 발생할 것인지를 염두에 두고 결정되어야 한다고 보는 통합접근법(Integral View)이다. 일본의 중간연결재무제표는 전자의 관점을 따르고 있다. 중간연결재무제표와 모회사재무제표(Parent Only Financial Statement)에 관한 초안(Exposure Draft)의 개요²²⁾를 살펴보

22) BADC(Business Accounting Deliberation Council)의 중간연결재무제표와 Parent only Financial Statement에 관한 의견(1998. 3. 13 JICPA 홈페이지)

Ⅲ. 연결재무제표기준의 국제비교

면 다음과 같다.

- 비록 구분접근법에 따라 완전재무제표와 동일한 회계원칙을 따르지만 비용측면을 고려하여 투자자를 크게 오도하지 않는 한 통합적인 접근법을 따르기도 한다.
- 구분접근법을 따르기에 다음의 사항은 용인되지 않는다.
 - . 통합접근법에서 인정되는 이연비용이나 발생비용
 - . Lifo 방법에 의해 측정된 매출원가의 조정
 - . 저가법에 의해 측정된 자산과 채고에 관한 미실현손실의 미인식
 - . 원가차이의 이연

라) 연결베이스 임시보고서 도입

현행 일본거래법상 임시보고사유에는 개별기업중심의 사유가 주된 사유이나 개정안에서는 연결자회사의 중요한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도 임시보고서를 제출토록 하는 등 임시보고서 제출 사유를 연결중심으로 강화시켜 나가고 있다.

마) 공시의 효율화

연결정보공시의 충실화에 따라 그 유용성이 반감되어지는 개별재무제표 등에 관한 공시는 다음과 같이 간소화를 도모하였다.

지)

- 제품별 생산능력이나 생산실적 등 유용성이 줄어들었다고 판단되는 개별채무제표에 관해서는 기재를 간소화
- 연결채무제표 작성시 상계소거 되는 사항은 부속명세서인 관련회사 유가증권표, 관련회사 출자금명세서 등에 정리함.
- 투자정보에 손실을 입히지 않는 범위내에서 연결채무제표 표시항목을 각 유사항목별로 통합함.

바) 연결정보관련 공인회계사 감사의 충실화

연결현금흐름표 및 중간보고서이외에 특수관계인간 거래 등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있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연결정보에 관해서는 공인회계사 등에 의한 감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2) 연결채무제표원칙의 개정

현행기준이 연결자회사 결정시 지분율기준을 채택하나 지분율기준만으로는 기업집단의 재무사항 및 경영성과를 적절히 반영할 수 없다고 보고 지분율 기준이외의 다음과 같은 요소도 연결자회사 결정시 고려되도록 연결기준을 개정하였다.

가) 자회사의 범위

- ① 타회사의 의결권 과반수를 소유한 경우에는 타회사의 의사결정기관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것이 명료하게 표시되지 않은 경우

Ⅲ. 연결재무제표기준의 국제비교

에도 자회사로 본다.

② 타회사 대한 의결권 소유비율이 50% 미만인 경우에도 가장 높은 비율의 의결권을 소유하고 다음의 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타회사의 의사결정기관을 실질적으로 명확하게 지배하지 않더라도 자회사로 본다.

- 의결권 미행사주주가 존재하여, 주총시 의결권 과반수를 계속적으로 유지하는 경우
- 임원, 관련회사의 협력주주를 통해 주총에 있어 과반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 이사회 구성원의 과반수를 출자회사의 임원 또는 종업원 또는 이와 유사한자가 계속 점유하는 경우
- 중요 재무 및 경영방침 등을 결정할 수 있는 계약 등이 존재하는 경우

나) 관련회사의 범위

현행기준은 연결회사가 자회사 이외의 타회사 의결권 주식을 20% 이상 소유함과 동시에 인사·자금·기술상 관련이 있고 재무 및 경영방침 결정에 있어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는 경우 당해 회사를 관련회사라고 정의하였다.

다) 합자회사의 연결여부

현행 연결기준은 실질적으로 공동지배가 인정되는 합병회사(관련회사)에 있어서는 타 관련회사와 같이 지분법 적용을 원칙으로 하지만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의 각 항목을 지분율에 대응하여 연결한 비례(比例)연결방법을 인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3) 세효과회계(이연법인세)제도의 도입

세효과회계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 개별회사의 과세소득을 기초로 한 법인세와 회계상 이익을 기초로 한 법인세와의 차이로부터 발생한 영향을 재무제표에 반영할 수 없다. 따라서 회계와 세무상 수익과 비용의 인식시점 차이 및 자산부채액 차이 때문에 발생한 영향을 대차대조표상 조정세금자산 또는 조정세금부채로서 표시하는 세효과회계를 적용하면 당기 업적을 보다 적절히 표시할 수 있고 유용한 투자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현행 연결재무제표원칙상으로는 세효과회계가 임의적용되고 있지만 개정안에서는 당기업적이 적절히 반영된 당기순이익을 표시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 세효과회계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4) 모자회사간 통일된 회계처리원칙의 명료화

동일한 환경하에서의 동일 성질의 거래는 회계처리의 통일을 기하였다. 회계처리통일을 시행하는 경우, 자회사 회계처리를 모회사 회계처리에 일치시키는 경우 이외에 모회사의 회계처리를 자회사의 회계처리에 일치시키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보다 합리적인 회계처리 절차를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한편 실무상 편의를 위하여 재무상태 및 경영성적표시에 중대한 영향이 없다고 생각되는 회계처리는 통일을 기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였다.

Ⅲ. 연결재무제표기준의 국제비교

5) 자본결합 수단의 명료화 유도

가) 자회사 자산부채평가

지배권 획득시에는 모회사는 주식의 취득을 통해 자회사의 자산과 부채를 취득하지만 자산 및 부채의 평가가 장부가액과 차이가 있을 경우 신규로 자산 및 부채를 취득한 경우와 같이 공정한 가액(보통 시가)에 의해 평가한다. 이 경우 시가에 의한 평가는 지분을 만큼을 인식하는 부분시가평가방법과 소수주주지분을 포함한 모든 부분을 인식하는 전면시가평가방법이 있다. 현행 일본의 연결회계원칙하에서는 투자제거차액의 원인분석을 통해 결과적으로 부분시가법이 이용되고 있으나 개정시안에서는 국제적 경향을 고려하여 종래의 부분평가법에 추가하여 전면시가평가법을 용인하고 있다.

나) 투자계정과 자본계정상계제거

개정안에서는 투자계정과 자본계정의 상계제거는 자회사의 자산 및 부채의 평가 시점에 대응한 자회사의 자본계정을 이용해서 계상하도록 하고있다. 자회사의 자산과 부채가 액면가액과 시가의 차이로 발생한 시가평가차액은 일종의 평가잉여금증감액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 금액은 투자계정과 자본계정의 상계소거 또는 소수주주지분으로 대체하여 전액 소거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다.

다) 연결조정계정 계상

위와같은 회계처리를 한 결과 발생한 투자계정과 자본계정의 계

거차액은 연결조정계정으로 계상한다.

6) 연결재무제표에 있어서의 구분표시

개정안은 연결재무제표의 국제적 조화, 표시내용의 간소화 등을 반영하여 연결재무제표구분표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기준을 설정하였다.

가) 연결조정계정의 당기 상각액 및 지분법에 의한 투자손익의 구분표시

현행 일본의 연결원칙상 연결조정계정의 당기 상각액은 세전당기순이익에 가감하는 방법으로 표시되고 있지만 개정안은 중요한 부분으로부터 발생한 연결조정계정 당기 상각액은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부채로 계상된 연결조정계정 상각액은 영업외수익으로 표시) 동시에 지분법 투자수익은 원칙상 세전당기순이익에 가감 표시하지만 투자관련 손익의 성격도 가지고 있으므로 일괄하여 영업외손익으로 표시한 경우는 경상손익에 반영한 것으로 본다.

나) 이익준비금의 표시

현행 일본의 연결원칙상 이익준비금은 자본의 구분 표시원칙에 의해 구분 표시하지만 연결재무제표가 상법상 당기순이익의 산정을 직접 목적으로 하지 않기에 개별재무제표상 처분가능이익잉여금에 속해 있는 이익준비금을 연결재무제표상 별도로 표시할 필요성이 없다. 따라서 표시항목의 통일을 기하기 위해 이익의 유보액을 연결이익잉여금

Ⅲ. 연결재무제표기준의 국제비교

으로 일괄하여 표시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연결재무제표상 이익준비금 구분 표시를 폐지하고 이익 유보액(이익준비금, 임의 적립금 및 당기미처분 이익)을 연결이익잉여금으로 통합 표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 자기주식 등의 취급

현행 연결원칙에서 따르면 자기주식 및 자회사가 소유한 모회사 주식은 자본부문에서 공제하는 형식으로 표시한다. 하지만 판매목적의 자기주식 및 자회사 보유 모회사 주식에 관해서는 개별재무제표와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유동자산으로 분류 표시하며 그 매각차액을 당기 손익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7) 연결납세제도의 도입

연결납세제도란 기업이 법적으로 복수의 법인격을 사용하여 기업내 거래를 행하든지 단일한 법인격을 가지고 행하든 지간에 관계없이 내부거래를 제거하여 동일하게 과세하는 것으로써 기업이 누진세율제도 하에서 이익의 분산을 통한 조세회피(Tax Haven)를 막음과 동시에 그룹내의 흑자기업과 적자기업이 존재하는 경우 그룹전체의 이익보다 많은 법인세를 부담할 가능성이 있어 과세의 중립성을 해치기 때문에 합산과세(연결과세)하여 과세의 중립성을 확보하는 목적으로 시행한다. 일본의 경우 순수지주회사제도의 도입과 관련하여 연결납세제도의 도입이 논의되고 있다. 연결납세제도는 현재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에서 시행되고 있다.

8) 배당시에 연결이익잉여금에 의한 배당

일본상법은 채권자보호관점에서 취득원가주의(일부는 저가주의), 즉 실현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연결이익잉여금에 의한 배당은 상법에 저촉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연구가 진행중이다. 미국의 경우 1957년 발표된 APB 16호(1970.8)에 의해 연결이익잉여금에 의한 배당을 하고 있는데 대상을 법률상의 합병에만 한정하지 않고 당해회사가 모회사로 존속하는 기업결합까지 확장하는 한편 당해 기업결합을 지분포팅법으로 간주하여 당해회사가 이후에도 모회사로 존속하는 경우에는 연결대차대조표에 자회사의 이익잉여금까지 합산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시사점

일본도 우리와 같이 개별재무제표가 중심이었고 연결재무제표는 부차적인 재무제표였으나 1997년 개정초안이 만들어지면서 연결재무제표 중심 공시체제로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또한 개별회계와 연결회계의 조화를 위해서 세효과 회계를 도입하려하고 있고 연결대상 문제가 제기되었기에 국제회계기준에 따른 실질지배력 기준을 도입하여 하고 있다. 이외에도 연결납세제도의 도입과 연결이익잉여금에 입각한 배당제도의 도입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일본의 이와같은 동향은 유사한 기업환경을 지니고 있는 우리나라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특히 실질지배력기준과 연결중심 공시제도는 우리나라에서도 조속한 시일내에 도입이 이루어져야 할 사안이고 연결납세제도의 도입과 연결기준 배당제도의 도입은 장기적으로 연구되어야 할 과제이다. 연결재무제표에 있어서의 한국과 일본의 유사점과 차이점은 <표 III-3>과 같다.

Ⅲ. 연결재무제표기준의 국제비교

<표 III-3> 연결재무제표의 한국·일본 비교

	일본	한국
연결재무제표의 위치	개별재무제표 분위(연결재무제표 본위로 개정작업중)이고 연결재무제표는 참고 자료임(연결재무제표 제출기한이 3개월임)	개별재무제표가 중심이고 연결재무제표는 사업연도종료후 4월까지 제출의무(1999년부터 결합재무제표 도입예정)
연결범위(실질지배력기준도입여부)	의결권 있는 주식과반수의 실질적 소유(개정초안에서 실질지배력기준 반영함)	발행주식(의결권없는 주식제외)의 과반수소유 또는 30%초과소유 및 최대주주
최근 동향	-현재 연결재무제표제도 개정초안을 작성 공표하였는데 여기서는 실질지배력기준 도입 및 연결재무제표중심 공시 및 , 연결납세제도, 반기연결재무제표 공시도입 추진하고 있음	-한국의 경우 지배기업이 종속회사를 지배하는 경우보다 개인대주주가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기업집단간의 상호지급보증에 의해 특정기업의 부실이 기업집단 전체의 부실을 촉발시킴 -'99년도부터 기업집단결합재무제표를 도입

4. 독일²³⁾

가. 주요내용

1) 연결재무제표작성의 일반적인 의무

독일에서의 연결재무제표작성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은 상법 제290조에 기초하는데 이에 의하면 연결재무제표작성의 의무는 국내에 소재한 모회사(자본회사)에 한한다. 물론 비자본회사(Nicht-Kapitalgesellschaften)의 경우도 연결재무제표작성의 의무로부터 완전히 제외되는 것은 아니고 공시법에 의하여 일정한 조건이 구비되면 연결재무제표의 작성에 관한 의무가 있다. 우리나라와는 다르게(참고로 우리나라는 모기업이 주식회사인 경우에 한 한다.) 독일법에 의한 연결재무제표의 작성의무는 기업의 법적형태와는 무관하게 부과된다.(즉 법적형태보다는 상법 제290조 1항 및 2항 또는 공시법 제11조에 의한 조건에 부합될 때에는 원칙적으로 모든 모회사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만 한다.) 기준에 의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의무가 있는 회사를 모회사라 하며 연결재무제표에 원칙적으로 포함되는 회사는 모두 자회사로 표현하고, 이 모회사와 자회사가 모여 콘체른을 형성한다.

상법에 의한 연결재무제표는 연결대차대조표, 연결손익계산서 및 연결주석으로 구성되어 있어 주식법 1965가 연결재무제표를 연결대차대

23) 이 부분은 주로 임금자, "기업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제회계제도의 연구", 1998. 4, p.7.~ 9.를 참조하였음.

Ⅲ. 연결재무제표기준의 국제비교

조표 및 손익계산서로 구성된 것에 비추어 연결재무제표의 구성범위는 확장되었다. 여기에 독일상법은 연결재무상태변동표의 작성의무를 추가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연결재무제표가 과거에는 단지 개별재무제표를 보조하여 주는 역할을 하였지만 관련규정의 개정으로 인하여 개별재무제표와 같은 위치에 놓이게 되었다.

2) 상법에 의한 연결재무제표의 작성의무

상법 제290조에 의하면 자본회사가 적어도 다른 하나의 회사와 “모회사-자회사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국내에 소재한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만 한다. 어떠한 경우에 모회사-자회사의 관계가 성립되는지는 다음의 조건으로 설명하고 있다.

- a) 모회사를 통한 다른 회사에의 단일 지배력의 행사(상법 제290조 1항에 의한 단일지배력 기준)
- b) 법적인 지배가능성의 존재(상법 제290조 2항에 의한 Power-of-Control 기준)

위의 두 조건은 서로 연관이 없으며, 위의 두 조건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되면 회사는 상법 제290조 1항 및 2항에 의한 모-자회사의 관계가 성립되며, 따라서 모회사는 자회사를 포함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의무가 있다. 주식법 1965에서 도입하여 규정된 단일 지배력 기준이 이론적으로는 더 많은 지지를 받고 있지만 이는 검증이 어려운 단점이 있다. 법적지배 가능성(Power-of-Control) 기준은 쉽게 검증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가) 단일지배력 기준

(1) 모회사를 통한 지배력의 행사

연결재무제표 작성 의무를 규정하는 기준으로서의 지배력기준은 독일의 회계실무에서는 새로운 것이 아니다. 이 기준은 이미 주식법 1965에 연결재무제표의 작성을 위한 모 회사의 의무를 확정하는데에 규정되었으며 이를 회계지침법 1985제정시 도입하였다. 상법 제290조 1항에 규정하였지만 주식법 1965에서와 마찬가지로 이에 대한 정의는 내리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배력 기준에 대한 정의는 과거와 동일한 것으로 간주되며, 변화된 것으로 해석되지는 않고 있다. 따라서 이에 관한 자세한 정의는 과거에 적용되어져 내려온 정의를 적용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 과거나 현재나 “지배력”에 관한 어떠한 일반적인 정의도 없어 상법 제290조 1항에서 의미하는 기준이 놓여있는지의 여부는 따라서 개개 상황에 따라 검증되어져야만 한다.

지배력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모회사에 주어진 지배의 권한을 실지 사용하였느냐의 여부에 있다. 즉, 단지 지배력을 사용할 가능성이 모회사에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고 실질적으로 지배력을 행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자회사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 할 수 있다.

모회사가 콘체른 전체를 위한 경영목표를 실행한다면 이는 원칙적으로 지배력이 놓여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다음과 같은 경우이다.

a) 기업의 설립 목적범위 내에서 사규에 제정된 기업경영목표의

Ⅲ. 연결재무제표기준의 국제비교

설정

- b) 재무정책, 투자정책, 인사정책의 기본확정
- c) 회사의 중요한 정책에 대한 결정
- d) 기업경영의 중요한 부분의 조정 및
- e) 회사경영진의 임면

위에서 열거한 상황에서는 콘체른 이익이 개별기업의 이익에 우선한다. 모회사에 주어진 지배력은 분리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최상위의 회사가 사용하며 모회사가 동시에 다른 상위회사의 지배를 받고 있는 자회사일 경우에도 지배력의 행사는 최상위모회사에 의하여만 사용할 수 있다.

(2) 상법 제271조 1항의 지분소유

상법 제290조 1항에 의한 연결재무제표의 작성 의무조항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모회사는 상법 제271조 1항에서 의미하는 지분도 소유하여야만 한다. 단 지분의 소유가 지속적인 것이라야 하고 경제적인 연관관계를 갖기 위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의사가 있어야 한다. 지분율은 단지 투자자산의 보유목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경제적인 관계가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며 따라서 상법 제290조 1항의 조건에 충족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나) Power-of Control 기준

단일지배력 기준에서와는 달리 유럽연합 지침 제7호의 제1조1항에 기초한 상법 제290조2항의 Power-of-Control 기준에서는 모회사가 자회사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일정한 권한을 잠재적으로 갖게 된다면 모-자회사의 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즉 Power-of-Control 기준에서는 연결재무제표의 작성의무와 모회사를 통한 자회사에의 실질적인 권한의 행사와는 관련이 없다. 이보다는 모회사가 법적으로 단지 자회사에 대하여 지배의 잠재력을 소유하고 있으면 모회사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만 한다.

상법 제290조2항에 의하면 모회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다른 한 회사(자회사)에 대한 법적인 지배의 잠재력을 소유하고 있다고 간주한다.(이 기준은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 a) 의결권의 과반수이상 소유
- b) 행정간부, 중역 및 감사부서의 직원의 과반수 이상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
- c) 계약이나 사규에 의한 지배권한

위의 기준은 지배의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자체만으로도 충족된 것으로 간주하며 상법 제290조2항에 의한 모-자회사의 관계가 성립이 되었는지 여부와는 관련이 없다. 따라서 이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만 한다. 위의 a) 와 b)를 적용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은 모회사가 동시에 자회사의 주주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Ⅲ. 연결재무제표기준의 국제비교

① 의결권의 과반수이상 소유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의 과반수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회사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만 한다. 여기에서 과반수 소유의 의미는 법적으로 보장된 과반수를 의미하며 주주총회 참석인원수의 과반수와는 관련이 없으며 과반수 이상의 자본참여를 의미하지도 않는다. 의결권의 어떠한 부분이 회사에 속하는지의 계산은 총 의결권 중 회사가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수의 비율에 의하며, 여기에서 자회사에 속하거나 그의 다른 자회사에 속하거나 또는 위의 회사의 주주에 속한 것은 차감한다.

② 직원의 임면권

상법 제290조 2항의 Power-of-Control 기준의 다른 또 하나의 조건은 다른 회사의 업무집행이사, 중역, 감사조직에 근무하는 자의 과반수를 임명하거나 면책할 권한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모회사는 자회사를 포함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하며 동시에 자회사의 주식을 보유하여야 한다. 위에서 열거한 조직은 독일법에 의한 “모든 이사진, 경영책임자, 간부급, 감사, 행정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모회사에 속해있는 이 권한을 실행하였는지에 대한 것과는 관련 없이 단지 모회사가 이러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으면 충분하다.

③ 지배적인 영향력

마지막으로 모회사가 지배적인 영향력이 있는 경우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만 한다. 국내에 소재한 모회사(자본회사)에게 사규나 계약에 의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권한이 주어져 있다면 이 회

사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지배적인 영향력”을 어떻게 해석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상법에 별도의 규정이 없으나 그 동안의 문헌을 통해 이에 대한 많은 토론을 거쳤으며 일반적으로 지배회사가 피지배회사의 정책을 관철시킬 수 있으면 지배적인 영향력이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상법 제290조 2항의 2와3 과는 달리 이 규정은 모회사가 주식을 보유하여야 한다는 조건은 없다.

나. 시사점

독일의 경우, 우리나라와는 다른 기업형태와 경영환경을 보유하고 있어 연결재무제표 기준 또한 우리나라와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와는 달리 모회사가 주식회사가 아닌 경우에도 연결재무제표 작성의무를 지우고 있다. 이는 독일의 기업형태가 유한회사의 형태로 존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실질지배력 개념과 유사한 Power-of-Control 기준을 도입하여 연결대상 범위를 확정하고 있는 것은 연결재무제표의 국제적 동향과 유사하다.

IV. 연결회계기준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현행 연결재무제표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연결대상범위의 제약과 이로 인해 경제적 실질을 올바르게 반영하지 못하는 단점을 지니고 있어 대안으로서 결합재무제표가 거론되는 상황을 맞고 있다. 하지만 결합재무제표가 국제회계관행상 선례가 없을뿐더러 결합재무제표 도입의 원인이 된 기업지배구조가 합리적으로 조정이 이루어질 경우 결합재무제표의 필요성은 상당부분 해소될 것이고 결국 결합재무제표는 경제적 변혁기의 과도기적 산물이 될 가능성이 크다. 향후 우리나라 회계환경은 결합재무제표를 기업집단 구조조정이라는 규제목적으로 과도기적으로 실행한 후 기업지배구조가 일정정도 본 궤도에 오른 후에 결합재무제표를 일반목적재무제표인 연결재무제표로 통합해 가는 과정을 거칠 것이 예상된다. 따라서 결합재무제표의 시행과 더불어 연결재무제표의 합리적 개선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행 연결재무제표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실질지배력기준의 도입

과거 도입되었다가 실무적 어려움으로 사라진 실질지배력기준을 좀 더 구체화하여 종속회사 정의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현재 결합재무제표 도입이 이루어진 것도 연결대상범위로는 한국적 지배소유구조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향후 기업들의 소유지배구조가 바뀌어 실질지배력 도입이 보다 수월해질 경우 결합재무제표는 그 실용성이 감소될 것이고 보다 일반적 재무제표인 연결재무제표로 합쳐질 것

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라도 현재의 연결기준상 연결대상 범위를 실질 지배력을 반영한 범위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연결대상범위의 결정기준으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개념이 통제권(control)과 소유권(ownership)의 개념인데²⁴⁾ 일반적으로 통제권은 지배-종속관계가 성립되었나 하는 것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앞에서 언급했던 실질지배력개념과 동일한 개념이고, 소유권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분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지분율기준과 동일한 개념이다. 일반적으로 지배회사개념하에서는 연결대상결정의 기준으로서 소유권(이를 법률적 통제라고 함)을 중시한다. 왜냐하면 소유권을 가지면 종속회사에 이익 발생했을 때 이에 대한 지분을 주장할 수 있고 특히 배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경제실체의 개념에서는 소유권과 관계없이 통제권을 행사(effective control)할 수 있다고 본다. 계열회사간의 혜택은 단순히 소유권에서 발생하는 것뿐만 아니라 통제권, 즉 동일한 경영자의 지배하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경제적 실체 개념하에서는 소유권여부 보다는 실제로 동일한 경영자에 의해 통제되어 하나의 경제실체와 같이 움직이는가 여부에 따라 연결 여부를 결정해야 보다 바람직하다.

통제권이라는 개념은 매우 모호하기 때문에 지나치게 주관적인 판단에 의존할 수 있다. 따라서 통제권이라는 개념을 실무에 적용하여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기준이나 원칙을 개발하기 쉽지 않다. 이러한 문

24) 송인만, “결합재무제표의 효과”, 『결합재무제표도입의 효과와 문제점』, 고려대학교 기업경영연구원 회계·세무센터, 1998. 3. 18, p. 3 ~ 5.

IV. 연결회계기준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제로 인해서 이제까지 주로 소유지분에 근거하여 연결대상여부를 판단해 오고 있다. 그러나 통제권이라는 개념이 과거 우리나라 회계기준에도 예외적으로 사용된 바가 있으며, 최근에는 국제회계기준과 미국회계기준도 연결대상 범위를 결정할 때 이 개념의 도입을 적극 권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제회계기준상 및 미국과 일본의 연결범위를 살펴보면 <표 IV-1>과 같은데 국제회계기준 및 미국과 일본은 통제권개념인 실질지배력기준을 상당폭 반영하여 구체화시키고 있다.

<표 IV-1> 연결대상범위에 관한 국제회계기준·미국·일본의 비교

구분	국제회계기준	미국	일본
<p style="writing-mode: vertical-rl; text-orientation: upright;">실질적 지배력이 존재하는 경우</p>	<p>· 발행주식총수의 50%를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실질적인 지배력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다. 다음의 경우에는 실질적인 지배력이 존재한다고 간주한다.</p> <p>a. 다른 투자자와 계약을 통하여 의결권의 과반수를 지배하는 경우</p> <p>b. 법규 또는 계약에 의해서 기업의 재무와 경영방침을 결정할 수 있는 경우</p> <p>c. 이사회 또는 이와 동등한 수준의 경영기구의 구성원 과반수를 선임 또는 해임할 수 있는 경우</p> <p>d. 이사회 또는 이와 동등한 수준의 경영기구의 회의에서 과반수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IAS 27호 12항)</p>	<p>a. 많은 소수의결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며 (대략 40%) 여타의 한 상대방 또는 여러 상대방으로 구성된 그룹은 중대한 지분(significant interest)을 갖고 있지 아니한 경우</p> <p>b. 타 실체의 운영위원회 위원후보자 지명 절차를 지배할 수 있으며 위원선출시 투표자의 과반수를 투표하게 할 능력을 최근의 선거에서 보여준 경우</p> <p>c. 전환시 얻을 기대이익을 초과할 정도의 위험이 없이 과반수 의결지분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타권리의 소유 또는 유가증권의 소유를 통하여 의결지분의 과반수를 획득할 수 있는 일방적 능력이 있는 경우</p> <p>d. 의결권부株式이 없거나 위원선출권한이 없이 설립된 실체가 그의 현장, 정관, 신탁증서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p> <p>① 그 현장 등은 창설자(후원자)이외의 여하한 자에 의해서도 변경될 수 없고</p> <p>② 그 현장 등에는 이사회 또는 수탁자회의의 권한을 포함한 그 실체가 창설자에게 미래의 순현금유입 또는 미래의 경제적이익을 제공할 계획의 수립 (또는 개시) 활동만을 할 수 있다는 제한이 있을 것.</p> <p>e. 어떤 실체를 해산시킬 수 있고, 그 해산으로 인하여 얻게 될 경제적 원가를 초과하면서, 개별자산의 지배를 할 수 있는 일방적인 능력이 있는 경우</p> <p>f. 유한책임조합으로서 보통조합지분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p>	<p>· 타회사에 대한 의결권 소유비율이 50% 미만인 경우에도 가장 높은 비율의 의결권을 소유하고 다음의 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타회사의 의사결정기관을 실질적으로 명확하게 지배하지 않더라도 자회사로 본다.</p> <p>a. 의결권 미행사 주주가 존재하여, 주총시 의결권 과반수를 계속적으로 유지하는 경우</p> <p>b. 임원, 관련회사의 협력주주를 통해 주총에 있어 과반수의 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p> <p>c. 이사회 구성원의 과반수를 출자회사의 임원 또는 종업원 또는 이와 유사한자가 계속점유하는 경우</p> <p>d. 중요 재무 및 경영방침 등을 결정할 수 있는 계약 등이 존재하는 경우</p>

IV. 연결회계기준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현행 우리나라 연결재무제표 규정은 앞서도 살펴보았듯이 연결기준 제3조에 명시되어 있는데 ① 주식회사가 다른 주식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소유한 경우 ② 주식회사가 다른 주식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소유하면서 당해 다른 주식회사의 최대주주인 경우 ③ 상기 규정에 의한 지배회사와 종속회사(종속회사의 종속회사를 포함함)가 합하거나, 종속회사와 종속회사가 합하여 다른 주식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소유하면서 당해 다른 주식회사의 최대주주인 경우에는 해당 회사간 지배종속관계가 성립한다고 보아 연결재무제표를 의무화하였다. 우리나라의 연결기준은 국제회계기준이나 미국 또는 일본의 경우 도입하고 있는 실질지배력기준을 채택하고 있지 않아 연결대상범위의 결정에 있어 일정정도의 한계를 노정시키고 있다. 물론 연결기준 제3조의 ③항이 실질지배력기준을 반영한 조항이라고 볼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의 지배관계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이 조항만으로는 미흡한 점이 많다. <표 IV-2>에서도 보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대규모 기업집단의 지배구조는 회사와 회사간의 지배구조가 아닌 재벌총수와 특수관계자의 지분을 합계인 내부지분율에 의해서 지배구조가 형성되고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표 IV-2> 30대 대규모 기업집단 내부지분율 현황

기업집단	그룹총수	친인척	계열사 및 재단법인	자사주 및 자사주펀드	내부지분 합계
현대	4.35	7.83	26.71	2.13	41.02
삼성	1.30	0.48	17.14	1.70	20.62
엘지	0.17	4.20	24.25	0.08	28.70
대우	3.93	0.14	26.99	0.99	32.05
선경	4.80	2.97	16.21	1.67	25.65
쌍용	2.41	0.51	31.74	0.95	35.61
한진	4.64	13.95	13.61	2.96	35.16
기아	-	-	19.66	0.10	19.76
한화	3.20	2.57	18.24	1.02	25.03
롯데	1.47	0.66	54.30	-	56.43
금호	0.99	3.31	11.77	-	16.07
한라	8.07	2.76	23.68	0.11	34.62
동아	9.05	1.10	12.72	0.39	23.26
두산	1.96	9.15	34.37	0.67	46.15
대림	2.26	3.56	14.77	-	20.59
한솔	2.82	3.62	16.63	3.96	27.03
효성	12.04	6.03	0.97	-	19.04
동국제강	5.24	9.03	21.12	5.54	40.93
진로	9.35	1.80	3.12	2.21	16.48
코오롱	4.60	2.56	12.24	0.68	20.08
고합	6.48	4.11	16.15	12.40	39.14
동부	5.34	8.13	22.76	4.48	40.71
동양	2.94	7.14	24.71	0.93	35.72
해태	1.53	0.64	8.91	7.64	18.73
아남	5.63	5.64	0.23	0.47	11.97
한일	10.61	2.18	10.61	-	23.40
거평	2.85	8.64	20.54	0.16	32.19
대상	8.59	14.37	14.93	-	37.89
신호	7.04	0.60	2.01	-	9.65
평균	3.26	3.29	21.68	1.38	29.61

출처 : 동아일보 '98. 3. 6

*주 : 1) 30대 대규모기업집단중 25위인 뉴코아는 상장사가 없어 표에서 제외됨
 2) 평균란은 보유주식수를 총발행주식수로 나눈 수치임

IV. 연결회계기준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이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종전의 연결재무제표 기준에서는 3%이상 소유하면서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있는 경우에는 연결에 포함하도록 요구한 적이 있었다. 즉 우리나라 기업의 소유구조하에서는 외국과 같이 소유지분에 근거한 연결범위의 결정이 무의미하다고 인정한 바가 있었다. 그러나 1994년에 연결재무제표기준이 강화되어 연결재무제표가 단지 보충적인 정보가 아니고 공식적으로 외부감사를 받아 공시되도록 요구될 때 연결재무제표 작성상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연결에 포함시키는 범위를 30%를 초과하여 소유하면서 최대주주인 경우로 제한시켰다.²⁵⁾ 물론 이같은 개정은 실질지배력기준이 실무적으로 판단의 재량권이 많아서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어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연결범위의 제한은 결과적으로 연결대상범위의 축소와 한국적 지배구조를 반영한 경제실체의 파악을 불가능하게 하는 문제점을 나았으며 연결재무제표의 유용성을 반감시키는 커다란 요인으로 작용하였고 결합재무제표의 작성을 의무화하기까지에 이른 것이다. 결합재무제표는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한국적 상황하에서의 기업재무조정이라는 특수한 목적을 위한 재무제표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일반목적의 연결재무제표로 기능을 넘겨주어야 하는 과도기적인 재무제표가 될 여지가 크다. 따라서 한국의 경제적 위기가 대기업 총수의 전횡에 의한 독단적 경영이라는 측면에 상당부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한국적 기업지배구조를 올바르게 반영할 있는 연결대상기준의 확충이 필요한 것이다.

연결범위를 한국적 기업지배구조를 반영할 수 있는 실질지배력기준으로까지 확장하기 위해서는 재벌총수와 그의 특수관계자 지분을 반영할 수 있는 연결대상범위의 확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과거의 연

25) 전계서 p. 5.

결회계기준상 종속회사의 범위 및 기업회계기준예규에 나타난 관계회사 정의와 국제회계기준과 미국 및 일본의 회계기준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지배력 기준을 함께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국제회계기준을 우리나라 현실에 부합하게 수정 반영한 관계회사에 대한 예규 규정 중 실질적으로 지배력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① 동일인이 다른 주요 주주와의 계약 또는 합의에 의하여 대표이사를 임명하거나 임원의 50%이상을 선임하거나 선임할 수 있는 경우, ② 동일인이 회사의 조직변경, 신규사업투자 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③ 당해 회사와 다음 각목²⁶⁾과 같은 중요한 거래 또는 표시 행위를 하는 경우로서, 다만, 동일인이 당해 회사의 주식(지분을 포함한다)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 규정을 준용하고 여기에 우리나라와 기업지배구조가 유사한 일본에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지배력 기준을 참조하여 실질지배력기준을 설정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또한 1994년 개정전에 존재하였던 종속회사 판정기준의 하나인 “최대주주이면서 대여·담보제공·지급보증액의 합계액이 일정규모 이상인 경우, 1% 이상의 주주로서 인사·재무 등 경영정책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명백한 경우”의 규정을 좀더 구체화시켜 앞의 실질지배력 기준과 함께 고려해 보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26) 가. 대여, 담보제공 및 지급보증액이 자기회사 자본금의 100분의 30이상이거나 다른 회사의 자본금 상당액을 초과하는 경우. 다만, 거래에 수반하여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채무보증이나 자금대차를 제외한다.
 나. 당해 회사와 동일인과 총매출 또는 총매입 거래액의 비율이 100분의 50이상인 경우
 다.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 인정될 수 있는 영업상의 표시행위를 하는 등 사회통념상 경제적 동일체로 인정되는 경우

2. 연결기준과 개별회계기준의 일관성 유도(지분법 회계의 정비)

연결기준과 개별회계기준과의 통일성을 유지하도록 기업회계기준을 정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연결기준에서는 관계회사와 연결제외회사들에 대해서는 지분법을 강제하고 있으나 개별재무제표에서는 원가법과 지분법을 선택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개별회계상 지분법을 적용하는 사례는 거의 없어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다시 지분법으로 이들 투자주식을 평가해야 하는 이중 수고를 감수하고 있다.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경우 연결대상 계열회사의 관계회사 투자주식을 원가법에 의하여 회계처리하면 지배권 획득일 이후의 복잡한 자본거래를 일일이 추적하여야 하며, 과거에 행한 연결조정 분개를 매년 누적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반면 지분법에 의해 회계처리가 이루어질 경우는 당기이전의 피투자회사에 대한 투자거래는 이미 관계회사주식계정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당해 회계연도 첫날을 기준으로 피투자회사의 자본계정과 관계회사주식계정을 상계제거하면 그만이다. 이 같이 간편한 지분법에 기초한 연결재무제표 작성이 우리나라에서 아직 정착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과 연결회계기준이 원가법을 위주로 제정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기업정보의 신속한 반영과 작성절차의 간소화를 위해서는 현행 지분법 회계처리의 올바른 정비가 우선적으로 요구된다. 현행 기업회계기준상 지분법이 가지는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각 재무제표별 상이한 회계처리에 의한 혼동을 들 수 있다. 기업회계기준에서는 관계회사투자주식에 대한 평가방법으로 원가법과 지분법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반면 연결회계기준에서는 지분법만을 인정하고 있어 개별회계와 개별회계를 바탕으로 작성되고 있는 연결회계간의 괴리가 존재한다. 미국의 경우에는 APB No.18에 따라 관계회사주식에 대하여는 지분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²⁷⁾ 개별 재무제표상에서 관계회사주식에 대하여 지분법이 적용된다면 지분법의 특성상 지배회사의 개별당기순이익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 경우의 연결순이익과 정확히 일치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개별재무제표가 주재무제표이고 개별재무제표가 공시된 후에 연결재무제표가 공시된다. 따라서 개별재무제표에서 관계회사에 대하여 지분법이 적용된다면 연결집단의 성과를 개별재무제표의 공시와 함께 조기에 제공하는 정보의 적시성이 크게 증대될 것이다. 이와 같이 지배회사의 관계회사 등에 대한 투자성과를 반영한 연결순이익정보를 개별재무제표를 통하여 제공한다는 것은 회계정보의 적시성을 제고한다는 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참고로 국제회계기준의 경우는 지분법을 선택조항으로 처리하고 있다.²⁸⁾

둘째, 지분법 적용시 우리나라 기업회계기준에 따르면 지분법적용

27) 박성환, “관계회사 투자주식에 대한 회계처리의 개선방향”, 『회계와 세무』 1997. 10, p.42.

28) 이와 관련된 IAS 규정은 다음과 같다.

- 연결대상에서 제외된 종속회사와 관계회사 투자계정 평가에는 IAS 25호의 규정에 따라 지분법, 원가법 및 재평가법 중에서 선택적으로 적용한다.(IAS 27호 29, 30항)

IV. 연결회계기준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투자손익을 자본조정계정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피투자회사의 지분법적용 투자수익을 자본조정 계정으로 보고하게 되면 피투자회사의 손익을 투자회사 계정에 즉각 반영시켜 관계회사간의 경영성과를 연결짓는다는 지분법 본래의 취지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경영성과의 왜곡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다. 즉, 실질적으로 경제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피투자회사의 경영성과의 변동에 따른 관계회사투자로부터의 투자수익을 적절히 보고하지 못할 수 있는 것이다. 미국의 APB No.18에 의하면 지분법투자손익을 손익계산서상에 지분법 손익으로 계상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제회계기준 제28호(Accounting for Investments in Associates)에서도 피투자회사의 경영성과중 투자회사의 지분상당액은 손익계산서에 계상하도록 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회계처리와는 다르다. 회계의 국제적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이같은 불일치한 점은 조만간 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지분법에 의하여 관계회사투자주식을 평가한다면, 피투자회사의 경영성과를 반영할 때 그 성격별(예, 경상손익과 특별손익)로 구분하여 보고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피투자회사의 이익을 경상손익과 특별손익으로 구분하여 손익계산서상에 지분법 투자손익도 별도로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연결기준상은 지분법투자수익을 총당기순이익에 가감하도록 되어있고 개별회계상은 지분법적용 관계회사투자주식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에 반영하지 않고 자본조정계정으로 표시하고 있지만 정보충실성이란 측면에서 지분법 평가손익의 내용을 적어도 경상손익과 특별손익으로 구분하여 성격별로 공시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이다.

참고로 원가법, 지분법 및 시가법의 기업회계기준상 회계 대상별 처리를 살펴보면 <표 IV-3>와 같다.

<표 IV-3> 기업회계기준상 유가증권(투자유가증권)의 회계처리

구분	원가법	시가법	지분법	
적용 대상	개별 회계	시장성 없는 투자유가증권	유가증권 및 지분율 20% 미만인 시장성 투자유가증권(강제조항)	지분율 20% 이상인 투자유가증권으로 원칙적으로 원가법을 적용하나 지분법도 선택적으로 적용가능
	연결 회계	개별 회계와 동일	개별 회계와 동일	연결제외 종속회사중 ①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절차 개시의 결정이 있는 종속회사 ② 지배회사 및 종속회사가 각각 금융업과 비금융업 또는 비금융업과 금융업을 영위하는 경우의 종속회사 ③ 지분율이 20% 이상 50%이하인 종속회사가 아닌 회사는 지분법이 강제 조항임
평가손익의 회계처리	개별 회계	평가손익 발생 안함(감액손실은 인식)	당기손익으로 처리	자본조정계정으로 처리
	연결 회계	-	당기손익으로 처리	당기손익으로 처리

한편 합병회계준칙에 따르면 합병차익의 경우 자본잉여금으로 처리(합병준칙 제6조)하도록 되어 있으나, 합병차익과 성격이 동일한 연결조정대는 연결기준 제12조 ③항에 “연결조정차와 연결조정대계정은 5년이내의 매결산기에 균등액을 상각 또는 환입한다. 다만, 그 금액이 중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시에 상각 또는 환입할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지배권 획득일을 기준으로 5년내에 균등액을 상각(환입)

IV. 연결회계기준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한다. 이는 동일한 성격의 합병차익과는 회계처리를 달리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합병차익과 동일한 성격의 영업권의 경우는 5년이내에 상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면서 합병차익의 경우는 자본잉여금으로 처리하도록 한 것은 동일한 회계사상에 대해 서로 다른 회계처리를 하는 논리적 모순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국제회계기준인 IAS 제22호에서도 부의 영업권인 합병차익의 경우 교환거래일 현재의 취득자산 및 부채의 공정가치에 대한 합병회사의 지분상당액이 취득원가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은 취득한 공정가치에서 비례적으로 차감하며 비화폐성 자산과 상계하고 남는 잔액은 이연수익으로서 부의 영업권으로 계상하고 원칙적으로 5년이내의 기간(20년초과 불가함)에 체계적인 방법을 통하여 수익으로 인식되어야 한다고 기술하고 있다.²⁹⁾ 따라서 이같은 논리적 모순을 제거하기 위해서 합병차익의 경우도 합병회계준칙의 영업권과 같이 상각환입하여 이익잉여금에 반영하도록 합병회계준칙을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3. 연결제외 대상에 대한 검토

연결대상에 대한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여 연결대상실체를 좀더 명확화 하여야 할 것이다. 연결기준은 상이한 업종의 종속회사를 연결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연결실체에 대한 정보의 왜곡과 누락을 가져오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 규정을 폐지하되 연결상 속성이 다른 항목들의 통합을 위해서 통일적 회계처리기준과 업종별 회계처리기준을 정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IAS 27번에서도 업종이 상이한 경우에도 연결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언급하고 있으며 미

29) 전계서 , p.331

국의 연결회계를 보아도 금융업종을 연결대상에서 포함시켜 나가고 있는 추세이므로 국제적 정합성을 고려해서도 금융업종의 연결제외규정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금융업의 포함에 따른 상이한 업종의 통합으로 인한 정보의 누락부분은 국제회계기준 IAS 제14호에서 언급한 것처럼 부문별 재무정보(financial information by segment)를 보고할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할 경우 재무제표 이용자들에게 산업적, 지역적으로 다각화, 다변화 된 기업의 부문별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한 기업내 각 부문의 성장성 및 미래전망 등을 파악할 수 있게 되고 더 나아가 기업전체를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정보의 유용성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이다. 부문별정보에 대한 국제회계기준의 구체적 기준내용은 부록에 수록해 놓았다.

한편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나타나는 불필요한 대조성격의 계정들은 자산·부채의 과다계상을 유발하기에 상계제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연결재무제표기준에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4. 연결조정차·대 계정의 합리화

현행 연결 기준 제12조(투자제거차액의 처리)는 ① 지배회사의 투자계정의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종속회사의 자본계정의 금액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연결조정차 또는 연결조정대 계정으로 기재한다. 다만, 당해 차액이 특정 자산이나 부채를 장부가액과 다른 가액으로 평가함으로써 발생하였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동 차액을 당해 자산이나 부채에 가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IV. 연결회계기준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기준 제12조는 연결재무제표에 표기될 종속회사의 자산과 부채의 평가기준으로 장부가액에 의한 평가를 원칙으로 하고 다른 가액이 있는 경우 다른 가액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실무에서 장부가액이 아닌 다른 가액에 의한 평가가 인정되는 경우는 자산재평가시 등의 극히 제한적인 경우만 인정되는 현실을 고려한 기준일 것이다. 그러나 현재 자산의 시가주의 평가가 국제회계의 흐름이고 우리나라의 경우 자산재평가제도의 개선을 통해 자산의 시가평가를 유도하려는 입장에서 굳이 역사적 원가주의를 고집할 것이 아니라 국제회계의 조류에 부합하는 종속회사 자산과 부채의 공정가액평가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따라서 기준을 자산 부채의 공정가치에 근거해 연결조정차·대를 산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공정가치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장부가액에 근거할 수 있도록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연결조정차대와 성격이 같은 영업권 및 부의 영업권에 대해 국제회계기준 IAS22에서도 “취득원가가 지배회사의 지분에 해당하는 자산과 부채의 공정가치를 상회하는 경우 그 차액은 영업권으로서 자산으로 인식해야 한다. 취득원가가 지배회사의 지분에 해당하는 자산과 부채의 공정가치를 하회하는 경우, 취득된 자산 중 비화폐성자산의 공정가치를 해당 자산의 공정가치에 비례하여 삭감하여야 한다. 취득원가와 순자산의 공정가치사이의 차액을 비화폐성자산의 공정가치의 삭감에 의하여 전액 소진할 수 없는 경우, 잔여 차액을 부의 영업권으로 표기하고 이연이익으로 처리한다. 부의 영업권을 계산하는 다른 대안으로 취득원가와 지배회사 지분에 해당하는 순자산의 공정가치 사이의 차액 전체를 부의 영업권으로 인식할 수 있다.”라 하여 시가평가에 의한 영

업권과 부의 영업권 계산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또한 여기서 말하는 자산과 부채의 공정가치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 ① 시장성 유가증권은 취득시의 시장가액
- ② 비시장성 유가증권은 주가순이익비율(price earnings ratios), 배당수익율, 및 유사회사의 성장예측치 등을 고려하여 추정한 가액
- ③ 매출채권은 회수가능액의 현가
- ④ 재고자산은 순실현가능액
- ⑤ 토지와 건물은 사용목적에 따른 시장가치로 하거나 처분을 목적으로 한 경우 순실현가능액
- ⑥ 기계설비는 장기사용을 목적으로 한 경우 공정감정 시장가액, 일시적인 사용을 목적으로 한 경우 현행대체원가와 순실현가능액 중 낮은 가액, 매각을 목적으로 한 경우 순실현가능액
- ⑦ 특허권이나 허가 등의 무형고정자산은 추정가치

미국회계기준(APB No.16)은 “피합병회사의 매수원가를 취득자산과 부채에 배부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 절차로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첫째, 취득시 모든 확인 가능한 취득자산과 모든 부채의 공정가치에 의해 매수원가의 일부를 배부한다. 둘째, 피합병회사의 매수원가가 확인가능한 자산과 부채의 공정가치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을 영업권으로 기록한다. 확인 가능한 자산과 부채의 공정가치가 매수원가를 초과하는 경우 차액을 비유동자산에서 각 자산에 비례하여 차감한다. 비유동자산이 0이 되는 경우 배부되지 못한 초과액을 부의 영업권으로 기록한다. 따라서 미국의 회계기준도 시가평가에 의한 연결

IV. 연결회계기준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조정차·대 계상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연결기준 제12조 1항에서 종속회사의 자산과 부채를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단 여기서 공정가치의 객관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데 자산재평가제도의 개정에 따라 자산의 시가평가가 좀더 객관화될 것이고 세법상 개별자산 평가방법도 많이 도입되어 있으므로 커다란 문제는 없을 것이며 공정가치의 구체적 기준으로 국제회계기준이 제시하는 것과 같은 세부적 사항을 도입하는 방법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자산과 부채의 평가기준은 주식으로서 공시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 연결기준에 따르면 원칙상 투자제거차액이 바로 연결조정차·대로 바뀌는 것이 아니고 연결기준 제12조 1항 단서조항에 따라 장부가액과 공정가치의 차이를 자산과 부채에 가감한 이후에 나머지 부분을 연결조정차·대로 계상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시가평가제도가 정착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대부분의 연결재무제표 작성 회사들이 종속회사의 자산과 부채를 장부가액으로 평가하고 있어 개별 자산과 부채의 가치증가분인 공정가치와 장부가액의 차이도 연결조정차·대에 산입시키고 있다. 이와같이 계상된 연결조정차·대는 일률적으로 5년이내의 기간에 걸쳐 상각하도록 되어있다. 물론 대부분의 무형자산의 경우 기업회계기준이 특정내용년수를 규정해 놓고 그 기간 동안 상각하도록 강제화 시키고 있으나 연결조정차·대의 경우는 현실적으로 순수한 영업권부분만이 계상되는 것이 아니고 자산증가가치분도 포함되어있는 경우가 대다수이므로 자산·부채의 시가평가가 의무화되지 않는 한은 연결조정차·대를 일률적으로 5년에 걸쳐 상각하기 보다는 개별자산부채의 특성을 감안하여 회사별로 상각기간에 융통성을 부여해주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³⁰⁾

국제회계기준인 IAS22에서도 과거에는 5년의 기간동안 상각하도록 하였다가 개정시안 (Exposure Draft 61)에서는 반증이 없는 한 20년 이내로 상각하도록 융통성을 부여하였다. 미국회계기준인 APB 17은 상각기간은 40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하였으며 상각방법은 기업이 다른 체계적 방법이 더 적합하다고 설명할 수 없는 경우에 정액법을 사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연결조정차·대의 일부로 산입된 장부가액과 공정가액의 차이의 발생내역을 고려하여 개별기업별로 융통성있게 상각·환입을 할 수 있도록 상각방법과 내용년수에 기업별로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5. 업종별 매출총이익률의 합리적 조정

현행 연결기준상 미실현손익 제거시 적용해야 할 이익률에 관해서는 연결기준 제21조 ②항에 ‘제거한 미실현손익이 연결회사의 손익계산서상 매출총이익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회사의 당해 회계연도의 평균매출총이익률을 기초로 미실현손익을 산정한다. 다만, 평균매출총이익률보다 현저하게 높거나 낮은 이익률을 적용하여 매매한 경우에는 그 매매거래에 적용한 이익률을 기초로 한다.’라고 언급되어 있다. 즉 미실현이익으로 제거해야 할 금액은 판매회사측에서 기록한 매출총이익률을 적용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자산의 매매손익으로서는

30) 이종천·이재경, “연결재무제표기준 및 합병회계준칙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회계저널』 1995. 12., p.222.

IV. 연결회계기준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매출총이익 이외에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도 생각할 수 있지만, 연결상의 자산평가 및 손익확정을 적정히 행하기 위해서는 매출총이익이 일반적으로는 가장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매출액 순이익률 내지 당기순이익으로 제거하면 판매회사측의 일반관리비와 판매비 내지는 금융채무비용까지도 재고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어 이들의 기간원가가 제품원가로 이연되는 부적절한 효과를 가져오게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상이한 업종을 연결대상에 포함시킬 경우 업종별로 매출총이익 산정방식이 상이하고 특정항목이 회계처리상 매출원가에 포함되거나 제외되는 경우가 있어 내부미실현이익제거시 적용할 제거율로서 비합리적인 경우가 많다. 특히 자산대체거래성격을 가진 고정자산매출(건설, 조선 등)에 대해 일반매출과 동등하게 매출총이익율을 계산하여 일괄적으로 내부미실현이익을 제거하는 것은 거래의 성격상 불합리한 점이 있다. 재고자산의 내부미실현이익의 경우는 보통 다음기에 실현되기에 커다란 문제는 없으나 건설회사 등의 장기고정자산의 경우는 감가상각을 통해 서서히 실현되기에 이들 업종에 대해 매출총이익율을 적용하여 내부미실현이익을 제거하면 급격한 당기손익의 감소를 가져올 수 있다. 이같은 경우에는 현행의 매출총이익율보다 회사에서 합리적으로 수정한 방법이나 개별재무제표의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수정 적용하는 것을 허용해 주어 일정정도 자율성을 회사에게 부여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 할 것이다.

6. 연결정보중심 공시제도의 도입

향후 연결재무제표를 정비하기 위해서 필요한 제도적 장치 중 하나가 연결정보중심 공시제도의 도입이다. 다각화 국제화되고 있는 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투자자 정보의 정확성을 높이는 방안으로서 기업집단의 상황 등과 관련된 정보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기업의 지배구조가 소위 말하는 “재벌”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한 기업의 경영부실이 그룹전체의 경영부실을 가져오는 경우가 흔하다. 이런 형태의 경영지배구조하에서는 개별기업의 경영정보보다는 기업집단 전체의 경영정보가 정보이용자의 정보유용성 측면에서 더 바람직 할 수 있다. 따라서 투자정보로서의 유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연결정보의 위치를 제고하면서 연결정보중심으로한 공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물론 현재 결합재무제표가 도입되어 기업집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지만 결합재무제표가 기업구조조정과정의 과도기적 산물이 될 가능성이 크고 기업구조조정이 일정계도에 오른 이후에는 연결재무제표로 결합재무제표를 흡수하는 것이 재무제표의 간소화와 기업측부담의 축소, 국제회계의 정합성 측면에서 보다 바람직 할 것이다. 연결중심공시체계의 도입도 이같은 전제를 바탕으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연결정보중심 공시체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선행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 연결정보를 중심으로 한 공시 개선

- 현재 개별 베이스로 작성되는 영업상황과 설비상황 등을 연결중심으로 기재
- 기업집단의 개요, 업적, 경영성과에 관하여 부문별, 사업종류별 공시 확충
- 기업집단의 구성내용을 알기 위해 현재 기재되는 연결자회사 상황 이외에 연결자회사 이외의 주요 관계회사의 상황에 관한 공시

IV. 연결회계기준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이외에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기업지배구조의 합리적 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주주지분변동명세서를 첨부서류로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외국의 경우는 주주지분변동명세서가 이미 일반화되어 있다.

7. 중간연결재무제표제도의 도입

우리나라에서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개정상법(안)을 보면 주요한 논의중 하나가 중간배당제도의 도입이고 이미 상장법인들은 중간배당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기업회계기준은 이미 중간재무제표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이에 따라 기업경영 분석도 중간재무제표가 공표되는 시점에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연결재무제표에 있어서도 각 기업들의 전산시스템이 일정수준으로 정비되면 중간결산하는 것에 큰 무리가 없을 것이므로 정보의 적시제공이란 측면에서 중간연결재무제표의 도입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일본의 경우도 중간연결재무제표 보고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향후 우리나라의 재무제표 체계가 연결재무제표중심 공시체계로 바뀐다고 할 경우는 정보의 목적적합성과 적시성을 위해 중간연결재무제표의 도입은 필요 불가결할 것으로 보인다.

8. 연결재무제표 구분표시의 정비

연결재무제표의 국제적 정합성 제고와 표시내용의 간소화 등의 필요에 따라 다음의 항목들은 연결재무제표 표시상 정비를 해야 할 것이다. 현행 연결원칙상 연결조정계정의 당기상각액은 총당기순이익액³¹⁾에 가감하는 방법으로 표시하고 있다. 하지만 연결조정 목적적합성이라는 측면에서 연결조정계정상 중요성 있는 당기 상각액은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로 구분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지분법 투자수익의 경우는 현행 연결기준상 세전 당기순이익에 가감표시하지만 투자관련 손익을 나타내기 위해 일괄하여 영업외손익항목으로 표시하여 경상손익에 반영하는 것이 보다 목적 적합하다.

9. 연결납세제도 · 연결법인세기간배분회계의 도입과 연결이익잉여금에 의한 배당제도의 도입

연결재무제표 중심으로 회계제도를 유도해 나가기 위해서 장기적으로 연결납세제도 도입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연결납세제도는 기업이 법적으로 복수의 법인격을 사용하여 기업내거래를 행하든지 단일한

31) 현행 연결기준상(연결재무제표기준 제22조) 당기순이익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가감하는 형식으로 기재한다.

- ① 외부주주지분순이익은 차감하고 외부주주지분순손실은 가산한다.
- ② 연결조정차상각은 차감하고 연결조정대환입은 가산한다.
- ③ 지분법적용회사투자이익은 가산하고 지분법적용회사투자손실은 차감한다.

IV. 연결회계기준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법인격을 가지고 행하든지 간에 관계없이 내부거래 제거를 통하여 동일하게 과세하는 것으로써 기업이 누진세율제도하에서 이익의 분산을 통한 조세회피(Tax Haven³²⁾)를 막음과 동시에 그룹내의 흑자기업과 적자기업이 존재하는 경우 그룹전체의 이익보다 많은 법인세를 부담할 가능성이 있어 과세의 중립성을 해치기 때문에 합산과세(연결과세)하여 과세의 중립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연결중심회계제도를 유도하고 세무회계와의 일관성을 유지하며 연결재무제표 작성 기업의 세부담의 합리적 완화를 위해서는 연결납세제도의 도입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³³⁾

연결납세제도 도입시 반드시 도입되어야 하고 연결납세가 도입되지 않더라도 연결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 검토되어야 할 제도가 연결법인세 기간배분회계이다. 이연법인세 제도는 이미 1998년 4월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개별회계에 적용되도록 기업회계기준 제59조 및 부칙 14항에 규정되어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연결회계에서는 법인세기간배분회계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상태이다. 연결시에는 개별회계에서 발생하는 기간배분 문제이외에 종속회사의 잉여금을 지배회사에 합산, 미실현손익의 제거, 개별회사의 손익수정, 외화표시재무제표의 환산, 이월결손금의 존재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들 항목은 모두 일시적 차이를 발생시키는 것으로서 연결법인세 계산시 이들 항목의 법인세 효과를 당해기간에 이연배분하지 않는다면 연결법인세는 물론 연결 당기순이익이 정확하게 산출될 수가 없어서 연결재무제표가

32) 현저히 낮은 소득세율 갖고 있거나 또는 전혀 소득세가 없는 나라를 의미

33) 연결납세제도는 현재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에서 채택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그 시행요건은 연결기준보다 훨씬 엄격하다.

올바르게 작성될 수 없다. 선진국의 회계기준과 국제회계기준에서는 연결 법인세기간배분회계가 의무화 되어있고 일본의 경우도 연결회계 기준의 개정으로 연결법인세기간배분회계 제도가 도입되었다.³⁴⁾ 우리나라 연결회계를 국제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정보이용자들에게 정확한 회계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연결법인세 기간배분회계의 도입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편 장기적으로 개별재무제표 중심에서 연결재무제표중심으로 회계제도가 바뀔 경우 현재 개별기업재무제표 중심으로 계산되는 배당가능이익 산정 방식을 연결재무제표 중심의 배당가능이익산정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향 모색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배당가능이익산정에 있어 채권자보호를 우선시하는 상법에 의해 많은 제한을 받고 있다. 현재 상법에서는 회계연도 경과후 주주총회에서 배당결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배당을 주주총회 결의사항으로 규정한 것은 배당결정권을 주주가 가지는 중요한 자익권으로 생각하였기 때문이나 주식의 처분으로 인한 자유로운 퇴사제도가 보장되어 있는 상장기업에서는 배당은 더 이상의 주주의 입장에서 중요한 수익이 아니다. 따라서 상장기업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기업의 경영을 책임지고 있는 이사회에 배당에 관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³⁵⁾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법개정안에서도 이사회에게 배당결정권한을 주는 방향으로의 개정이 고려되

34) 일본 연결재무제표 규칙 제11조에서는 법인세의 기간배분처리란 수익 또는 비용의 귀속년도가 서로 다를 경우에 각 연결회사의 과세소득 합계액과 연결재무제표상의 법인세공제전이익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당해 차이에 관계되는 법인세액을 연결재무제표의 법인세 공제전이익에 기간배분 방법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대응시키기 위한 조정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35) 남상오·황인태, “재무제표 보고양식의 개혁”, 『회계저널 제 4 호』, 한국회계학회, 1995. , p.99.

IV. 연결회계기준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고 있다. 배당결정권의 이사회 권한으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배당가능이익의 합리적 산출 방식과 객관성이 우선적으로 담보되어야 한다. 지금의 개별재무제표 중심 배당가능이익산출방식은 개별회사중심의 배당산정방식으로 되어 있어 경제적 실체로 여러 기업이 단일화 되어있는 정도가 높을 경우 경영실적을 올바르게 반영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으며 특히 내부거래 비중이 클 경우 개별재무제표정보의 왜곡 현상 때문에 합리적 배당가능 이익산출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따라서 연결재무제표중심으로 배당가능이익을 산출하는 방식이 기업결합정도가 높은 기업군에 있어서는 경제적 실체에 부합하는 배당가능이익산정방식이 될 수 있으며 내부거래제거를 통한 조세의 공정성 확보라는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 물론 이 경우 자회사의 이익을 모회사 배당가능이익에 포함시키는 것은 자회사가 모회사 몫 만큼의 배당을 실시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익을 인식하여 배당한다는 미실현이익의 사외유출이라는 문제점이 있다. 하지만 국제회계 추세인 포괄주의 이익개념입장에서 보면 미실현이익의 사외유출 문제는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시차오류에 의한 인식차이는 이 연법인세 제도를 통해 일정정도 보완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이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논의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V. 결론

우리경제는 1997년의 IMF 구제금융 이후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으며 위기 극복방안으로 시급히 요구되고 있는 것이 외국인 투자를 통한 외화자금 유치이다. 이를 위해서는 외국인 투자가가 안심하게 투자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할 수 있는 투명한 경영성과의 공시가 필요하고 이는 회계제도의 투명성을 전제로 한다. 지난 연말 IMF는 경영의 투명성 확보방안의 일환으로 연결재무제표와는 별도로 결합재무제표를 요구하였으며 정부는 1999년부터 기업집단 재무제표인 결합재무제표를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입법화하였다. 하지만 기업결합재무제표라는 것이 국제적으로 일반화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금 진행되고 있는 기업구조조정이 가시화 되어 지주회사제도의 도입이 이루어지고 대기업들이 소수의 주력회사만을 자회사로 거느리게 될 경우, 결합재무제표의 유용성은 상당 부분 감소할 것이다. 따라서 결합재무제표를 대체할 수 있는 연결재무제표의 확충을 통해 결합재무제표의 기능을 흡수하는 방안을 연구해 보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라 할 수 있다.

지난해 상장회사들의 영업실적을 출자관계에 있는 자회사들까지 감안한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볼때 적자규모가 당초 개별회사가 발표한 것보다 두배가까이 늘어났다는 증권거래소의 최근 발표가 있었다. 기업들의 영업실적이 개별 재무제표보다 연결재무제표에서 보다 악화된 요인은 내부거래에 의한 가공이익이 발생한 측면과 자회사 자체의 경영이 부실한데서 상당부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으며 이는 곧바로 재무제표에 대한 불신과 기업경영 투명성에 대한 대외신인도를 낮추는 결과를 가져온다. 따라서 당면한 외국인투자유치는 물론 경제위기극복을 위해 기업회계의 투명화를 위한 작업은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되며 이를 위해서는 재무제표의 국제수준에 부합하는 위상제고가 필요한 것이다.

본 연구보고서는 기본적으로 결합재무제표라는 것이 기업구조조정 과정의 과도기적 재무제표에 그칠 공산이 크고 결국 연결재무제표로 흡수 통합될 것이라는 전제하에 제1부에서는 결합재무제표의 구체적인 작성방안을 제시하였다. 금융업종을 포함할 경우 금융업종과 비금융업종의 구분표시방안을 제시하였고, 해외계열회사의 경우 주식회사가 아닌 경우도 다수 존재하므로 이들에 대해서는 지분법으로 결합시키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감사인 선정 방법에 있어서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일방적인 지정방법보다는 자율적으로 지배회사의 감사인이 감사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결합대상회사의 결정 문제는 결합대상 계열회사의 선정에 있어 기업과 회계감사인의 의견이 보다 충실히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제2부에서는 연결재무제표의 확충방안으로서 연결대상 범위 결정에 있어 실질지배력 기준의 도입을 제시하였다. 연결재무제표기준의 개정방안으로서 언급된 것은 개별회계와 연결회계간 지분법 회계의 일관성 유지였으며 이를 위한 방안으로 개별회계에 있어, 관계회사에 대한 지분법회계의 의무화 및 지분법 적용 투자손익을 당기순이익에 반영하는 회계기준의 개정을 요구하였다. 연결대상의 문제에 있어서는 현재 연결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금융업종을 포함시키되 상이한 업종간의 통합으로 인한 공시누락 부문은 부문별 재무정보의 공시를 통해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회계공시와 관련하여서는 연결정보중심 공시체제로의 이행과 정보적시성 측면에서 중간연결재무제표제도의 도입을 제시하였으며 장기적인 연결재무제표 개선방안으로서는 연결납세제도의 도입과 연결법인세 기간배분회계제도의 도입 그리고 연결이익잉여금에 의한 배당제도의 도입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결과가 현재 작성초안이 마련중인 결합재무제표의 구체적인

V. 결론

작성에 보탬이 되고 향후 거론될 연결채무제표 개정작업에 참고가 되기를 바란다. 특히 연결채무제표 개정방안에서 언급된 실질지배력기준에 의한 연결대상 범위의 확대는 조만간 도입되어야 할 구체적인 사안일 것으로 여겨진다.

여기에서 다룬 것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중요하고 시급한 연구과제를 시간의 제약상 다루지 못하였다.

첫째, 연결채무제표에 실질지배력 기준을 도입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효과에 대한 심도있는 실증분석을 하지 못하였다. 이 작업을 수행한다고 할 경우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것이나 자칫 탁상공론으로 빠지기 쉬운 연결기준의 개정작업을 구체성 있고 현실감 있는 개정작업으로 구체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연결제도의 개선방안으로 개별회계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합병회계기준과 지분법회계에 대해 언급하였으나 이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우선 합병회계의 경우는 1986년 개정된 이후 올해 처음으로 합병회계준칙이 개정되었지만 이는 문구수정 정도의 개정에 그친 것으로서 현재 M&A제도의 활성화와 기업구조조정 문제를 회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시급한 개정작업이 요구되는 분야이다. 지분법의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큰 테두리 안에서의 개선방향에 대해서만 언급하였으나 향후 지분법회계의 국제비교와 구체적 개정사안에 대해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남상오, “기업집단결합재무제표 도입의 타당성과 기대효과”, 『회계저널 1993년 12월』, p. 41.
- 남상오·황인태, “재무제표 보고양식의 개혁”, 『회계저널 제 4호』, 한국회계학회, 1995. , p99.
- 문택곤·주인기, 『신재무제표론』, 법문사, 1998. 4.
- 박성환, “관계회사 투자주식에 대한 회계처리의 개선방향”, 『회계와 세무』 1997. 10, p42.
- 삼일회계법인, 『국제회계기준과 기업회계기준의 비교해설』, 1997. 7., p 139.
- 송인만·윤순석, 『중급재무회계』 고급회계편 제3판, 박영사, 1996, p23
- 송인만, “결합재무제표의 효과”, 『결합재무제표도입의 효과와 문제점』, 고려대학교 기업경영연구원 회계·세무센터, 1998. 3. 18, pp. 3 ~ 5.
- 이만우·김양호·노준화, 우리나라의 연결회계제도의 개선방향, 한국상장사협의회, 1996.3 pp.12 ~ 13.
- 이만우, “기업집단재무제표의 도입방안”, 대한상공회의소 세미나자료, 1998. 4. 21, p16
- 안영균, “결합재무제표의 작성방법과 문제점”, 『결합재무제표의 도입 효과와 문제점』, 고려대학교 기업연구원, 1998.3., p15.

- 이만우, "기업집단 결합재무제표의 도입방안", 대한상공회의소, 1998.4, p35.
- 이종천·이재경, "연결재무제표기준 및 합병회계준칙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회계저널』 1995. 12., p.216.
- 임금자, "기업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제회계제도의 연구", 1998. 4,
- 윤순석·송인만, 『중급재무회계』, 신영사, 1997. 2., pp. 1116 ~ 1118
- 정철연, "연결재무제표를 중심으로 한 기업회계제도 연구", 『주식』 1997. 8
- 채규학·최창순, "연결회계제도의 정착을 위한 개선방안 연구", 『상장협 연구보고서 92-2』, 상장사협의회, 1992. 11, .
- 최창선, 기업경영투명성제고를 위한 정책세미나 중 『결합재무제표의 도입방안』, 1998. 2, p6.
- 최창순, "결합재무제표의 도입방안", 『기업투명성제고를 위한 정책세미나』, 한국경제연구원, 1998. 1.20, p9.
- 최창순, 『연결재무제표론』 제5판, 조세통람사, 1998. 1.
- Barry J. Epstein,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1997", John Wiley & Sons, Inc., p. 334.
- BADC(Business Accounting Deliberation Council), "중간연결재무제표와 Parent only Financial Statement에 관한 의견", 1998. 3. 13., JICPA 홈페이지
- FASB Discussion Memorandum, 『Consolidation and Procedure』, 1992, pp1~7.

大西又裕, “連結財務諸表制度の見直しに関する意見書案について”, 商事
法務, 第 1450号, 1997. 3, pp2 ~3.

中村 義人, “連結決算とセクメソト情報 の開示への対応”, 『JICPA
Journal』 , No.512, 1998. 3.

부 록

1. <부록 1> 부문별 재무정보보고의 구체적 내용

가. 국제회계기준의 부문별 재무정보의 보고³⁶⁾

기업전체의 단일 재무제표가 정보이용자들의 의사결정에 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한계를 보임에 따라 국제회계기준에서는 IAS 제14호와 공개초안(Exposure Draft)제51호를 통해 부문별 재무정보(Financial Information By Segment)를 보고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지분증권 또는 채무증권을 공개적으로 유통시키는 기업에 적용된다. 부문별 정보는 공표되는 재무제표에 포함되어야 하고 부문별 정보가 모·자회사의 개별재무제표에 포함되든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든 이에 관계없이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2) 부문의 분류

기업은 산업별, 지역별로 구분하여 영업활동에 관하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부문화 방법의 선택은 법률이나 규제기관의 규제사항에 따

36) 국제회계기준과 기업회계기준의 비교해설, 삼일회계법인, 1997. 7, p 139.

를 수 있고 경영자의 의사결정에 의할 수도 있다. 또한 Ias 제14호에서는 부문화 방법에 대한 지침으로서 부문별 수익이 기업전체 수익의 10%가 되거나 부문별 자산이 총자산의 10%를 차지한다면 부문별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사업별 부문(Business Segment)

제공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별 특성, 생산공정의 성격과 기술, 제품과 서비스가 판매되는 시장의 특성, 주요고객집단, 제품의 유통경로와 유통방법, 입법적 규제환경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각 제품과 서비스를 사업별 부문으로 집단화할 수 있다.

- 지역별 부문(Geographical Segment)

영업활동의 밀집성, 경제적·정치적 조건의 유사성, 특정 국가내에서 영업활동과 관련된 특수한 위험의 존재여부, 외환관리 규제사항, 환위험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지리적, 영역별로 영업활동을 집단화 할 수 있다.

3) 보고단위인 부문의 파악

(1) 1차적·2차적 부문별 보고형식(Primary And Secondary Reporting Formats)

- 단일 기업의 주요 위험과 이익이 기업이 제공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기인한다면 부문별 정보 보고를 위한 1차적인 보고형식은 사업별 부문이 되어야 한다.

- 만일 기업의 주요 위험과 이익이 다른 국가나 지역에서 영업한다는 사실에 기인한다면 1차적 보고형식은 지역별 부문이 되어야 하고 2차적 보고형식은 사업별 부문이 된다.
- 기업내부의 재무보고시스템이나 내부조직 경영구조를 기업의 주요위험과 이익을 파악하는 원천으로 활용할 수 있고 보고부문 파악의 증거도 될 수 있다.

(2) 부문의 파악

1차적 보고형식과 2차적 보고형식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내부보고시스템을 확인하여야 하며 만일 내부보고 목적의 부문이 사업별부문, 지역별 부문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외부보고 목적으로 사업별, 지역적 부문을 결정해야 한다. 또한 여러 개의 내부보고 부문이 본질적으로 동일하다면 하나의 사업별, 지역별 부문으로 통합해야 한다.

(3) 보고부문(Reportable Segments)의 결정

- 한 사업별 부문 또는 지역별 부문이 그들 수익의 대부분을 외부고객으로부터 획득하고 또한 다음의 조건을 충족한다면 보고부문으로 설정해야 한다.
 - A. 외부고객과의 거래와 타부문과의 내부거래로 인한 수익의 합계가 내부·외부거래 전사 총합계액의 10%이상일 경우
 - B. 한 부문의 이익(Segment Result)이 전사의 이익 또는 손실의 10%이상일 경우
 - C. 한 부문의 자산이 총자산의 10% 이상일 경우
- 전기에 보고부문으로 분류된 부문이 당기에 수익, 이익, 자산의 10%기준에 미달된다 할지라도 경영진이 그 부문이 중요하다고

판단한다면 계속 보고부문으로 구분해야 한다.

- 전기에는 보고부문이 아니었으나 당기에 보고부문에 해당하는 경우 비교목적으로 제시되는 전기의 부문정보를 재작성해야 한다.

(4) 부문정보에 대한 회계정책

- 부문정보는 전사적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적용한 것과 동일한 회계정책을 사용하여 작성해야 한다.
- 만일 관련수익과 비용이 배분된다면 부문간 공동사용자산도 각 부문에 배분되어야 한다.

4) 공시사항

(1) 1차적 보고형식(Primary Reporting Format)

1차적 보고형식에 근거해야 할 보고부문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공시해야 한다.

- 각 부고부문의 외부거래 수익과 내부거래 수익을 구분 공시
- 각 부문 수익의 성격
- 주업이 금융활동이 아닌 보고부문에 대해서는 개별부문에 직접 귀속되거나, 합리적 기준에 의해 배분 가능한 이자·배당수익 및 이자비용은 보고부문별로 별도 공시
- 각 보고부문의 총자산 및 부채
- 우발사항과 약정사항을 공시할 경우, 그 사항이 직접적으로 특

부 록

정 보고부문에 귀속 가능하거나 합리적인 기준으로 배분 가능하다면 이와 관련된 보고부문을 공시

- 최소한 1회계연도 이상 사용하리라고 예상되는 부문자산의 취득을 위하여 당해 연도에 지출한 금액
- 각 보고부문의 당해 연도의 성과를 설명하는데 유용할 중요한 부문 수익과 비용이 있다면 그 항목별 금액과 성격
- 손익계산서상의 특별항목이 한 부문에 직접 귀속되거나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 배분가능 하다면 그 성격과 총액
- 각 보고부문에 있어 중대한 현금의 유출이 없는 비용의 총액
- 관계회사, 조인트벤처, 지분법 적용회사의 영업활동의 대부분이 부문내에서만 이루어질 경우 그 당기순이익에 대한 당해 부문의 지분
- 연결재무제표 및 개별재무제표의 총괄적인 정보와 부문별로 공시된 정보와의 차이를 조정, 즉 각 부문의 자산과 부채의 합과 기업전체의 자산과 부채와의 차이의 조정 등

(2) 2차적 보고형식(Secondary Reporting Format)

- 만일 보고부문에 대한 기업의 1차적 보고형식이 사업별 부문이라면 외부거래로부터 얻는 수익이나 부문별 자산 금액이 전사적 총계의 10% 이상인 각 지역별 보고부문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

- ① 외부고객으로부터 얻는 지역별 수익
- ② 부문별 자산의 지역별 장부가액
- ③ 1회계연도 이상 사용하리라고 여겨지는 부문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지출 총액

- 보고부문정보에 대하여 기업이 1차적 형식을 택하고 있고 그 지역별 시장에 판매되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지역에 따라 상당히 다르다면, 기업은 외부고객에 대한 매출에서 얻는 가가 지역별 수익이 전사적 외부고객에 대한 매출액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지역에 대하여 외부고객으로부터 얻은 지역별 수익을 보고하여야 한다.

(3) 기타 공시

- 만일 내부보고 목적의 부문이 국제회계기준의 사업별 부문이나 지역별 부문의 정의에 부합되지 않는다면 외부보고 목적용으로는 이 기준에 부합한 부문으로 대체시켜야 한다. 이 경우 내부보고 목적용 자료의 부문이 외부보고 목적의 부문과는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i) 외부고객으로부터 얻은 부문별 수익

ii) 부문별 자산의 총장부가액

iii) 1회계연도 이상 사용하리라고 여겨지는 부문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지출총액

- 만일 한 사업별 부문이나 지역별 부문의 수익 대부분이 내부거래로 인한 것이어서 보고부문이 될 수 없는 상황이자만 외부고객 수익의 10% 기준에는 해당된다면 (A) 외부고객으로부터의 수익과 (B) 다른 부문과의 내부거래 수익 금액과 그 사실을 공시해야

한다.

- 다른 부분과의 거래로부터 얻은 수익을 측정하고 보고할 때는 기업이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부문간 이전가격을 기초로 측정해야 한다. 이러한 이전가격결정의 근거나 이에 관하나 변동사항은 공시되어야 한다.
- 기업은 보고하는 사업별 부문의 활동을 기술하고 지역별 부문의 구성을 제시해야 한다.
- 기업이 단일 사업별 또는 지역별 부문으로 운영되어 1차적, 2차적 부문정보를 분리할 수 없다면 그 사실을 공시하고, 단일 사업별 부문의 활동이나 단일 지역별 부문의 구성을 기술해야 한다.

- 투자자들이 필요한 기업집단에 관련된 사항들을 연결재무제표의 주식사항에 포함시킨다. 다만 회계제도의 규범적 성격이 지나쳐 회계고유의 기능을 왜곡하거나 악화시키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나. 미국의 부문별 재무정보의 보고³⁷⁾

부문별 재무제표의 유용성을 상당히 높게 평가하여 미국에서는 부문별 보고에 대한 회계기준을 채택하였는데, 그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³⁸⁾

37) 윤순석·송인만, 『중급재무회계』, 신영사, 1997.2., p. 1116 ~ 1118

38) FASB Statement No.4, "Financial Reporting for Segments of Business Enterprise."(1976) 이 회계기준은 추후에 Statement No.18(1977, 중간보고에서

1) 재무제표 작성원칙

부문별 보고는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에 이용된 것과 동일한 회계원칙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다만, 부문간 거래는 기업 전체의 매출에서는 내부거래로 인식되어 제거되지만 부문별로 보고될 때에는 부문의 매출액으로 나타나게 된다.³⁹⁾

2) 보고부문의 결정

기업의 보고부문을 결정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제품, 제품제조과정, 그리고 시장이나 판매방법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경영자는 보고부문을 결정해야 한다. 부문별 보고의 대상이 될 부문이 선정된 후 당해 부문이 별도로 보고 해야 할 만큼 중요한지 여부를 검증하여야 하는데, 다음 조건을 한 가지 이상 만족시킬 때 중요한 보고부문으로 간주한다.

- ① 부문의 수익(대내 및 대외 매출액 포함)이 기업 전체 결합수익(대내 및 대외 매출액 포함)의 10% 이상인 경우

는 부문별 보고를 면제), Statement No.21(1978, 비상장기업은 부문별 보고를 면제), Statement No.24(1978, 연결재무제표에서 부문별 보고를 하고 있는 경우 개별기업의 재무제표에서는 부문별 보고를 면제), 그리고 Statement No.30(1979, 주정부 또는 외국정부에 대한 매출액이 총매출액의 10% 이상인 경우 이를 공시)등에 의하여 수정·보완되었다.

39) 특히 미국의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 공시하면 개별재무제표를 공시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다양한 영업을 영위하는 개별기업의 재무상태와 영업성과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부문별 보고가 더욱 중요하다.

- ② 부문의 영업손익 절대액이 다음 중에서 큰 금액 절대액의 10% 이상인 경우
 - I) 영업이익이 발생한 부문의 전체 영업이익
 - II) 영업손실이 발생한 부문의 전체 영업손실
- ③ 부문에 귀속되는 자산이 기업의 각 부문에 귀속될 수 있는 전체 자산액의 10% 이상인 경우

이러한 기준을 적용할 경우 추가적으로 두 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첫째로 보고되는 부문별 정보가 기업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야만 한다. 특히, 별도로 식별된 부문의 매출액합계가 외부매출액의 75% 이상이어야 한다. 만일 75% 미만인 경우에는 당초의 10% 분류기준을 무시하고 추가적인 산업부문을 구분·보고해야 한다. 이러한 기준은 기업이 오직 일부 부문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하고 다른 모든 부문에 대한 정보를 혼합하여 한 부문으로 보고하려는 의도를 방지하게 된다. 둘째로 너무 많은 부문이 보고된다면 오히려 정보과부하로 정보 이용자를 혼란에 빠뜨릴 우려가 있다. 미국 회계기준에서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제시되고 있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10개 정도가 최대의 부문이 될 것이라고 본다.

부문별 보고는 주로 제품별 또는 서비스별로 구분되어 제공되지만 추가적으로 ①외국영업, ②수출 또는 주요 고객 등과 같은 기준에 따라 구분된다. 먼저 외국영업으로 인한 수익이나 이에 관련된 식별가능한 자산이 전체 수익이나 식별가능한 자산의 10% 이상인 경우 외국영업으로부터 발생한 수익, 영업이익 및 식별가능한 자산을 보고해야 한다. 또한 수출로 인한 수익이 총수익의 10% 이상인 경우 수출액을 별도로

보고해야 하며, 한 고객 또는 정부에 대한 매출이 전체 매출액의 10% 이상인 경우 이를 별도로 보고해야 한다.

3) 부문별 정보의 공시내용 및 방법

부문별 정보로는 다음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 ① 수익 및 수익성에 관한 정보 : 외부 고객에 대한 매출과 연결회사간의 매출을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연결회사 부문간 거래의 회계처리방법이 공시되어야 한다. 또한 각 부문별로 영업손익을 공시한다.
- ② 식별가능자산에 관한 정보 : 각 부문별로 식별할 수 있는 자산은 각 부문으로 배분하여 표시한다.
- ③ 기타 관련정보 : 각 부문의 감가상각비, 기중의 자본적 지출, 비연결종속회사의 순이익 중 특정 부문의 지분, 회계원칙의 변경으로 인한 특정 부문의 영향 등을 공시하여야 한다.

한편, 부문별 정보는 재무제표본문, 주석 또는 별도의 보충명세서로 공시하는 방법이 있다.

2. <부록 2>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시행령

(대통령령 제15779호, 1998. 4. 24)

● 개정이유 ●

기업집단결합재무제표의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 개정(1998. 1. 8, 법률 제5497호 및 1998. 2. 24 법률 제5522호)됨에 따라 기업집단결합재무제표의 작성대상 기업집단의 범위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 ㉔ 기업집단결합재무제표의 작성대상 기업집단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대규모기업집단으로 함(영 제1조의 4).
- ㉕ 기업집단결합재무제표에 포함되는 계열회사는 기업집단의 소속 국내회사와 해외현지법인으로 함(영 제1조의 4).
- ㉖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회사의 자산총액기준을 60억원에서 70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1998년 1월 1일 이후 개시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함(영 제2조 제1항 및 부칙 제3조).
- ㉗ 외부감사인 선임절차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도입한 외부감사인선임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영 제3조의 2).
- ㉘ 기업의 인수·합병 등을 통한 구조조정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상장회사와 합병하려는 회사의 감사인 사전지정제도를 폐지함(영 제4조 제5항 제2호).

●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합대상기업집단에 관한 적용례) 제1조의 4 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 중 직전 연도에 지정한 대규모기업집단에 대한 규정은 2000년 1월 1일 이후 개시되는 사업 연도부터 적용한다.

제3조(감사대상 회사에 관한 적용례) 제2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제4조(감사인지정에 관한 적용례) 제4조 제5항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상장하고자 하는 회사 및 상장법인과 합병하고자 하는 회사부터 적용한다.

제5조(전문기구의 심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제4조의 4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심의기구와 종전의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외부감사심의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은 제4조의 4의 개정규정에 의한 전문심의기구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결합재무제표의 제출기한 등에 관한 특례) 1999년 1월 1일부터 1999년 12월 31일 사이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결합재무제표의 제출기한은 제6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사업연도 종료후 5월 이내로 하고, 결합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의 제출기한은 제7조 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사업연도 종료후 7월 이내로 하며, 결합재무제표와 그에 대한 감사보고서는 제7조 제4항 제3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사업연도 종료후 7월이 경과한 날부터 비치·공시한다.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시행령 중 개정령

제1조의 2 【재무제표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1조의 2 제3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기업집단결합현금흐름표를 말한다. (1998. 4. 24 신설)

제1조의 3 【지배·종속의 관계】 ① 법 제1조의 2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배·종속의 관계”라 함은 주식회사가 당해 사업연도말 현재 다른 주식회사의 발행주식총수(상법 제370조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

외한다. 이하 같다)를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주식회사(이하 “지배회사”라 한다)와 그 다른 주식회사(이하 “종속회사”라 한다)의 관계를 말한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의 경우로서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권선물위원회”라 한다)가 주식의 분포상황 등을 참작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4. 24 개정)

1.~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2. (현행과 같음)

3. 전쟁·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여 연결재무제표의 작성에 포함시키기 곤란하다고 증권선물위원회가 인정하는 주식회사 (1998. 4. 24 개정)

4. 지배회사가 통계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 분류상의 금융업 및 보험업(이하 “금융보험업”이라 한다)을 영위하고 종속회사가 비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경우 또는 지배회사가 비금융보험업을 영위하고 종속회사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경우의 당해 종속회사 (1998. 4. 24 개정)

5. 증권선물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배·종속관계가 다음 사업연도중에 해소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의 종속회사 (1998. 4. 24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배·종속관계가 연속적 또는 순환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지배회사의 범위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1998. 4. 24 개정)

제1조의 4 【결합재무제표 작성 기업집단의 범위 등】 ① 법 제1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집단결합재무제표(이하 “결합재무제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하는 기업집단(이하 “결합대상기업집단”이라 한다) 및 그 소속회사(이하 “계열회사”라 한다)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하는 대규모기업집단(이하 “대규모기업집단”이라 한다) 및 당해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 한다. 이 경우 대규모기업집단은 직전연도에 지정된 대규모기업집단을 포함하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

정에서 제외하는 대규모기업집단을 제외하며, 계열회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회사로서 외국에 소재하는 모든 형태의 회사(이하 “해외계열회사”라 한다)를 포함한다. (1998. 4. 24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열회사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회사로서 증권 선물위원회가 인정하는 회사는 결합재무제표 작성대상이 되는 회사(이하 “결합대상계열회사”라 한다)에 포함하지 아니 한다. (1998. 4. 24 신설)

1. 전쟁·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결합재무제표의 작성대상에 포함시키기 어려운 회사 (1998. 4. 24 신설)

2. 직전 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해외계열회사의 경우 국내통화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이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미달하는 회사로서 재무정보의 유용성이 크지 아니하거나 결합재무제표를 작성하기가 곤란하여 결합재무제표에 포함시킬 필요가 없는 회사 (1998. 4. 24 신설)

3. 청산중에 있는 회사, 합병절차가 진행중인 회사로서 당해 사업연도에 소멸될 회사와 기타 공신력있는 재무제표 작성이 불가능하여 결합재무제표 작성대상에 포함하는 경우 결합재무제표의 신뢰성을 현저하게 훼손시키는 회사 (1998. 4. 24 신설)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결합대상기업집단으로서 결합재무제표를 작성할 필요가 없다고 증권선물위원회가 인정하는 대규모기업집단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결합재무제표의 작성을 면제할 수 있다. (1998. 4. 24 신설)

1. 결합대상계열회사중 하나의 회사가 작성하는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는 회사의 회사별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당해 결합대상계열회사의 회사별 자산총액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이상인 대규모기업집단 (1998. 4. 24 신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열회사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합대상계열회사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회사의 회사별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당해 결합대상계열회사의 회사별 자산총액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이상인 대규모기업집단 (1998. 4. 24 신설)

제1조의 5 【결합재무제표작성회사의 선정 등】 ① 법 제1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합재무제표 작성회사(이하 “결합재무제표작성회사”라 한다)는 결합대상계열회사의 감사인·결산월·회사별 자산총액 등을 참작하여 증권선

물위원회가 선정한다. 이 경우 결합대상계열회사는 당해 회사를 결합재무제표 작성회사로 선정하여 줄것을 신청할 수 있다. (1998. 4. 24 신설)

② 증권선물위원회는 법 제1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합재무제표작성회사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정사실을 통보함에 있어서 결합대상계열회사의 명단을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1998. 4. 24 신설)

제2조 【외부감사의 대상】 ①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이하 “외부감사”라 한다)를 받아야 하는 주식회사는 직전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로 한다. (1998. 4. 24 개정)

② (현행과 같음)

1.~5. (현행과 같음)

6.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사유로 증권선물위원회가 외부감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주식회사 (1998. 4. 24 개정)

제3조 【감사인의 선임】 ① 법 제3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연결재무제표·결합재무제표 및 상장법인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는 감사인은 동항 제1호에 규정된 감사인으로 한다. (1998. 4. 24 개정)

② 증권선물위원회는 법 제4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인을 지명하거나 변경선임 또는 선정을 요구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998. 4. 24 개정)

1. 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감사인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는 회사의 규모 등을 제한하는 내용과 취지 (1998. 4. 24 개정)

2.·3.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1. 감사인인 회계법인이 파산 등의 사유로 해산하는 경우(합병으로 인한 해산의 경우를 제외한다) (1998. 4. 24 개정)

2.·4.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1.~4. (현행과 같음)

5. 법 제1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에 대한 평가결과 또는 제8조의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결과를 고려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1998. 4. 24 개정)

제3조의 2 【감사인선임위원회】 ① 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선임위원회(이하 “감사인선임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자로 구성한다. (1998. 4. 24 신설)

1. 감사 2인 이내 (1998. 4. 24 신설)
 2.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사외이사(이사로서 상시 근무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가 있는 회사의 경우에는 사외이사중 2인 이내 (1998. 4. 24 신설)
 3.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의 2 제2항 및 제3항의 지배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가 있는 주주를 제외한 주주중에서 의결권있는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한 주주 2인 (1998. 4. 24 신설)
 4.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의 2 제2항 및 제3항의 지배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가 있는 주주를 제외한 채권자중 채권액이 많은 2인 (1998. 4. 24 신설)
- ② 감사인선임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 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다. (1998. 4. 24 신설)

제4조 【감사인의 지정대상】 ①~③ (현행과 같음)

④ 법 제4조의 3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선물위원회가 상장법인 중 공정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할 수 있는 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회사로 한다. (1998. 4. 24 개정)

1. 자기자본에 대한 부채액의 비율이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비율이상의 회사. 다만, 회사의 거래은행으로서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 원장이 정하는 주된 거래은행이 감사인 지정에서 제외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회사를 제외한다. (1998. 4. 24 개정)

2. 3. (현행과 같음)

4. 당해 회사의 임원,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지배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이하 “지배주주 등”이라 한다)중 최대주주 및 제5조에 규정된 관계회사에 대한 대여금(가지급금, 담보로 제공한 현금 및 유가증권가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액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지배주주 등에 대한 대여금과 금전채무를 지급보증한 금액의 합계액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10 이상인 회사 (1998. 4. 24 개정)

5.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1.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된 법인(이하 “등록법인”이라 한다)중 자산 총액이 300억원 이상이고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의 2 제2항 및 제3항에 규정된 지배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가 있는 주주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당해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로서 그 지배주주 또는 그와 특수관계가 있는 주주가 당해 회사의 대표이사인 회사 (1998. 4. 24 개정)

2. 다음 사업연도중에 한국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하고자 하는 회사 (1998. 4. 24 개정)

3. (현행과 같음)

⑥ 법 제4조의 3 제1항 제8호의 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래은행”이라 함은 금융감독원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주된 거래은행을 말한다. (1998. 4. 24 신설)

⑦ 법 제4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제청으로 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할 회사가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제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감사인을 선임하거나, 감사인선임위원회에서 제청한 감사인을 주주총회에서 변경한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가 당해 회사의 감사인을 지정한다. (1998. 4. 24 신설)

제4조의 2 【감사인 지명시 감사인 선임 등】 ① 법 제4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인의 지명을 요청한 회사와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회사는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명하거나 변경선임 또는 선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감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998. 4. 24 개정)

② 법 제4조의 3 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외자 도입계약 등에서 감사인을 한정하고 있는 경우 등 증권선물위원회가 지명하는 자를 감사인으로 하기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증권선물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1998. 4. 24 개정)

③ 법 제4조의 3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인을 다시 지명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그 요청사유를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감사인의 지명이 있는 날부터 2주 이내에 증권선물위원회에 요청하여야 한다. (1998. 4. 24 개정)

④ 법 제4조의 3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변경선

입하거나 선정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는 회사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제청을 거쳐 감사인을 선임한 회사중 법 제4조의 3 제1항 제4호·제6호, 이영 제4조 제4항 제1호·제3호 및 제4호 또는 제4조 제5항 제1호에 해당하는 회사로 한다. (1998. 4. 24 신설)

제4조의 3 【감사인 선임의 보고】 ① 법 제4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는 감사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2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증권선물위원회에 감사인의 선임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가 감사인의 해산 등의 사유로 사업연도중에 감사인을 다시 선임한 경우에는 제1호 및 제4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998. 4. 24 개정)

1. 2. (현행과 같음)

3. 감사인의 선임과 관련된 감사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제청사실을 증명하는서류 (1998. 4. 24 개정)

4. 5. (현행과 같음)

② 법 제1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결합재무제표작성회사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결합재무제표에 대한 감사계약을 체결하고, 감사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주일 이내에 제1항 제1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증권선물위원회에 그 체결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1998. 4. 24 개정)

제4조의 4 【전문심의기구】 ① 법 및 이 영에 의한 증권선물위원회의 업무수행을 보조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에 전문심의기구를 둘 수 있다. (1998. 4. 24 개정)

② 제1항의 전문심의기구에는 분과회의를 둘 수 있으며, 분과회의의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하여는 증권선물위원회가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정한다. (1998. 4.24 개정)

③ 금융감독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심의기구의 운영을 담당할 회계전문가 1인을 둘 수 있다. (1998. 4. 24 개정)

제6조 【재무제표 등의 제출기한】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재무제표의 제출기한은 정기총회 6주일 전까지로 하고, 연결재무제표의 제출기한은 사업연도 종료후 3월 이내로 하고, 결합재무제표의 제출기한은 사업연도 종료후 4월 이내로 한다. (1998. 4. 24 개정)

제7조 【감사보고서의 제출 등】 ① 감사인은 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보고서를 당해 회사(감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정기총회 1주일전에, 증권선물위원회 및 한국공인회계사회(이하 “공인회계사회”로 한다)에 대하여는 정기총회 종료후 2주일 이내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는 사업연도 종료후 4월 이내에, 결합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는 사업연도 종료후 6월 이내에 당해회사와 증권선물위원회 및 공인회계사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1998. 4. 24 개정)

② 회사는 정기총회 종료후 2주일 이내에 정기총회의 승인을 얻은 재무제표를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998. 4. 24 개정)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가 재무제표를 제출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1의 회사는 당해 회사의 주주중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의 2 제2항 및 제3에 규정된 지배 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의 소유주식현황과 주식 및 출자지분변동 상황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998. 4. 24 개정)

1. 2.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1. 2. (현행과 같음)

3. 결합재무제표와 그에 대한 감사보고서는 사업연도 종료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결합대상계열회사의 본점에 각각 3년간 비치·공시한다. (1998. 4. 24 신설)

⑤ (현행과 같음)

제8조 【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업무 등】 증권선물위원회는 외부감사의 공정한 수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감리업무 등을 수행한다. (1998. 4. 24 개정)

1. 2. (현행과 같음)

제9조 【증권선물위원회의 권한위임 등】 ① 법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선물위원회가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998. 4. 24 개정)

1. (현행과 같음)

2.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중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경미한 조치에 관한 사항 (1998. 4. 24 개정)

② 법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선물위원회가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 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998. 4. 24 개정)

1. 증권선물위원회의 결정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1998. 4. 24 개정)

2. 법·이 영 또는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의 규정이나 명령 등에 의하여 그 처리기준이 명확하고 별도의 의사결정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1998. 4. 24 개정)

2의 2. 법 제1조의 3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집단 소속회사에 대한 자료제출의 요구에 관한 사항 (1998. 4. 24 신설)

3. 법 제15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제출요구 및 조사업무 등의 집행에 관한 사항 (1998. 4. 24 개정)

4. (현행과 같음)

③ 법 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선물위원회가 공인회계사회에 위탁하는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998. 4. 24 개정)

1. 삭 제 (1998. 4. 14)

2. 법 제 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업무중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회사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권한 (1998. 4. 24 개정)

3. 법 제15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사·관계회사 및 계열회사와 감사인에 대한 자료의 제출요구권중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수행에 필요한 범위안에서의 자료 제출요구권 (1998. 4. 24 개정)

4. (현행과 같음)

④ 공인회계사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998. 4. 24 개정)

⑤ 공인회계사회는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감리업무에 대하여 그처리 결과를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998. 4. 24 개정)

⑥ 증권선물위원회는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공인회계사회로 하여금 관련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998. 4. 24 개정)

제11조 【심의위원회의 구성】 삭 제 (1998. 4. 24)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삭 제 (1998. 4. 24)

제13조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삭 제 (1998. 4. 24)

제14조 【심의위원회의 회의】 삭 제 (1998. 4. 24)

제15조 【심의위원회의 운영세칙】 삭제 (1998. 4. 24)

제16조 【업무보조】 법 및 이 영에 의한 금융감독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회의 업무에 대한 보조는 금융감독원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998. 4. 24 개정)

제17조 【자료협조요청 등】 ① 금융감독위원회는 증권선물위원회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기준을 심의하는 경우 공인회계사회와 협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1998. 4. 24 개정)

② 증권선물위원회는 법 제4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인을 지명하거나 변경선임 또는 선정을 요구한 경우와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인에 대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인회계사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1998. 4. 24 개정)

③ 증권선물위원회는 법 및 이 영에 의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인회계사회 기타 관련기관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998. 4. 24 개정)

④ 법 제15조의 2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료” 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료를 말한다. (1998. 4. 24 개정)

1. 법 제1조의 3 및 이 영 제1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결합대상기업집단 및 결합대상계열회사를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보유하고 있는 자료 (1998. 4. 24 개정)

2. 법 제4조의 3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인의 선정을 요구함에 있어서 필요한 회사의 명칭·소재지·대표자의 성명·자산총액 및 결산월 등 국세청의 과세관련 자료 (1998. 4. 24 개정)

제17조의 2 【증권선물위원회의 권한 위탁】 증권선물위원회는 법 제16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에 대한 평가실시의 권한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 (1998. 4. 24 개정)

제17조의 3 【손해배상공동기금의 적립금액등】 ①~④ (현행과 같음)

⑤ 재정경제부장관은 회계법인의 감사보수총액 증가율, 적립금 총액 또는 공동기금의 실질잔액 등을 감안하여 회계법인으로 하여금 연간적립금의 적립

비율을 달리하여 적립하게 할 수 있다. (1998. 4. 24 개정)

제17조의 5 【공동기금의 예외적 양도】 ① (현행과 같음)

② 회계법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를 하는 경우 그 사유 발생일(승인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일)부터 3년이 경과한 날(이하 “양도가능일”이라 한다)이후 이를 양도할 수 있다. 다만, 양도가능일 현재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회계법인의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한 소송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당해 소송의 확정판결 따른 공동기금의 지급이 종료된 날부터 이를 양도할 수 있다. (1998. 4. 24 개정)

제17조의 9 【기본적립금 등의 추가적립 등】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7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회계법인이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법 제5조 제1 항의 위반에 따른 조치에 한한다)를 받은 경우 기간을 정하여 당해 회계법인으로 하여금 직전 사업연도 감사보수총액의 100분의 1의 범위안에서 연간적립금을 추가로 적립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추가로 적립한 연간적립금은 제17조의 3 제3항

및 제17조의 6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적립금 총액에서 제외한다. (1998. 4. 24 개정)

②·③(현행과 같음)

제18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①(현행과 같음)

②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1998. 4. 24 개정)

③ 증권선물위원회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1998. 4. 24 개정)

④ 법 제2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에 있어서 금융감독원장은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을 명시하여 증권선물위원회에 과태료를 부과할 것을 건의할 수 있다. (1998. 4. 24 개정)

⑤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1998. 4. 24 개정)